

부가가치세제 발전방향 연구

2013. 12

홍성훈 · 성명재

서 언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부가가치세제도가 있는 많은 나라에서 부가가치세는 전체 조세수입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는 중요 세목 중 하나이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모든 거래를 과세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가계·기업·공공 부문 등 모든 부문에 걸쳐 경제 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광범위하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동안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제도가 보이고 있는 장점, 한계, 그리고 앞으로의 개선 방향을 이해하려는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부가가치세제도의 중요성을 생각해볼 때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제도의 장점과 한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제도적 개선 방향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이러한 연구를 진행하는데 있어 출발점을 설정하고 연구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본 보고서의 목적이다.

이를 위해 본 보고서에서는 부가가치세제도에 대한 세 가지 연구 주제를 다룬다. 각 주제가 하나의 개별적인 장을 구성하며, 각 장은 서로 독립적이지만 보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먼저 제Ⅱ장에서는 우리나라 제도의 현황에 대해 살펴본다. 부가가치세제도의 성과를 측정하는 주요 지표 중 하나인 부가가치세 세수율을 기준으로 삼아 우리나라의 제도가 최근 들어 얼마나 발전하였는지 그리고 국제적으로 비교하여 얼마나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분석해본다. 이어서 제Ⅲ장에서는 OECD 국가를 중심으로 부가가치세제도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살펴보면서 독일, 스위스, 스페인, 일본 등의 네 나라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개정 사례 및 정책 효과에 대해 분석해본다. 그리고 제Ⅳ장에서는 가계동향조사, 산업연관표 등의 실증 자료에 근거하여 미시적으로 세부담 귀착 및 정책 효과에 대해 살펴본다.

본 보고서는 본원의 홍성훈 박사가 집필하였고, 홍익대학교 성명재 교수가 공동 저자로 참여하였다. 집필 과정에서 저자들은 착수보고회, 중간 및 최종보고회를 통해 원내외의 전문가들로부터 많은 조언과 도움을 받고 익명의 심사자들로부터도 심사 의견을 받아 보고서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었음에 감사하고 있다. 아울러 저자들은 자료 수집 및 정리에 큰 도움을 준 허윤영 연구원과 최미영 연구행정원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고 있다. 그리고 홍성훈 박사는 세법과 관련된 내용을 이해하는데 항상 도움을 주고 있는 유현영 회계사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는 저자들의 개인적인 견해를 반영한 것으로서, 보고서의 내용이 본원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는 것은 아님을 밝히 고자 한다. 보고서의 출간에 이르기까지 애써주신 모든 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린다.

2013년 12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옥 동 석

요약 및 정책시사점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제도는 단일 세율 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세율도 10%로 비교적 낮다. 그리고 식품, 사교육, 농업, 금융용역, 의료용역 및 의약품 등의 몇몇 부문을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 면세 및 영세율 등의 감면제도도 비교적 제한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다양한 재화 및 용역의 거래에 대한 정보도 비교적 효과적으로 파악되고 있다. 2000년 전후로 도입, 확대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현금 영수증 제도 등이 효과를 낸 덕분이다. 이상의 제도적 요인들이 결합적으로 작용하여,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제도는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부가가치세 세수율(VAT Revenue Ratio: VRR)을 보여준다. 여기서 부가가치세 세수율이란 잠재적인 세수 대비 세수 실적의 비율로서 부가가치세제도의 성과를 보여주는 주요 지표 중 하나이다.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모든 거래를 과세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가계, 기업, 공공 부문 등의 경제 활동에 미치는 영향도 광범위하다. 다양한 종류의 거래를 과세대상으로 정의하기 때문에, 만약 부가가치세제도가 거래 품목이나 거래가 갖는 특성의 사소한 차이에 의해 달라진다면, 제도를 효과적이고 공정하게 운영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부가가치세제도는 거래 품목이나 거래 특성의 작은 차이에 의해 달라지지 않고 가능한 단순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부가가치세 면세 및 영세율 등의 감면제도가 도입되고, 지속적으로 유지되곤 한다. 뿐만 아니라,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하여 다수의 나라에서는 표준세율 이외에 경감세율이 따로 존재하는 차등 세율 체계가 유지되고 있다. 다양한 부문에 대해 면세, 영세율, 차등 세율 등이 상존하는 복잡한 부가가치

세제도 하에서는 제도 운영에 있어 효율성이 감소할 수밖에 없으며 납세자의 관점에서 납세 순응 비용이 증가하곤 한다. 영국에서 초코 케이크(면세대상)이나 비스킷(과세대상)이나를 두고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논쟁에 휩싸였던 자파 케이크(Jaffa Cakes) 사례는 복잡한 부가가치세제도가 일으킬 수 있는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준다.

부가가치세제도가 단순하게 설계되어 효과적이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으려면 적어도 다음의 세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첫째 부가가치세제도가 단일세율 체계로 운영되어야 한다. 만약 부가가치세제도가 표준세율 이외에 경감세율이 있는 복수세율 체계로 운영된다면, 여러 경제 부문으로부터 경감세율을 적용받도록 해달라는 청원이 더 많이 들어올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미 경감세율을 적용받는 부문이 있다면 그러한 조세 경감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다. 부가가치세제도 단순화 개정안을 추진하였다가 실패한 스위스의 사례는 복수세율 체계가 한 번 자리를 잡으면 그것을 되돌리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보여준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뉴질랜드, 이스라엘, 덴마크 등에서는 단일세율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들 나라에서는 세율에 비해 부가가치세 세수율이 높게 나타난다. 즉 세수율을 기준으로 볼 때 부가가치세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부가가치세 단일세율 체계가 세수율을 높이고 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부가가치세 면세 및 영세율 등의 감면제도가 최소한의 범위에서 유지되어야 한다. 부가가치세 영세율 제도는 수출하는 재화 및 용역의 거래에만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 그리고 면세 제도는 사회적으로 형평성을 고려하거나 소비를 장려할 필요성이 있는 부문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면세 제도를 다른 나라와 비교해보면, 식품, 의료용역, 의약품, 농업용 석유류 등에 대한 면세가 두드러진다. 이들 부문에 대한 면세와 금융, 사교육 등에 대한 면세를 포함하여 현행 부가가치세제도 하에서의

면세가 과연 적절한 범위에서 유지되고 있는 것인지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본 보고서에서는, 분석 모형이 허락하는 수준에서 제한적이거나, 식품, 사교육, 의료용역 등에 대한 면세를 과세로 전환하는 경우의 소득재분배 효과 및 세수증감 효과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외에 다른 면세 부문을 과세로 전환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고려하여 균형재정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가능한 최소한의 수준에서 부가가치세율이 설정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부가가치세는 세수 기여도가 가장 큰 세목이고, 이러한 현상은 부가가치세제도가 있는 다른 나라에서도 비슷하게 관찰된다. 이는 아마도 부가가치세가 다른 세목에 비해 전반적으로 경제활동의 효율성을 왜곡하는 정도가 적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수출 부문의 경우 영세율 제도에 의해 세금이 완전히 환급되기 때문에 수출국 내에서는 세부담에 의한 경제활동 왜곡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지만 부가가치세는 과세대상이 광범위하고, 저소득층도 소비 수준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하므로, 정부가 세율을 인상하려 할 경우,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정부의 지출이 증가하여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부가가치세율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면, 국민들에게 관련 정보를 올바르게 알리고, 세율 인상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2005년 연방 선거 공약으로 세율을 인상한 독일의 사례는 세율 인상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보여준다.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제도가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제도를 단순하게 설계하여 효과적이고 공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이를 위해 부가가치세 단일세율 체계를 유지하면서, 사교육, 금융용역, 의료용역, 의약품, 농업용 석유류 등의 부문에서 면세를 줄여나가고, 정부가 재정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가능한 최소한의 수준에서 세율을 설정하여야 한다.

목 차

I. 서론	15
II.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제 현황	19
1. 개요	19
2. 면세 및 영세율	21
가. 면세	21
나. 영세율	26
3. 세수 및 세수율 추이	29
III. 주요국 부가가치세 개정 동향	39
1. OECD 국가에서의 부가가치세제도	39
가. 부가가치세율 현황	39
나. 금융위기 전·후 부가가치세율 조정 동향	42
다. 부가가치세 면세 및 영세율 범위 비교	44
2. 주요국 부가가치세 개정 사례 연구	48
가. 독일	48
나. 스위스	51
다. 스페인	52
라. 일본	54
마. 요약 및 시사점	57
IV. 부가가치세 귀착 및 정책효과 분석	59
1. 분석방법과 분석자료	59
가. 분석방법	59

나. 분석자료	61
2. 부가가치세의 부담 분포 특성	64
가. 소득계층별 분포 특성	64
나. 연령별 분포 특성	81
3. 부가가치세의 형평효과 변화 추이	89
4. 부가가치세 면세제도의 효과 분석	93
가. 부가가치세 면세의 효과: 가계동향조사자료 분석 결과	93
나. 부가가치세 면세의 효과: 산업연관분석 결과	97
다. 부문별 부가가치세 실효세율 및 누적효과	98
5. 부가가치세의 면세범위 조정 시 기대효과 분석	107
가. 면세범위 조정방안 1: 식품 과세 전환을 중심으로	108
나. 면세범위 조정방안 2: 사교육 과세 전환을 중심으로	114
다. 면세범위 조정방안 3: 치료목적 외 의료서비스 및 용품 과세 전환을 중심으로	119
라. 기대효과 요약 및 시사점	123
 V. 결론	 126
 참고문헌	 129

표목차

〈표 II-1〉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면세	24
〈표 II-2〉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세	25
〈표 II-3〉 부가가치세 면세와 영세율의 차이	27
〈표 II-4〉 부가가치세 관련 주요 조세특례제도	28
〈표 II-5〉 세목별 세수입의 연도별 추이	30
〈표 II-6〉 부가가치세 세수 추이	31
〈표 II-7〉 부가가치세 세수율 추이	34
〈표 II-8〉 부가가치세 세수율 추이: OECD 국가를 중심으로	36
〈표 III-1〉 부가가치세율 추이 비교: OECD 국가를 중심으로	40
〈표 III-2〉 금융위기 전·후 부가가치세율 비교: OECD 국가를 중심으로	42
〈표 III-3〉 우리나라와 OECD 표준면세 범위의 비교	44
〈표 III-4〉 부가가치세 감면제도 비교: OECD 국가를 중심으로	46
〈표 III-5〉 스페인 부가가치세율 조정	53
〈표 III-6〉 일본 소비세법 개정안 처리 경과	54
〈표 III-7〉 일본 소비세율 인상 및 복지 지출액 전망	56
〈표 IV-1〉 2011년 가계동향조사 연간화 자료의 주요 기술통계	62
〈표 IV-2〉 2011년 가계동향조사 연간화 자료의 가구주 연령 비중 분포	63
〈표 IV-3〉 소득계층별 부가가치세 부담 분포	66
〈표 IV-4〉 소득계층별 총소득 분포	69
〈표 IV-5〉 부가가치세 및 총소득 10분위 배수의 추이 비교	70

〈표 IV-6〉 소득계층별 소비지출 분포	73
〈표 IV-7〉 부가가치세 및 소비지출 10분위 배수의 추이 비교	74
〈표 IV-8〉 소득계층별 총소득 대비 부가가치세의 실효세부담률 부담 분포	79
〈표 IV-9〉 소득계층별 부가가치세의 부담비중 분포	80
〈표 IV-10〉 연령별 부가가치세의 부담 분포	82
〈표 IV-11〉 연령별 총소득 대비 부가가치세의 실효세부담률 분포	83
〈표 IV-12〉 연령별 부가가치세의 부담 비중 분포	85
〈표 IV-13〉 가구주 연령별 가구구성 비중 분포	87
〈표 IV-14〉 연령별 부가가치세 부담비중: 가구구성 비중의 상대비 분포	88
〈표 IV-15〉 세전·세후 지니계수의 비교	91
〈표 IV-16〉 소득계층별 부가가치세 부담 분포	94
〈표 IV-17〉 소득계층별 부가가치세의 전면 과세 전환 시 세부담 분포 변화	95
〈표 IV-18〉 소득계층별 부가가치세의 전면 과세 전환 시 가계 직접소비분 세수의 변화 기여분포	96
〈표 IV-19〉 부가가치세 과세 전환 시의 소득재분배 효과의 변화	97
〈표 IV-20〉 부가가치세 면세의 효과	98
〈표 IV-21〉 산업부문별 실효세율	100
〈표 IV-22〉 주요 부문별 누적효과(2009년 산업연관표 분석 기준)	107
〈표 IV-23〉 식품의 과세 전환 시 소득계층별 부가가치세 부담 변화(가계동향조사자료 분석 기준)	109
〈표 IV-24〉 식품의 과세 전환 시 소득계층별 부가가치세 세수 증감 변화(직접소비분, 가계동향조사자료 분석 기준)	110
〈표 IV-25〉 식품의 과세 전환 시 소득재분배 효과의 변화(가계동향조사자료 분석 기준)	111
〈표 IV-26〉 식품의 과세 전환 시 실효세율 효과	

(산업연관분석 결과)	112
<표 IV-27> 식품의 과세 전환 시 세수효과(2009년, 산업연관분석 기준)	113
<표 IV-28> 사교육의 과세 전환 시 소득계층별 부가가치세 부담 변화(가계동향조사자료 분석 기준)	115
<표 IV-29> 사교육의 과세 전환 시 소득계층별 부가가치세 세수 증감 변화(직접소비분, 가계동향조사자료 분석 기준)	116
<표 IV-30> 사교육의 과세 전환 시 소득재분배 효과의 변화(가계동향조사자료 분석 기준)	117
<표 IV-31> 식품의 과세 전환 시 실효세율 효과 (산업연관분석 결과)	117
<표 IV-32> 사교육의 과세 전환 시 세수효과 (2009년, 산업연관분석 기준)	118
<표 IV-33> 치료목적 외 의료서비스의 과세 전환 시 소득계층별 부가가치세 부담 변화(가계동향조사자료 분석 기준)	120
<표 IV-34> 치료목적 외 의료서비스의 과세 전환 시 소득계층별 부가가치세 세수 증감 변화(직접소비분, 가계동향조사자료 분석 기준)	120
<표 IV-35> 치료목적 외 의료서비스의 전환 시 소득재분배 효과의 변화(가계동향조사자료 분석 기준)	121
<표 IV-36> 치료목적 외 의료서비스의 과세 전환 시 실효세율 효과(산업연관분석 결과)	122
<표 IV-37> 치료목적 외 의료서비스의 과세 전환 시 세수효과 (2009년, 산업연관분석 기준)	123

그림목차

[그림 II-1] 세율 10%인 경우의 부가가치세 예시	20
[그림 II-2] 최종 소비 직전 거래의 부가가치세 면세	22
[그림 II-3] 중간 단계 거래에서의 부가가치세 면세	23
[그림 II-4] 부가가치세 영세율제도	27
[그림 II-5] 부가가치세 세수율 추이 및 주요 사건	35
[그림 II-6] 부가가치세 세율 및 세수율 사이의 관계: OECD 국가를 중심으로	38
[그림 III-1] 2008년 부가가치세 표준세율 현황: OECD 국가를 중심으로	43
[그림 III-2] 2013년 부가가치세 표준세율 현황: OECD 국가를 중심으로	43
[그림 IV-1] 가구주 연령대별 가구구성 비중 변화 추이 (가계동향조사자료 기준)	64
[그림 IV-2] 총소득 및 소비지출 대비 부가가치세 10분위 배수의 상대비 변화 추이	75
[그림 IV-3] 가구주 연령대별 부가가치세 부담 비중의 변천	84
[그림 IV-4] 부가가치세 세전·세후소득 지니계수의 변화율	91

I. 서론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제도는 단일세율 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세율도 10%로 비교적 낮다. 2013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제도가 있는 OECD 국가에서 세율은 5~27% 범위로 분포하고 있으며, 세율의 단순 평균은 18.9%이다. 한편 식품, 사교육, 농업, 금융용역, 의료용역 및 의약품 등의 몇몇 부문을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 면세 및 영세율 등의 감면제도도 비교적 제한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다양한 재화 및 용역의 거래에 대한 정보도 비교적 효과적으로 파악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00년 전후로 도입, 확대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현금영수증 제도 등이 효과를 거두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제도적 요인들이 결합적으로 작용하여,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제도는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부가가치세 세수율(VAT Revenue Ratio: VRR)을 보여준다. 여기서 부가가치세 세수율이란 잠재적인 세수 대비 세수 실적치의 비율로서 부가가치세제도의 성과를 보여주는 주요 지표 중 하나이다.

한편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부가가치세제도가 있는 많은 나라에서 부가가치세는 전체 조세수입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는 중요 세목 중 하나이다.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모든 거래를 과세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가계, 기업, 공공부문 등의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도 광범위하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동안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제도가 보이고 있는 장점, 한계, 그리고 앞으로의 개선 방향에 대한 연구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¹⁾ 이는

1) 예외적으로 김승래·박명호·홍범교(2007), 김유찬(1995), 박기백(2000), 박명호(2008), 성명재(2013), 성명재·박기백(2008), 정재호(2010) 등의 선도적

아마도 부가가치세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한 연구가 부가가치세 부담의 역진성을 우려하는 사회적 통념에 의해 제약되어온 탓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부가가치세제도의 중요성을 생각해볼 때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제도의 장점과 한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제도적 개선방향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이러한 연구를 진행하는 데 있어 출발점을 설정하고 연구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본 보고서의 목적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서로 독립되어 있지만 보완적인 역할을 하는 세 연구 주제를 다루며 각 주제가 하나의 개별적인 장을 구성한다. 먼저 제Ⅱ장에서는 우리나라 제도의 현황에 대해 알아본다. 이어서 제Ⅲ장에서는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그리고 제Ⅳ장에서는 가계동향조사, 산업연관표 등의 실증 자료에 근거하여 미시적으로 세부담 귀착 및 정책 효과에 대해 분석해본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홍성훈 박사가 제Ⅱ장과 제Ⅲ장을 집필하였으며, 홍익대학교 성명재 교수가 제Ⅳ장을 집필하였다.

본 보고서의 본문에 해당하는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제Ⅱ장에서는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제도의 현황에 대해 알아본다. 부가가치세 과세, 면세 및 영세율제도의 차이점을 살펴보고, 면세 및 영세율제도의 현황에 대해서도 알아본다. 그리고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의 세수규모 및 세수율 추이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2000년 이후 부가가치세 세수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는 세수율이 70%를 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국제적으로 비교해보더라도, 세수율이 70%를 넘는 나라는 우리와 함께 뉴질랜드, 룩셈부르크, 에스토니아, 스위스뿐이며, OECD 국가에서의 세수율의 단순 평균은 55%에 불과하다는 사실도 알 수 있다.

다음 제Ⅲ장에서는 다른 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부가가치세제도 개정방향에 대해 정리해본다. 우선 OECD 국가를 중심으로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부가가치세제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알아본다. 2013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제도가 있는 OECD 국가 33개국 중에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8개국이 세율을 인상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들 나라는 평균적으로 세율을 약 2%p 인상하였다.

그리고 독일, 스위스, 스페인, 일본 등의 네 나라를 중심으로 부가가치세 개정사례에 대해 분석해 본다. 독일에서는 부가가치세율 인상안이 2005년 연방 선거에서 당시 야당 대표이자 총리 후보였던 앙겔라 메르켈(Angela Merkel)의 선거공약으로 처음 공론화되었다. 메르켈 후보는 악화되고 있던 독일 정부의 재정 상황에 대해 유권자들에게 솔직하게 알리고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부가가치세 증세공약을 제시하여, 증세공약이 유권자들에게 인기 없는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집권에 성공할 수 있었다.

스위스에서는 단일세율을 도입하고 면세 범위를 축소하는 부가가치세 단순화 개정안이 논의되었다. 하지만 이 단순화 개정안은 연방의회를 통과하지 못하였고, 역설적이게도, 사회보장보험에 대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세율을 인상하는 또 다른 개정안은 국민투표를 통과하였다. 부가가치세 경감세율, 면세 등의 세제 혜택을 줄여 세수입을 확보하는 것이 전반적으로 세율을 인상하여 세수입을 확보하는 것에 비해 경제적으로 더욱 효율적인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더욱 어려운 정책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스페인에서는 2010년과 2012년 두 차례에 걸쳐 부가가치세율을 인상하였다. 2009년 스페인 정부의 재정수지적자는 GDP 대비 11%를 넘었고, 스페인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부가가치세제도를 두 차례에 걸쳐 개정하였다.

그리고 일본에서도 소비세 증세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5%인 세율을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10%로 인상하는 「소비세법」 개정안이 의회를 통과하였지만, 개정안 부칙에 경제상황에 따라 세율 인상을 중지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포함되어, 세율 인상 시행 여부에 대해 관심이 모아

지고 있다. 일본 정부가 소비세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세율 인상으로 늘어나는 세수입을 노년층에 수혜대상이 집중되는 기초연금, 노령수당, 요양서비스 등에 활용하기로 하여, 노년층 유권자의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는 점이 흥미롭다.

이어서 제Ⅳ장에서는 부가가치세 부담 귀착 및 정책효과에 대해 알아본다. 우선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정태적 분석모형을 만들고 소득계층별 가구당 평균 총소득, 소비지출, 부가가치세 부담액 등을 계산한다. 연도별, 가구주 연령대별로 이러한 변수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도 살펴본다. 이어서 산업연관표 자료를 활용하여 세세분류 기준 403개 부문에서의 부가가치세 실효세율을 추정한다. 이러한 추정을 바탕으로 부가가치세 부담의 누적 효과에 대해 살펴본다. 그리고 현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고 있는 부문을 과세로 전환할 경우의 가상적인 세 부담 변화, 소득 재분배 효과에 대해서도 분석해본다. 여기서 미가공 식품, 사교육, 치료 목적이 아닌 의료용역 등에 대한 과세 전환 효과를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제Ⅴ장에서는 본 보고서의 내용을 요약하고 앞으로 부가가치세제도를 운영하는 데 있어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점에 대해 간략히 정리해 본다.

Ⅱ.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제 현황

1. 개요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모든 재화 및 용역의 거래를 과세대상으로 삼는 일반소비세이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형평성에 대한 사회적 배려, 특정 업종에 대한 산업 진흥 등을 목적으로 일부 거래가 면세되기도 한다. 그리고 국제적으로 소비지 과세 원칙을 따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최종 소비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즉, 우리나라로 수입하여 소비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해서는 과세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수출하여 국외에서 소비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는 담세자와 납세의무자가 다른 간접세이다. 일반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생산하여 최종적으로 소비하는 데 여러 거래 단계를 거치는데, 부가가치세의 담세자는 최종소비자이고, 납세의무자는 각 거래에 참여하는 사업자이다. 면세가 없는 부가가치세제도하에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각 거래 단계마다 참여하는 사업자가 나누어 납부한다. 각 사업자가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의 차이만큼으로, 사업자가 만들어낸 부가가치의 금액에 세율을 곱한 것과 동일하다.

우리나라는 기존의 여러 영업세와 물품세를 대체하여 1977년부터 부가가치세제도를 도입하였다. 도입 당시에는 13% 기본세율에 3% 내외로 탄력세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하지만 도입 초기에 10%로 세율을 설정하였고, 그 이래로 10% 단일세율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낮은 단일세율의 부가가치세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2년 부가가치세수는 58조

6천억원으로 모든 국세 세목 중에서는 세수가 가장 큰 세목이다.²⁾

부가가치세는 다양한 거래에 대해 부과되기 때문에, 제도를 운영하는 데 있어, 세제·세정당국이 나라 경제의 흐름에 대한 거래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매 거래마다 발행되는 세금계산서를 통해 이러한 거래 정보가 드러난다. 이를 통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매출액과 매출세액을 계산할 수 있으며, 구매하는 사업자는 매입액과 매입세액을 산정할 수 있다. 그러면 각 사업자는 매출세액 합계에서 매입세액 합계를 공제한 만큼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다음 그림의 예를 살펴보자.

[그림 II-1] 세율 10%인 경우의 부가가치세 예시

	원료	제조	유통	소비
부가가치	100	350	50	
매입·매출액		110	495	550
매입·매출세액		10	45	50
부가가치세액	10	35	5	

위 그림의 예에서는 최종 소비 이전에 총 세 명의 사업자가 한 번씩 총 세 단계로 거래를 한다. 원료를 생산하면서 부가가치 금액으로 100원을 생산하고, 제조 과정에서 부가가치 금액 350원, 유통 과정에서 부가가치 금액 50원을 추가한다. 부가가치세의 세율이 10%라고 가정하자. 그러면 원료 생산업자의 매출액은 110원이고, 제조업자의 매입액은 110원, 매출액은 495원이며, 유통업자의 매입액은 495원, 매출액은 550원이다. 부가가치세율이 10%이므로 각 매입·매출액의 10/110만큼이 매

2) 2010년부터 부가가치세수의 5%를 분배하는 지방소비세가 신설되었다. 주목할 점은 지방소비세가 부가가치세에 추가로 더하여 신설된 것이 아니라, 기존의 부가가치세수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에 나누는 방식으로 신설되었다는 것이다.

입·매출세액이 된다. 그러므로 단계별로 각 거래에서의 매입·매출세액은 10, 45, 50원씩이다. 각 사업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만큼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원료 생산업자는 10원, 제조업자는 35원, 유통업자는 5원씩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한다. 물론 여기서 각 사업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일 뿐, 실제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사람은 최종소비자이다. 즉, 최종소비자가 유통업자로부터 총부가가치 500원인 상품을, 부가가치세액 50원을 더하여 550원에 구매하였고, 세 명의 사업자들은 이 부가가치세액 50원을 각각이 생산한 부가가치에 비례하도록 나누어 납부하는 것이다.

2. 면세 및 영세율

가. 면세

부가가치세 면세제도는 일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면제하는 제도이다. 면세사업자가 면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면세품목의 매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받지 않고, 이전 단계에서 이미 납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도 못한다. 그러므로 면세품목이라고 하더라도, 최종 소비를 위한 거래 이전에 발생한 부가가치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만약 중간 거래 단계에 면세 거래가 있을 경우, 그 이후의 거래에서는 면세 거래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만큼의 세부담 누적 효과가 일어난다. 이러한 관점에서 면세제도를 편의상 부분면세제도라 부르기도 한다. 다음의 두 예를 살펴보자.

[그림 II-2] 최종 소비 직전 거래의 부가가치세 면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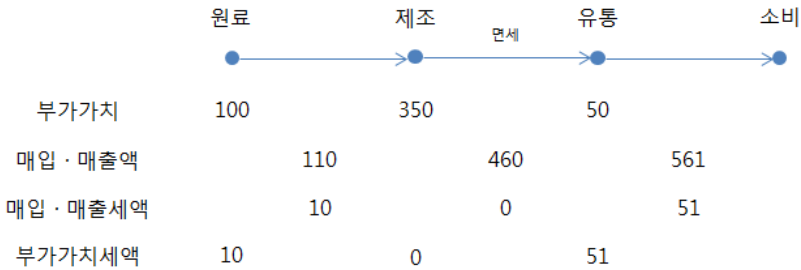
	원료	제조	유통	면세	소비
부가가치	100	350	50		
매입·매출액		110	495	545	
매입·매출세액		10	45	0	
부가가치세액	10	35	0		

위 그림의 예는 앞의 예와 동일한 거래 흐름 및 부가가치 생산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최종 소비 직전의 거래가 면세라는 점이 다르다. 면세가 아닌 거래의 세율은 10%로 동일하다. 면세품목을 거래하는 유통업자는 최종소비자로부터는 유통 단계에서 부가가치세를 받지 않고, 제조업자로부터 상품을 매입하면서 납부한 매입세액 45원을 공제받지도 않는다. 그러므로 유통업자는 최종소비자에게 500원만큼의 가치가 있는 상품을 이전 단계까지의 부가가치세액 합계인 45원을 더하여, 545원에 판매한다. 이 부가가치세액 45원을 제조업자가 35원, 원료 생산업자가 10원으로 나누어 납부한다. 최종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면, 면세품목을 거래하는 유통업자의 부가가치 50원에 대해서만 해당 부가가치세액 5원이 줄어드는 셈이다. 부가가치세의 실효세율을 총부가가치 금액 대비 총부가가치세액의 백분위 비율로 정의하면, 위 그림의 예에서 부가가치세의 실효세율은 9%이다. 일반적으로 최종 소비 직전의 거래가 면세이면, 부가가치세의 실효세율이 법정세율에 비해 낮아지는 효과가 일어난다.

다음 그림의 예에서는 중간 단계의 거래가 면세이다. 제조업자가 면세사업자로서 유통업자에게 상품을 공급한다. 이 경우 제조업자는 유통업자에게 제조 단계의 부가가치에 대한 세액을 받지 않고, 원료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납부한 매입세액 10원도 공제받지 못한다. 한편 면세 상품을 구매한 유통업자의 매입세액은 0원이다. 그러므로 제조업자는 450

원만큼의 가치가 있는 상품을 이전 단계에서 납부한 10원의 세액을 더하여 460원에 유통업자에게 공급하고, 여기에 유통업자는 자신의 부가가치 50원을 더하여 510원에, 부가가치세액 51원을 추가하여 561원의 가격을 받고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한다. 앞의 예들과 마찬가지로 총 부가가치 금액은 500원이지만, 중간 단계 거래에서의 면세로 인해 세부담 누적 효과가 발생하여,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총부가가치세액은 61원이 된다. 그리고 면세사업자인 제조업자를 제외하고, 원료 생산업자가 10원, 유통업자가 51원의 부가가치세액을 소비자를 대신하여 납부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 부가가치세의 실효세율은 12.2%이다. 일반적으로 중간 단계 거래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면, 실효세율이 법정 세율보다 높아지는 부가가치세 누적효과가 발생한다.

[그림 II-3] 중간 단계 거래에서의 부가가치세 면세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은 「부가가치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해진다.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면세대상은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 II-1〉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면세

구분	면세대상
재화 용역 공급	기초생활 필수품 미가공 식료품(식용 농·축·수·임산물 포함) 국내산 비식용 농·축·수·임산물 수돗물 연탄과 무연탄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 여객운송용역 (항공기·고속버스·전세버스·택시·고속철도 제외)
	국민후생 의료보건용역(성형수술 제외 및 수의사의 동물 진료용역 일부 한정)과 혈액 교육용역(무도학원, 자동차운전학원 제외)
	문화 관련 도서, 신문, 잡지, 관보, 뉴스통신 및 방송(광고 제외) 예술창작품(골동품 제외), 예술행사, 문화행사와 아마추어 운동경기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또는 식물원에서의 입장
	생산요소 관련 금융·보험용역 토지의 공급 공동주택 어린이집의 임대용역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 저술가·작곡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기타 우표, 인지, 증지, 복권과 공중전화 특수용 담배 종교, 자선, 학술, 구호,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표 II-1〉의 계속

구분		면세대상
수입 재화	생필품	미가공식료품
	국민후생용품	국민후생용품
	기증되는 수입재화	종교·자선·구호단체에의 기증재화
		국가조직 등에의 기증재화 기증되는 소액물품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	이사·이민·상속으로 인한 수입재화
		여행자휴대품·별송품·우송품
상품견본·광고용 물품		
박람회·전시회·영화제 등 행사출품용 재화		
국제관례상의 관세면제재화 재수입재화·일시수입재화 담배·기타의 관세 감면재화		

자료: 국제청 홈페이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그리고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은 다음 표에서 정리한 바와 같다.

〈표 II-2〉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세

구분	면세대상	
재화 용역 공급	2015.12.31까지 공급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지방의 자가발전용 석유류 - 사업장 등의 구내식당에서 공급하는 음식용역 - 농·어업경영 및 농·어작업의 대행용역 - 천연가스 사용하는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 개인택시운송사업용으로 간이과세자에게 공급하는 자동차 - 목재펠릿
	2014.12.31까지 공급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주택(국민주택 초과)의 일반관리용역·경비용역 및 청소용역 - 영·유아용 기저귀 및 분유 - BTO방식을 준용하여 민자로 건설하는 고등교육기관 학교시설 운영사업 -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용 전기버스

〈표 II-2〉의 계속

구분	면세대상	
	2013.12.31까지	- 금지금의 공급 및 수입에 대한 면세
	항구적 면세	- 국민주택의 공급, 건설 및 설계용역 - 공동주택(국민주택 이하) 일반관리용역 및 경비용역 - 국민주택규모 노인복지주택 일반관리용역·경비용역 및 청소용역 - 정부업무대행단체가 제공하는 재화·용역 -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철도시설에 대한 관리권을 설정받는 방식으로 국가에 공급하는 철도시설 - 희귀병 치료를 위한 치료제 등
수입 재화	한시적 면세	- 농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농어업용 기자재 -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관련물품 등 - 해저광물자원 개발을 위한 장비
	항구적 면세	- 무연탄·과세사업용 선박·보세건설물품
석유류 면세	농·임·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	

자료: 국세청 홈페이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106의 2, 106의 3

나. 영세율

부가가치세 영세율제도는 일정한 재화 및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세율을 영(0)으로 하여 매출세액도 영이 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고 이전 거래에서 낸 매입세액도 전부 환급받는 제도이다. 주로 소비지 과세 원칙에 따라 수출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완전히 면제하기 위해 운영된다. 즉, 과세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 매출세액은 영으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아도 되고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하여 환급받기 때문에 세부담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영세율제도를 편의상 완전면세제도라 부르기도 한다. 다음 그림의 예를 살펴보자.

[그림 II-4] 부가가치세 영세율제도



앞의 예들과 마찬가지로 세 명의 사업자가 순차적으로 한 번씩 총 세 번의 거래를 한다. 그런데 여기서는 유통업자가 상품을 국외로 수출하는 점이 다르다. 수출상품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하면 유통업자의 매출세액은 0원이 된다. 그러므로 유통업자는 매출세액 0원과 이전 단계에서의 매입세액 45원의 차이인 45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이전 거래 단계에서 원료 생산업자가 10원, 제조업자가 35원을 납부하였으므로, 총부가가치세액은 0원이 된다. 부가가치세 부담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다.

다음 표는 부가가치세 면세와 영세율의 차이점을 보여준다.

〈표 II-3〉 부가가치세 면세와 영세율의 차이

구분	면세	영세율
개념	일정한 재화·용역의 공급에 대해 납세의무를 면제하는 제도	일정한 재화·용역의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에 영(0)의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
대상	기초생활품, 의료용역, 교육용역 등	수출, 조세정책적 목적 등
도입목적	부가가치세 세부담 역진성 완화	소비지국 과세 원칙 실현
납세의무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 없음	납세의무 있음

자료: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taxinfo.nts.go.kr/>)

국제적으로 부가가치세와 같은 일반소비세에는 소비지 과세 원칙을 적용한다. 수출상품에 대해 영세율제도를 적용하여, 수출 국가에서의

세부담을 완전히 없애고, 소비지인 수입국가에서 과세하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제하에서는 수출상품 이외에도 영세율제도를 적용하는 경우가 있다. 농·임·축산업 기자재에 대한 영세율,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영세율, 도시철도건설용역 및 방위산업물자에 대한 영세율 등이 그러한 예이다.

〈표 II-4〉 부가가치세 관련 주요 조세특례제도

(단위: 억원)

순위	조세특례제도	근거법	2011 (실적)	2012 (잠정)	2013 (전망)
1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부가법 32의2	13,831	15,654	14,413
2	농업·축산업·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조특법 105의5	13,265	12,539	13,513
3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특례	조특법 108	6,732	8,351	7,375
4	농·임·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면세유)	조특법 106의2①	4,194 (15,349)	4,545 (15,951)	4,270 (16,129)
5	도시철도건설용역 부가가치세 영세율	조특법 105의3	2,752	2,278	2,604
6	방위산업물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조특법 105의1	2,055	1,959	2,207
7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조특법 106의7	1,524	1,591	1,576
8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에 관한 특례	조특법 105의2①	1,452	1,167	1,319
9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가맹점에 대한 과세 특례	조특법 126의3	1,085	1,097	1,082
10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조특법 105의6	852	612	902
상위 10대 소계 (A)			47,742	49,793	49,261
부가가치세 총계 (B)			98,208	102,706	98,374
비중 (A/B)			48.6%	48.5%	50.1%

주: 1. 순위는 2011년 실적 금액 기준

2. 면세유 항목의 경우 부가가치세 감면액을 기준으로 하며, ()안의 숫자는 관련된 모든 간접세 감면 총액으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세, 교육세 등을 포함

자료: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

한편 우리나라 정부는 매년 조세지출예산서를 통해 여러 조세특례제도들의 현황에 대해 알리고 있다. 여기서 조세특례제도란, 특정한 경제주체들에게 경제활동의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소득, 소비, 자산 보유 등에 따른 세부담을 한시적으로 경감하는 제도를 일컫는다. 매년 조세지출예산서를 통해 보고하는 조세특례제도 중에서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제도들을 2011년 기준으로 가장 지출액이 큰 순서로 나열하면 위의 표와 같다. 여기서 조세특례제도의 지출액이란 해당 특례제도를 시행하여 발생한 세수입 손실액의 추정치를 이른다. 위의 표에서는 부가가치세 관련 조세 특례 제도 중에서 지출액이 가장 큰 상위 10개 항목을 보여준다.

위의 표를 통해 여러 영세율 및 면세제도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수입 손실액이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2011년 기준으로, 농업·축산업·임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따른 세수입 손실액은 1조 3천억원에 이르며, 농·임·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에 의한 세수입 손실액은 4천억원에 이르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면세유제도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비롯하여 관련된 모든 세목을 합산할 경우, 지출액이 1조 5천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세수 및 세수율 추이

우리나라에서 부가가치세는 세수가 가장 큰 세목이다. 2011년 국세의 총세수입은 약 192조 4천억원인데, 이 중에서 지방소비세 할당분을 제외한 부가가치세의 세수입은 약 51조 9천억원으로, 국세 세수입의 약 27%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의 세수입은 약 42조 3천억원, 법인세의 세수입은 약 44조 9천억원이다. 국세와 지방세를 합산하여 총조세수입을 정의하고, 2011년 기준으로 총조세수입을 계산하면, 약 244조 7천억원임을 알 수 있다. 2011년 지방소비세를 포함한 부가가치세의 세수입은 약 54조 6천억원으로, 총조세수입의 약 22%를 차지한다.

다음 표는 세목별 세수입의 연도별 추이를 보여준다.

〈표 II-5〉 세목별 세수입의 연도별 추이

(단위: 억원)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국세	1,380,442	1,614,591	1,673,060	1,645,416	1,777,184	1,923,812
내국세	1,138,795	1,325,081	1,365,563	1,364,769	1,435,061	1,596,018
직접세	627,559	771,152	782,867	721,050	778,062	904,932
소득세	310,043	388,560	363,551	344,233	374,619	422,877
법인세	293,622	354,173	391,545	352,514	372,682	448,728
상속세	8,676	10,590	11,817	12,207	12,028	12,586
증여세	15,216	17,830	15,953	12,096	18,733	20,741
간접세	479,281	518,342	539,361	569,316	607,324	642,521
부가가치세	380,929	409,419	438,198	469,915	491,212	519,069
개별소비세	49,035	51,611	44,994	36,420	50,658	55,373
주세	24,056	22,623	28,294	27,641	28,782	25,293
전화세	5	0	0	0	0	0
증권거래세	25,257	34,688	27,875	35,339	36,671	42,787
인지세	5,879	5,880	5,729	5,437	5,219	6,239
과년도수입	25,691	29,708	37,607	68,966	44,456	42,324
교통세	95,938	114,635	119,093	100,920	139,701	115,460
방위세	8	3	3	2	5	2
교육세	34,245	38,612	41,796	37,542	46,450	42,464
농어촌특별세	29,597	38,00	37,549	38,420	39,014	48,949
종합부동산세	13,275	24,143	21,299	12,071	10,289	11,019
관세	68,584	74,108	87,757	91,691	106,663	109,901
지방세	412,937	435,243	454,797	451,678	491,598	523,001
총조세수입	1,793,379	2,049,834	2,127,857	2,097,094	2,268,782	2,446,813

주: 부가가치세는 2010.1.1.부터 지방소비세가 차감됨

자료: 내국세, 교통세: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전매익금, 방위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관세, 종합부동산세: 대한민국정부, 『세입세출결산보고서』, 각 연도.

한편 지방소비세를 포함한 부가가치세의 세수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표 II-6〉을 보면 전체 부가가치세의 세수입에서 수입분이

II.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제 현황 31

차지하는 비율이 국내분이 차지하는 비율에 비해 상당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12년 기준으로 수입분의 점유율은 88.8%이고, 국내분의 점유율은 11.2%이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재화 및 용역의 상당 부분을 다른 나라로 수출하면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의해 국내분을 대부분 환급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2012년에 납부된 국내분 부가가치세 세수입은 약 57조 3천억원에 이르지만, 이 중에서 약 50조 7천억원이 환급되어, 세수 실적은 약 6조 6천억원 정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수입분의 경우에는, 다른 나라로부터 원자재나 중간재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가공, 유통한 후 최종적으로 국내 소비자에게 공급하면, 원자재 및 중간재 수입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환급되지 않고 세수입으로 남는다. 2012년 부가가치세 수입분 세수입은 약 52조원이다.

〈표 II-6〉 부가가치세 세수 추이

(단위: 십억원, %)

연도	합계 (A=D+E)	국내분			수입분 (E)	점유율	
		납부 (B)	환급 (C)	실세수 (D=B-C)		국내분 (D/A)	수입분 (E/A)
1990	6,964.4	5,938.8	3,292.6	2,646.2	4,318.2	38.0	62.0
1991	8,252.6	7,254.2	4,204.1	3,050.1	5,202.5	37.0	63.0
1992	10,076.3	8,674.9	3,983.2	4,691.7	5,384.6	46.6	53.4
1993	11,687.5	10,199.8	4,287.7	5,912.1	5,775.4	50.6	49.4
1994	13,058.0	11,208.8	5,161.5	6,047.3	7,010.7	46.3	53.7
1995	14,636.9	12,801.1	7,051.0	5,750.1	8,886.8	39.3	60.7
1996	16,789.5	14,955.1	8,269.8	6,685.3	10,104.2	39.8	60.2
1997	19,488.0	16,518.8	8,543.2	7,975.6	11,512.4	40.9	59.1
1998	15,706.8	15,539.6	10,767.1	4,772.5	10,934.3	30.4	69.6
1999	20,369.0	18,200.5	9,858.6	8,341.9	12,027.1	41.0	59.0
2000	23,212.0	20,846.0	13,397.6	7,448.4	15,763.6	32.1	67.9
2001	25,834.7	23,690.6	13,997.9	9,692.7	16,142.0	37.5	62.5
2002	31,608.8	28,854.2	14,259.7	14,594.5	17,014.3	46.2	53.8
2003	33,447.0	31,453.9	16,766.1	14,687.8	18,759.2	43.9	56.1
2004	34,571.8	33,933.3	21,834.9	12,098.4	22,473.4	35.0	65.0

〈표 II-6〉의 계속

(단위: 십억원, %)

연도	합계 (A=D+E)	국내분			수입분 (E)	점유율	
		납부 (B)	환급 (C)	실세수 (D=B-C)		국내분 (D/A)	수입분 (E/A)
2005	36,118.6	35,570.6	23,059.9	12,510.7	23,607.9	34.6	65.4
2006	38,092.9	38,148.5	26,334.6	11,813.9	26,279.0	31.0	69.0
2007	40,941.9	41,290.2	29,000.0	12,290.2	28,651.7	30.0	70.0
2008	43,819.8	43,616.5	38,376.7	5,239.8	38,580.0	12.0	88.0
2009	46,991.5	48,012.9	35,385.3	12,627.6	34,363.9	26.9	73.1
2010	51,706.8	50,725.4	41,438.8	9,286.6	42,420.2	18.0	82.0
2011	54,638.8	54,609.5	50,446.3	4,163.2	50,475.6	7.6	92.4
2012	58,597.6	57,265.3	50,684.8	6,580.5	52,017.1	11.2	88.8

주: 2010년부터 지방소비세 (부가가치세의 5% 분배) 신설, 합계는 지방소비세를 포함한 금액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는 국내에서 일어나는 최종 소비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그러므로 부가가치세의 잠재적인 세원규모를 국민계정의 최종소비지출 규모를 기준으로 하여 파악해볼 수 있을 것이다. 국민계정의 최종소비지출에는 가계의 소비지출,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의 소비지출, 그리고 정부의 소비지출이 모두 포함된다. 그런데 최종소비지출에는 이미 납부된 부가가치세액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최종소비지출에서 부가가치세의 실제 세수입만큼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부가가치세의 잠재적인 세원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³⁾

이제 다음과 같은 ‘가상적인’ 부가가치세제도의 조건을 상상해보자.

- (i) 영세율제도는 수출하는 재화 및 용역에만 적용된다.
- (ii) 면세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
- (iii) 경감세율이 존재하지 않으며 모든 재화 및 용역의 거래에 대해

3) 이하의 내용은 *Consumption Tax Trends*(OECD, 2012) Chapter 4, “Measuring performance of VAT: The VAT Revenue Ratio”를 참고하여 우리나라의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단일세율이 적용된다.

(vi) 부가가치세 탈루 등 조세범죄가 일어나지 않으며 부과된 세액만큼 모두 납부된다.

이상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가상적인 부가가치세제도하에서는 잠재적인 세원에 세율을 곱하여, 세수를 산정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의 부가가치세제도는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한다.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경우만 보더라도, 영세율제도가 수출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면세제도도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귀금속 거래를 남용한 부가가치세 탈루 등의 조세범죄도 상당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나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다행히도 경감세율이 따로 없는 단일세율제도를 유지하고 있어, 네 가지 조건 중에서 (iii)을 부분적으로 만족시키고 있다.

가상적인 부가가치세제 하에서의 세수와 세수 실적치를 비교하여, 둘 사이의 비율을 부가가치세의 세수율(VAT Revenue Ratio: VRR)로 정의하자. 즉, 부가가치세의 세수율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⁴⁾

$$\text{세수율} = \frac{\text{세수}}{(\text{최종소비지출} - \text{세수}) \times \text{세율}}$$

부가가치세의 연도별 세수율을 계산하여 그 추이를 정리하면 <표 II-7>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 II-7>에서 '잠재 세원'이란 최종소비지출

4) 세수율 이외에도 부가가치세제도의 성과(performance)를 측정하는 다양한 지표가 있다. 예전부터 널리 사용된 부가가치세 효율성 비율(VAT efficiency ratio)이 대표적인 예이다. 여기서 부가가치세의 효율성 비율은, 국내총생산에 세율을 곱한 값을 잠재적 세수입이라 보고, 이 값과 실제 세수입 사이의 비율로 정의된다. 하지만 많은 나라에서 부가가치세가 일반소비세로서 운용되고 있고, 국제적으로 소비지 과세 원칙을 따라 수출 영세율제도도 운용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총생산을 부가가치세의 세원으로 가정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최근 들어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C-효율성 비율(C-efficiency ratio)이 개발되었는데, 이를 바탕으로 OECD(2012)에서 개발한 것이 부가가치세 세수율(VAT Revenue Ratio) 지표이다.

에서 세수입을 차감한 값을 의미한다.

〈표 II-7〉 부가가치세 세수율 추이

(단위: 십억원, %)

연도	최종소비지출 (A)	부가가치세수 (B)	잠재 세원 (C=A-B)	세율 (D)	세수율 B/(C*D)
1990	119,474.6	6,964.4	112,510.2	10.0	61.9
1991	143,918.4	8,252.6	135,665.8	10.0	60.8
1992	166,656.4	10,076.3	156,580.1	10.0	64.4
1993	188,524.2	11,687.5	176,836.7	10.0	66.1
1994	222,474.7	13,058.0	209,416.7	10.0	62.4
1995	260,129.5	14,636.9	245,492.6	10.0	59.6
1996	298,984.1	16,789.5	282,194.6	10.0	59.5
1997	329,321.1	19,488.0	309,833.1	10.0	62.9
1998	315,211.7	15,706.8	299,504.9	10.0	52.4
1999	356,270.7	20,369.0	335,901.7	10.0	60.6
2000	402,490.4	23,212.0	379,278.4	10.0	61.2
2001	447,261.4	25,834.7	421,426.7	10.0	61.3
2002	499,646.0	31,608.8	468,037.2	10.0	67.5
2003	520,156.0	33,447.0	486,709.0	10.0	68.7
2004	545,188.1	34,571.8	510,616.3	10.0	67.7
2005	585,440.6	36,118.6	549,322.0	10.0	65.8
2006	626,818.3	38,092.9	588,725.4	10.0	64.7
2007	673,526.3	40,941.9	632,584.4	10.0	64.7
2008	718,571.6	43,819.8	674,751.8	10.0	64.9
2009	746,294.9	46,991.5	699,303.4	10.0	67.2
2010	795,378.7	51,706.8	743,671.9	10.0	69.5
2011	844,938.2	54,638.8	790,299.4	10.0	69.1
2012	882,232.5	58,597.6	823,634.9	10.0	7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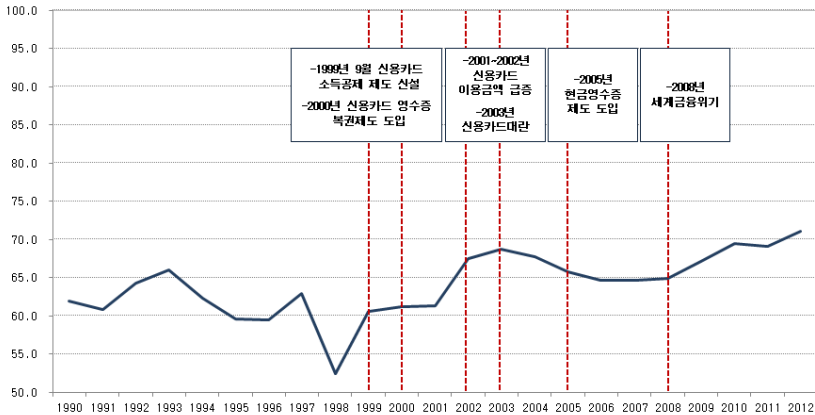
주: 2010년부터 지방소비세 (부가가치세의 5% 분배) 신설. 부가가치세수는 지방 소비세를 포함한 금액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통계청,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우리나라에서 부가가치세의 세수율은 현재 약 70% 정도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연도별로 보면 2001년 이전에는 세수율이 약 60% 정도였고, 그 후 60% 중반으로 상승하여 안정적으로 유지되다가, 최근 들어 60% 후반에서 70%까지 상승한 것을 알 수 있다. 2000년 이후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에 대한 소득공제제도가 활발히 이용되고, 2005년에는 현금영수증제도가 도입되면서, 부가가치세의 세수율이 점진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가 없던 1997년 외환위기 당시에는 부가가치세의 세수입 및 세수율에 큰 변화가 있었던 반면,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제도가 자리를 잡은 2008년 세계금융위기 때에는 세수입 및 세수율에 별 다른 변화가 없었던 것을 알 수 있다. 다음 그림에서는 부가가치세의 연도별 세수율 추이를 주요 사건들이 발생한 시점과 함께 보여준다.

[그림 II-5] 부가가치세 세수율 추이 및 주요 사건



한편 부가가치세의 세수율을 국제적으로 비교하여 보면, 우리나라의 세수율이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현재 34개 OECD 국가 중에서 미국을 제외한 33개국이 부가가치세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이 33개국 중에서 부가가치세의 세수율

이 65% 이상인 나라는 2009년 기준으로 뉴질랜드(99%), 룩셈부르크(92%), 에스토니아(76%), 스위스(71%), 이스라엘(68%), 일본(67%), 그리고 한국(67%) 등 7개국뿐이다. <표 II -8>에서는 2005년 이후 5개년 동안의 연도별 세수율 추이를 OECD 국가를 중심으로 하여 보여준다.

<표 II-8> 부가가치세 세수율 추이: OECD 국가를 중심으로

(단위: %)

국가	세율 (2009년 기준)	2005	2006	2007	2008	2009
Australia	10.0	56	55	54	50	52
Austria	20.0	61	59	61	61	61
Belgium	21.0	50	52	51	48	47
Canada	5.0	52	48	52	51	49
Chile	19.0	67	64	67	70	59
Czech Republic	19.0	57	53	55	58	56
Denmark	25.0	62	64	65	62	59
Estonia	18.0	75	81	80	67	76
Finland	22.0	60	61	60	58	55
France	19.6	51	51	51	49	46
Germany	19.0	55	57	55	56	56
Greece	19.0	48	47	48	46	39
Hungary	20.0	49	55	59	57	62
Iceland	24.5	62	65	60	54	47
Ireland	21.5	65	66	62	54	46
Israel	15.5	64	64	69	68	68
Italy	20.0	41	43	43	41	37
Japan	5.0	71	70	69	67	67
Korea	10.0	66	65	65	65	67
Luxembourg	15.0	87	87	91	94	92
Mexico	15.0	31	34	34	35	31
Netherlands	19.0	61	60	62	60	55
New Zealand	12.5	102	103	96	97	99
Norway	25.0	57	61	63	57	54

〈표 II-8〉의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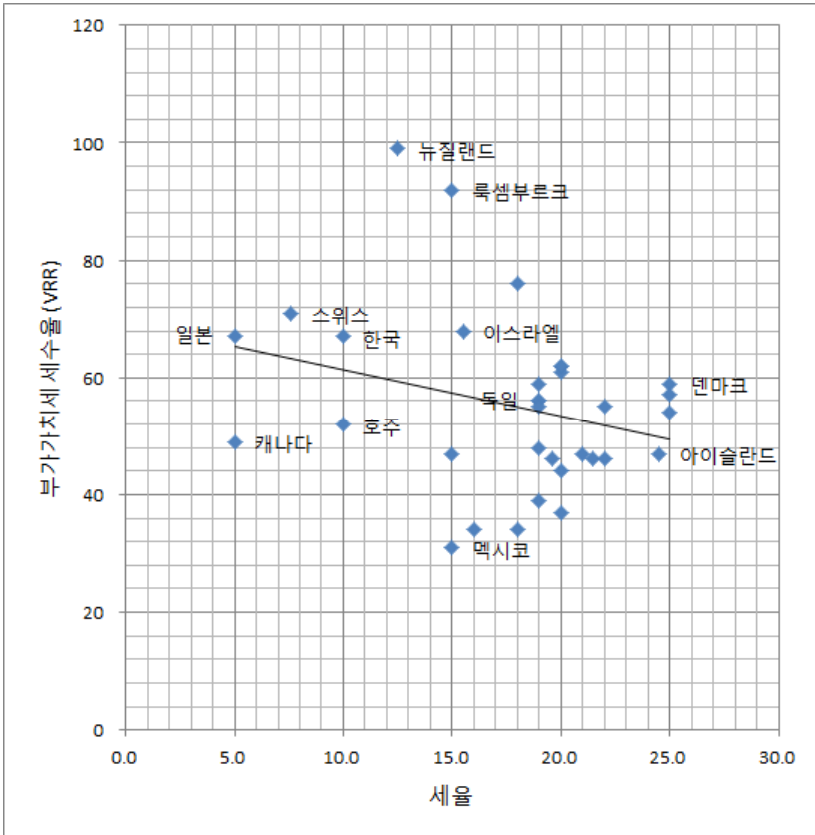
(단위: %)

국가	세율 (2009년 기준)	2005	2006	2007	2008	2009
Poland	22.0	46	50	53	49	46
Portugal	20.0	57	53	53	51	44
Slovak Republic	19.0	61	57	53	54	48
Slovenia	20.0	66	67	69	67	62
Spain	16.0	56	57	54	45	34
Sweden	25.0	55	56	57	58	57
Switzerland	7.6	73	75	74	74	71
Turkey	18.0	38	34	36	35	34
United Kingdom	15.0	48	48	48	46	47
단순평균(unweighted average)		59	59	60	58	55

자료: OECD(2012), p. 113.

부가가치세의 세수율이 높게 나타나는 이유로는 낮은 표준세율 유지 및 제한적인 감면제도(경감세율, 영세율, 면세 등) 운용 등이 꼽힌다. 하지만 부가가치세의 세수율이 이러한 요인들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세수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나라 중에서 뉴질랜드(2009년 기준 세율 12.5%), 스위스(7.6%), 일본(5%), 한국(10%) 등은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낮은 세율을 유지하고 있지만, 룩셈부르크(15%), 에스토니아(18%), 이스라엘(15.5%) 등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캐나다의 경우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5%로 매우 낮지만 세수율은 49%로 그리 높은 편이 아니다. 호주의 경우에도 세율이 10%로 낮지만 세수율은 52%로 높지 않다. 반면 덴마크의 경우에는 세율(25%)은 높지만 상대적으로 세수율(59%)은 낮은 편이 아니다. 앞으로 부가가치세의 세수율을 결정하는 제도적 요인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그림 II-6]에서는 2009년 기준으로 OECD 국가에서의 부가가치세 세율 및 세수율 분포를 보여준다. 그림 속의 실선은 세율에 따른 세수율의 선형 추세선이다.

[그림 II-6] 부가가치세 세율 및 세수율 사이의 관계: OECD 국가를 중심으로



자료: OECD(2012), p. 113.

Ⅲ. 주요국 부가가치세 개정 동향

1. OECD 국가에서의 부가가치세제도

2013년 기준으로 OECD 국가는 총 34개국이고 이 중에서 미국을 제외한 33개국이 부가가치세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도입 이래로 단일세율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달리, 많은 OECD 국가에서는 품목에 따라 표준세율과 경감세율을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복수세율 체계를 채택하고 있다. 나라에 따라 세율도 상당히 다르게 나타나지만, 대체로 우리나라보다 높은 표준세율을 채택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EU 회원국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이는 EU 집행부에서 최저 부가가치세율로 15%를 권고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가. 부가가치세율 현황

2013년 4월 기준으로 OECD 국가의 부가가치세 표준세율(standard rate)은 5~27%의 범위에서 분포하고 있다. 가장 표준세율이 높은 국가는 헝가리로 27%이며, 이어서 아이슬란드와 스웨덴이 각각 25% 순이다. 반면 일본은 1989년 부가가치세제도를 도입하여 3% 세율을 유지하다가 1998년 5%로 인상하였으며, 앞으로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10%로 인상할 예정이다. 마찬가지로 현재 세율이 5%이지만, 연방정부 이외에 주정부에서도 별도로 매상세(sales tax)를 징수하는 캐나다를 제외하면, 현재로서는 일본이 가장 세율이 낮은 국가이다. 전체 OECD 국가의 표준세율 단순평균은 18.9%이다. 한편 EU 회원국의 부가가치세 표준세율은 15~27%의 범위에서 분포하고 있으며, 단순평균은 21.5%이다. <표 Ⅲ-1>에서는 OECD 국가에서 부가가치세 표준세율의

〈표 III-1〉 부가가치세율 추이 비교: OECD 국가를 중심으로

국가	도입	표준세율 (standard rate)														2013년	
		1976	1980	1988	1992	1996	2000	2002	2004	2006	2008	2010	2011	2012	표준 세율	경감세율	
Australia	2000	-	-	-	-	-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0.0
Austria	1973	18.0	18.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10.0/12.0
Belgium	1971	18.0	16.0	19.0	19.0	21.0	21.0	21.0	21.0	21.0	21.0	21.0	21.0	21.0	21.0	21.0	0.0/6.0/12.0
Canada	1991	-	-	-	7.0	7.0	7.0	7.0	7.0	7.0	7.0	5.0	5.0	5.0	5.0	5.0	0.0
Chile	1975	20.0	20.0	16.0	18.0	18.0	18.0	19.0	19.0	19.0	19.0	19.0	19.0	19.0	19.0	19.0	-
Czech Republic	1993	-	-	-	-	22.0	22.0	22.0	22.0	22.0	22.0	22.0	22.0	22.0	22.0	22.0	15.0
Denmark	1967	15.0	22.0	22.0	25.0	25.0	25.0	25.0	25.0	25.0	25.0	25.0	25.0	25.0	25.0	25.0	0.0
Estonia	1991	-	-	-	10.0	18.0	18.0	18.0	18.0	18.0	18.0	18.0	18.0	18.0	20.0	20.0	9.0
Finland	1994	-	-	-	-	22.0	22.0	22.0	22.0	22.0	22.0	22.0	22.0	22.0	23.0	24.0	0.0/10.0/14.0
France	1968	20.0	17.6	18.6	18.6	20.6	20.6	19.6	19.6	19.6	19.6	19.6	19.6	19.6	19.6	19.6	21.5/5.7/0
Germany	1968	11.0	13.0	14.0	14.0	15.0	16.0	16.0	16.0	16.0	16.0	16.0	19.0	19.0	19.0	19.0	7.0
Greece	1987	-	-	16.0	18.0	18.0	18.0	18.0	18.0	18.0	18.0	19.0	19.0	19.0	23.0	23.0	6.5/13.0
Hungary	1988	-	-	25.0	25.0	25.0	25.0	25.0	25.0	25.0	25.0	25.0	25.0	25.0	27.0	27.0	5.0/18.0
Iceland	1990	-	-	-	24.5	24.5	24.5	24.5	24.5	24.5	24.5	24.5	24.5	24.5	25.5	25.5	7.0
Ireland	1972	20.0	25.0	25.0	21.0	21.0	21.0	21.0	21.0	21.0	21.0	21.0	21.0	21.0	23.0	23.0	0.0/4.8/9.0/13.5
Israel	1976	8.0	12.0	15.0	18.0	17.0	17.0	18.0	18.0	16.5	15.5	16.0	16.0	16.0	17.0	17.0	0.0
Italy	1973	12.0	15.0	18.0	19.0	19.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1.0	21.0	21.0	4.0/10.0
Japan	1989	-	-	-	3.0	3.0	5.0	5.0	5.0	5.0	5.0	5.0	5.0	5.0	5.0	5.0	-

(단위: %)

〈표 III-1〉의 계속

(단위: %)

국가	도입	표준세율 (standard rate)															2013년	
		1976	1980	1988	1992	1996	2000	2002	2004	2006	2008	2010	2011	2012	표준세율	경감세율		
Korea	1977	-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0	
Luxembourg	1970	10.0	10.0	12.0	15.0	15.0	15.0	15.0	15.0	15.0	15.0	15.0	15.0	15.0	15.0	15.0	3.0/6.0/12.0	
Mexico	1980	-	10.0	15.0	10.0	15.0	15.0	15.0	15.0	15.0	15.0	15.0	16.0	16.0	16.0	16.0	0.0	
Netherlands	1969	18.0	18.0	20.0	17.5	17.5	17.5	19.0	19.0	19.0	19.0	19.0	19.0	19.0	19.0	21.0	6.0	
New Zealand	1986	-	-	10.0	12.5	12.5	12.5	12.5	12.5	12.5	12.5	12.5	12.5	15.0	15.0	15.0	0.0	
Norway	1970	20.0	20.0	20.0	20.0	23.0	23.0	24.0	24.0	24.0	25.0	25.0	25.0	25.0	25.0	25.0	0.0/8.0/14.0	
Poland	1993	-	-	-	-	22.0	22.0	22.0	22.0	22.0	22.0	22.0	23.0	23.0	23.0	23.0	5.0/8.0	
Portugal	1986	-	-	16.0	16.0	17.0	17.0	19.0	19.0	21.0	21.0	20.0	23.0	23.0	23.0	23.0	6.0/13.0	
Slovak Republic	1993	-	-	-	-	23.0	23.0	23.0	19.0	19.0	19.0	19.0	20.0	20.0	20.0	20.0	1.0	
Slovenia	1999	-	-	-	-	-	-	-	19.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8.5	
Spain	1986	-	-	12.0	12.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8.0	18.0	21.0	21.0	4.0/10.0	
Sweden	1969	17.65	23.46	23.46	25.0	25.0	25.0	25.0	25.0	25.0	25.0	25.0	25.0	25.0	25.0	25.0	0.0/6.0/12.0	
Switzerland	1995	-	-	-	-	6.5	7.5	7.6	7.6	7.6	7.6	7.6	8.0	8.0	8.0	8.0	0.0/2.5/3.8	
Turkey	1985	-	-	10.0	10.0	15.0	17.0	18.0	18.0	18.0	18.0	18.0	18.0	18.0	18.0	18.0	1.0/8.0	
United Kingdom	1973	8.0	15.0	15.0	17.5	17.5	17.5	17.5	17.5	17.5	17.5	17.5	17.5	20.0	20.0	20.0	0.0/5.0	
OECD 단순평균		6.5	8.0	11.6	13.3	16.7	17.5	17.9	17.9	17.7	17.7	18.0	18.5	18.7	18.9	18.9	-	
EU 단순평균		8.0	9.2	13.1	13.9	19.0	20.0	20.1	20.0	19.8	19.9	20.2	20.9	21.2	21.5	21.5	-	

자료: OECD(2012) 참고, 2013년 자료는 저자 추정

변화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나. 금융위기 전·후 부가가치세율 조정 동향

OECD 국가에서의 표준세율 변화 추이를 금융위기 전·후로 하여 살펴보면, 표준세율 단순평균이 2008년 17.7%에서 2013년 18.9%로 약 1.2%p 증가하였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부가가치세제도를 채택한 33개 OECD 국가 중에서 18개국이 금융위기 이후 표준세율 인상을 핵심으로 하는 부가가치세 개정을 단행하였다. 부가가치세율을 인상한 국가들의 세율 단순평균은 2008년 18.3%에서 2013년 20.4%로 약 2.1%p 증가하였다. 한편 부가가치세율에 변동이 없는 15개 OECD 국가의 세율 단순평균은 17.1%로 유지되었다. 금융위기 전·후로 세율 변동이 없었던 독일의 경우, 금융위기 이전인 2006년 표준세율을 16%에서 19%로 3%p 인상하였다. 그리고 금융위기 이후 세율을 인하한 국가는 하나도 없었다. <표 III-2>에서는 OECD 국가에서의 부가가치세율 변동을 2008년 금융위기를 전·후로 하여 살펴본다.

<표 III-2> 금융위기 전·후 부가가치세율 비교: OECD 국가를 중심으로

(단위: 개국, %)

국가	세율 변동 (2008년 이후)	세율 단순평균		국가 수
		2008년	2013년	
헝가리, 스페인, 그리스, 뉴질랜드, 영국, 네덜란드, 아일랜드, 에스토니아, 체코, 포르투갈, 핀란드, 이스라엘, 멕시코, 슬로바키아,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폴란드, 스위스	인상	18.3	20.4	18
없음	인하	-	-	0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룩셈부르크, 벨기에, 스웨덴, 슬로베니아, 오스트리아, 일본, 칠레, 캐나다, 터키, 프랑스, 한국, 호주	변동 없음	17.1	17.1	15
Total		17.7	18.9	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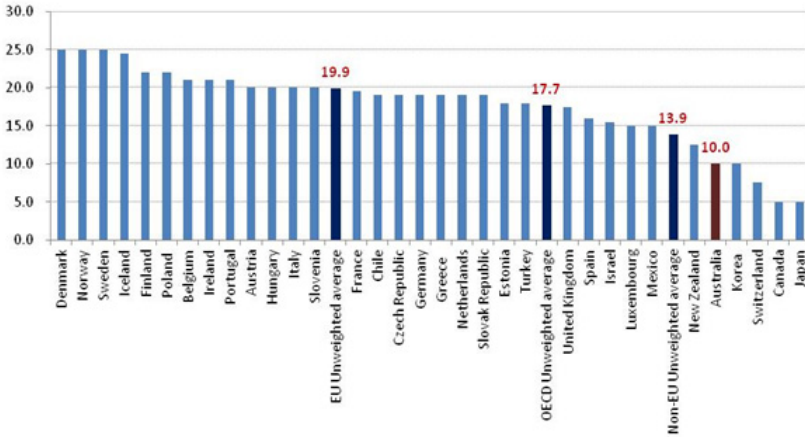
자료: OECD(2012) 참고, 2013년 자료는 저자 수정

III. 주요국 부가가치세 개정 동향 43

다음의 두 그림에서는 OECD 국가에서의 부가가치세율을 각각 2008년과 2013년을 기준으로 비교하여 보여준다.

[그림 III-1] 2008년 부가가치세 표준세율 현황: OECD 국가를 중심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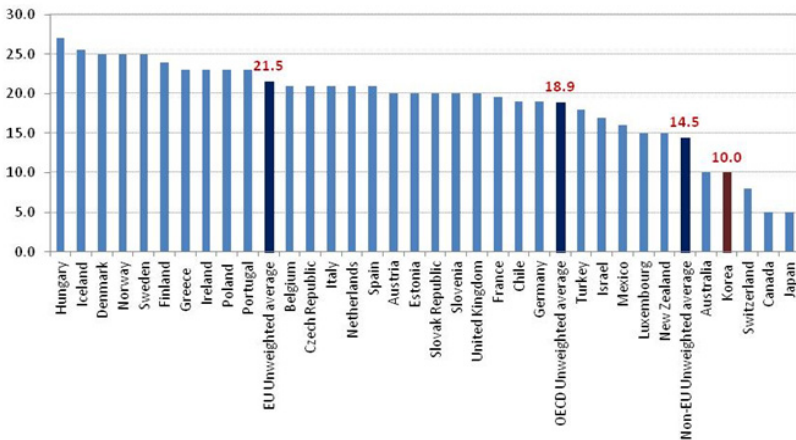
(단위: %)



자료: OECD(2010)

[그림 III-2] 2013년 부가가치세 표준세율 현황: OECD 국가를 중심으로

(단위: %)



자료: OECD(2012) 참고, 2013년 자료는 저자 수정

다. 부가가치세 면세 및 영세율 범위 비교

OECD에서는 회원국 사이의 면세 범위 비교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대다수 회원국에서 공통적으로 면세가 되는 분야를 구분하여 표준면세 (common exemption) 범위를 설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면세 범위는 OECD의 표준면세 범위와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상당 부분 다르게 나타난다. 미가공 식료품 및 농업용 유류에 대한 면세가 대표적이다. 다음 표에서는 OECD의 표준면세 범위와 우리나라의 면세 범위를 비교하여 보여준다.

〈표 III-3〉 우리나라와 OECD 표준면세 범위의 비교

OECD 표준면세 범위	우리나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편서비스 - 환자이송서비스 - 의료서비스 - 혈액, 장기, 조직의 공급 - 치과서비스 - 자선사업 - 교육 - 비영리단체의 비상업적 활동 - 스포츠 서비스 - 라디오 및 TV 방송을 제외한 문화서비스 - 보험 및 재보험 - 부동산 임대 - 금융서비스 - 복권과 도박 - 토지와 건물의 공급 - 특정 자금모집 용역 	표준면세 이외의 면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가공 식료품 - 일정한 대중교통 여객운송용역 - 상수도 - 무연탄 공급 - 농·축·임·어업용 석유류 - 장의용역 - 일정한 개인적 인적용역 - 도서 신문 및 잡지 - 방송
	표준면세 중 과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업용 건물의 임대 및 공급 - 상업문화서비스 - 허가된 클럽에서의 도박

자료: OECD(2012), p. 87;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이제 면세 범위에 있어서의 차이점을 국가별·분야별로 정리해보자. 우선 우리나라에서의 면세 범위를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미가공 식품

에 대한 면세, 전문의약품에 대한 면세(일반의약품에 대해서는 과세), 도서·신문·잡지에 대한 면세, 농업원료에 대한 면세·영세율 등이 눈에 띈다. 반면 대다수의 국가에서는 이들 품목에 대해 표준세율이나 경감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표 III-4>를 살펴보자.

앞 장에서 부가가치세제도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로서 부가가치세 세수율(VAT Revenue Ratio: VRR)을 소개하고, 2009년 기준으로 OECD 국가에서의 세수율을 비교하였다. 그리고 뉴질랜드와 덴마크의 부가가치세 세수율이 이들 나라의 표준세율을 감안하였을 때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009년 기준으로 뉴질랜드의 표준세율은 12.5%, 세수율은 99%이고, 덴마크의 표준세율은 25%, 세수율은 59%이다. 대조적으로 호주와 캐나다의 경우에는, 이들 나라의 표준세율을 감안할 때, 세수율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2009년 기준으로 호주의 표준세율은 10%이지만 세수율은 52%에 불과하고, 캐나다의 표준세율은 5%이지만 세수율은 49%에 불과하다. 이를 통해 부가가치세의 세수율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제도의 성과를 평가한다면, 뉴질랜드와 덴마크는 제도를 우수하게 운용하고 있는 반면에, 호주와 캐나다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부가가치세 세수율은 표준세율의 수준과 감면제도의 적용 범위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알려져 있다. 표준세율이 높아지거나, 면세, 영세율, 경감세율 등의 감면제도가 널리 이용될수록, 부가가치세 세수율이 낮아진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뉴질랜드와 덴마크에서 세율 수준에 비해 세수율이 높다는 것은 이들 나라에서 부가가치세 감면제도를 제한적으로 운용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호주와 캐나다에서는 표준세율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감면제도를 광범위하게 운용하여 세수율이 낮게 나타났을 것이다.

개별 국가의 부가가치세제하에서 감면제도가 얼마나 널리 적용되고 있는지 계량화할 수 있는 지표가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앞의 표에서 정리한 국가별·분야별 감면제도 현황을 바탕으로 해서 국가별 사례를 분석해보자.

〈표 III-4〉 부가가치세 감면제도 비교: OECD 국가를 중심으로

국가	미가공 식품	가공 식품	여객 운송	부동산 임대	의료 영역	의약품	교육	토지 건물 공금	도서	신문	문화 체육	금융	보험	우편	자선 사업	비영리 기구 활동	정부 지출	중고품	농업 원료	예술품	도박 부권
Australia	Z	Z	E	ERT	Z	T	Z	ZT	T	T	ZT	E	ZT	ET	Z	E	T	T	T	T	T
Austria	R	R	R	E	E	R	E	E	R	R	ERT	E	E	E	E	E	T	T	R	RT	E
Belgium	R	R	ZR	E	E	R	E	T	R	ZR	ER	E	E	E	E	E	T	T	R	RT	E
Canada	ZT	ZT	E	T	E	Z	E	T	T	T	E	EZ	E	E	E	E	T	T	T	T	T
Chile	T	T	E	E	E	T	E	E	T	T	E	E	E	E	E	E	T	T	T	T	E
Czech Republic	R	R	ZR	ERT	ER	R	E	R	R	R	R	E	E	E	E	E	T	T	R	RT	E
Denmark	T	T	EZ	E	E	T	E	T	Z	Z	ET	E	E	E	E	E	T	T	T	T	E
Estonia	T	T	Z	E	E	R	E	T	R	R	T	RT	E	E	E	E	T	T	T	T	E
Finland	R	R	R	ERT	E	R	E	E	R	R	ER	E	E	E	E	E	T	T	R	RT	E
France	R	R	ZR	ERT	ER	R	E	T	R	R	RT	E	E	E	E	E	T	T	R	RT	E
Germany	R	R	R	E	ER	T	E	E	R	R	ERT	E	E	E	ER	E	T	T	R	R	E
Greece	R	R	R	ERT	ER	R	E	T	R	R	R	E	E	E	ER	E	T	T	R	RT	E
Hungary	R	R	T	ERT	E	R	E	T	R	R	T	E	E	E	ER	E	T	T	R	RT	E
Iceland	R	R	E	E	E	T	E	E	R	R	E	E	E	E	E	E	T	T	T	T	E
Ireland	ZR	ZR	E	ERT	ER	Z	E	R	Z	R	ER	E	E	E	E	E	T	T	R	R	E
Israel	RT	RT	E	E	E	T	E	E	T	T	E	E	E	E	E	E	T	T	T	T	E
Italy	R	R	ER	ERT	E	R	E	R	R	R	RT	E	E	E	E	E	T	T	R	RT	E
Japan	T	T	ER	E	E	T	E	T	T	T	T	E	E	T	E	E	T	T	T	T	E
Korea	E	ET	ET	ET	ET	E	ET	ET	E	E	ET	E	E	E	E	E	EZT	T	Z	E	ET
Luxembourg	R	R	ER	E	ER	R	E	E	R	R	ER	E	E	E	E	E	T	T	R	RT	E
Mexico	ZT	ZT	ET	E	E	T	E	E	T	T	E	ET	T	T	E	E	T	T	T	T	E

〈표 III-4〉의 계속

국가	미가공 식품	가공 식품	여객 운송	부동산 임대	의료 영역	의약품	교육	토지 건물 공금	도서	신문	문화 체육	금융	보험	우편	자선 사업	비영리 기구 활동	정부 지출	중고품	농업 원료	예술품	도박 부권
Netherlands	R	R	ER	ERT	E	R	E	T	R	R	R	E	E	E	E	E	T	T	R	RT	E
New Zealand	T	T	E	ET	E	T	T	E	T	T	E	EZ	E	T	T	T	T	T	T	T	T
Norway	R	R	R	ER	E	T	E	E	T	T	E	E	E	T	E	E	Z	ET	T	T	E
Poland	R	R	R	T	ER	R	E	R	R	R	R	E	E	E	E	E	ZT	T	R	RT	E
Portugal	R	R	ZR	E	ER	R	E	E	R	R	RT	E	E	E	E	E	T	T	R	R	E
Slovak Republic	T	T	E	T	E	R	T	E	R	R	R	E	E	E	E	E	T	T	T	T	E
Slovenia	R	R	R	ERT	E	R	T	R	R	T	R	E	E	E	E	E	RT	T	R	RT	E
Spain	R	R	R	ERT	ER	R	E	R	R	R	ERT	E	E	E	E	E	RT	T	R	ET	E
Sweden	R	R	ER	ERT	E	Z	E	E	R	R	ERT	E	E	T	E	E	T	T	T	RT	E
Switzerland	R	R	E	ERT	T	E	E	E	T	T	E	E	E	E	E	E	T	T	T	T	E
Turkey	R	R	T	T	T	T	T	T	T	T	T	ET	T	T	ET	T	T	T	T	T	T
United Kingdom	Z	Z	Z	E	E	Z	E	Z	Z	Z	T	E	E	E	EZ	E	T	T	T	RT	ET

주: 1. E는 면세(Exemption), Z는 영세율(Zero rate), R은 경감세율(Reduced rate), T는 표준세율 적용을 의미함
 2. 이 표에서 사용한 품목 분류는 김승래·박명호·홍범교(2007)에서의 분류를 바탕으로 저자가 세부적인 구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품목에 대해서만 분류를 세분화한 것임
 3. 개별 국가의 부가가치세제하에서 면세, 영세율, 경감세율, 표준세율 등을 적용하는 품목 분류와 이 표에서 사용하는 품목 분류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님
 4. 이 표에서의 한 품목 분류에 세부 구분에 따라 여러 제도가 적용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해당 제도를 모두 표시함
 5. 2013년 4월 기준

자료: OECD, *Consumptions Tax trends*, 2012.
 IBFD(www.ibfd.org)

부가가치세 세수율이 높은 뉴질랜드의 경우, 감면제도를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여객운송, 의료용역, 토지 건물 공급, 문화 체육, 금융 보험 등에만 면세 또는 영세율제도를 적용한다. 경감세율은 존재하지 않으며, 단일세율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에도 불구하고 세수율도 높게 유지하고 있는 덴마크의 경우에도 감면제도를 제한적인 범위에서 적용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여객운송, 부동산임대, 의료용역, 교육, 금융 보험, 비영리 기구 활동, 도박 복권 등에만 면세 또는 영세율제도를 적용한다. 높은 표준세율(25%)에도 불구하고, 경감세율이 따로 없는 단일세율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이제 세율에 비해 세수율이 낮았던 나라들을 살펴보자. 호주의 경우에는 식품, 의료용역, 교육 등에 감면제도를 적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캐나다의 경우에도, 식품, 의료용역, 의약품, 교육 등에 감면제도를 적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호주와 캐나다에서 세율에 비해 세수율이 낮은 이유는 감면제도의 운용 범위가 넓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 주요국 부가가치세 개정 사례 연구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근 들어 많은 나라에서 부가가치세제도를 개정하였는데, 그 중에서 독일, 스위스, 스페인, 일본 등 네 나라를 중심으로 하여 개정 배경, 내용, 경과 등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개정안 논의 및 처리 과정, 그리고 개정안 내용에 있어서 참고할 만한 점이 있다고 생각하여 이들 네 나라를 사례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가. 독일

독일 연방정부는 2007년 1월부터 부가가치세 표준세율을 16%에서 19%로 3%p 인상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경감세율은 7%에서 그대로 유

지하기로 하였다. 식품, 여객운송, 도서·신문, 농업 원료 등에 경감세율을 적용한다. 그리고 부동산 임대, 의료용역, 교육, 금융·보험, 비영리기구 활동 등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번 세법 개정을 통해 표준세율은 인상하였지만, 경감세율 및 적용 범위, 면세 범위 등은 그대로 유지하였다. 한편 독일 정부는 1998년 부가가치세 표준세율을 15%에서 16%로 1%p 인상한 바 있었다.⁵⁾

이러한 부가가치세율 인상에 대한 논의는 2005년 연방 선거 운동 기간부터 시작되었다. 당시 야당이었던 보수당의 대표 앙겔라 메르켈(Angela Merkel)은 독일 정부의 재정 적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부가가치세율을 인상하여 재정 건전화를 달성하겠다고 공약하였다. 2005년 당시 독일 정부의 재정적자는 GDP 대비 3.3%로 유럽연합 마스트리트 조약에 따른 재정적자 한도 3%를 초과하고 있었다. 하지만 부가가치세 표준세율을 16%에서 19%로 3%p 인상하는 방안은 전후 독일에서 가장 큰 폭의 증세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증세 공약은 야당 대표였던 메르켈의 선거 운동에 있어 부담이 되었다. 2005년 연방 선거 운동을 시작하면서 실시된 한 여론조사에서 메르켈의 보수당은 당시 집권당이었던 사회민주당을 정당 지지율에 있어서 20% 이상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선거 운동 기간 동안 부가가치세 증세 공약에 대해 논란이 있었고, 실제 선거 결과에서는 보수당이 사회민주당을 1% 앞섰을 뿐이었다. 두 당 모두 연방의회에서 내각을 구성하기 위한 과반 의석을 독자적으로 획득하는 데 실패하였다. 내각 구성을 위해 3개월 동안 협상한 이후 보수당과 사회민주당은 이른바 '대연정'을 구성하였다. 선거 운동 기간 동안 부가가치세율 인상안에 대해 반대하였던 사회민주당은 대연정을 구성하면서 인상안을 지지하기로 하였다.

부가가치세 표준세율이 3%p 오르면서, 세수입이 약 250억유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는 2007년 독일 국내총생산의 약 1.1%에 이르는 규모였다. 독일 정부는 늘어난 세수를 활용하여 사회보장기여금에

5) Bach et al.(2006) 및 OECD(2006) 등의 자료를 참고하였다.

대한 부담을 줄이고자 하였다. 전반적으로 사회보장기여금 부담을 1.6% 줄이도록 하는데, 실업급여에 대한 부담은 2% 줄이는 반면, 공공연금에 대한 부담은 0.4% 올리기로 하였다. 노동시장에서 고용주의 실업급여에 대한 부담을 줄여 신규 고용을 창출하기 위한 방안이었다. 늘어난 세수입 중에서 사회보장기여금 부담을 줄이고 남는 재원은 독일 정부의 재정적자를 줄이는 데 활용하기로 하였다. 한편 세율이 3%p 오르면서, 소비자 물가도 1.7%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로 인해 단기적으로 가계 실질소득이 평균 0.8%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2007년 부가가치세율을 인상하고 6년 여의 시간이 흐른 현 시점에서 메르켈 정부의 세제·사회보장 개혁정책은 가장 성공한 업적의 하나로 꼽힌다. 2008년 금융위기가 일어나기 이전에 선제적으로 독일 정부의 재정건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노동시장에서 고용주의 사회보장기여금 부담이 줄어들면서 고용률 상승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율 인상으로 인해 수입은 억제되고 수출은 촉진되면서 제조업 기반이 탄탄한 독일 경제의 경상수지 흑자가 증가하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받고 있다.⁶⁾

6) 수출 영세율제도에 의해 부가가치세율 인상은 수출품의 가격(자국 통화 기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지만 수입품의 가격은 세율 인상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수입품 가격 상승으로 인해 수입품에 대한 수요가 억제될 것이다. 그리고 수입이 억제되면서 경상수지가 개선될 것이다. 만약 부가가치세율을 인상한 국가의 통화가 국제 외환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되고 시장에서 환율이 결정된다면, 경상수지 개선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통화가치가 상승할 것이다. 그러므로 장기적으로는 통화가치가 상승하면서 수출이 줄고 경상수지 개선 효과도 사라져야 할 것이다. 하지만 독일의 경우에는 다른 유럽국가들과 함께 유로화를 사용한다. 유로화의 가치가 독일 경제의 경상수지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독일 경제의 꾸준한 경상수지 흑자에도 불구하고 유로화의 통화 가치가 낮게 유지될 수 있다. 이른바 '재정적 통화가치 절하'(fiscal devaluation) 이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Mooji and Keen(2012)에서도 찾을 수 있다.

나. 스위스

2010년 7월 스위스 연방정부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주요 내용은 복수세율 체계를 단일세율 체계로 바꾸면서 면세 범위를 줄이는 것이었다. 그리고 세수 증가분을 이용하여 하위 소득계층에 직접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포함되었다. 여러 연구에 의해 개정안에 따른 긍정적인 경제적 효과가 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요 정당, 노동조합, 이익단체들의 반발에 의해 개정안은 연방의회를 통과하지 못하였다.⁷⁾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였을 당시 스위스에서의 부가가치세 표준세율은 7.6%였고, 경감세율은 3.6%와 2.4%였다. 호텔 숙박업에 대해 경감세율 3.6%를 적용하였고, 식품, 의약품, 도서·출판, 문화·체육 등에 대해 경감세율 2.4%를 적용하였다. 그리고 우편, 보건·복지, 교육, 비영리기구 활동, 금융·보험, 도박, 부동산 판매·임대, 농업 등을 면세하였다.

개정안에서는 세율 체계를 단순화하기 위해 7.6%, 3.6%, 2.4%로 차등화된 세율을 6.1%의 단일세율로 바꾸고자 하였다. 따라서 경감세율 3.6%가 적용되던 호텔 숙박업의 경우 단일세율 6.1%로 세율이 인상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경감세율 2.4%가 적용되던 식품, 의약품, 도서, 문화 분야의 경우에도 세율 인상 효과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기준에 표준세율을 적용받던 분야는 세율 인하 효과가 있을 것이다. 한편 면세 범위를 축소하기 위해, 금융·보험, 도박, 부동산 판매·임대, 농업 등에 대해서만 면세를 유지하고, 나머지 모든 부문에 대해서는 면세를 폐지하고자 하였다. 이리하여 부가가치세 면세가 폐지되는 분야는 우편, 보건·복지, 교육, 비영리기구 활동 등이었다.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증가할 세수를 활용하여 하위 소득계층에 직

7) 스위스 연방 재무부 Alwin Moes 박사가 2012년 OECD Working Party No. 2 회의에서 발표한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으며, 『주요국의 조세동향』(2010년 제2호, 2011년 제2호)도 참조하였다.

접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로 인해 전반적인 세수 효과는 중립적일 것으로 예상하였다. 개정안을 통해 부가가치세제도를 단순화하고 표준세율을 낮추면서, 잠재성장률을 0.3~0.8% 정도 높이고, 납세순응 비용을 약 30% 정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평균적인 가구의 부가가치세 부담은 단기적으로 증가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잠재 성장을 상승에 의한 경제성장 및 소득 증가로 늘어난 세부담이 상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그러나 경감세율이 폐지되거나 면세에서 제외되는 분야의 반발이 컸다. 보건·복지, 교육, 문화·체육단체의 반발이 있었고, 호텔 숙박업계의 반발도 있었다. 주요 정당과 노동조합들도 개정안에 반대하였다. 그리하여 개정안은 연방의회를 통과하지 못하였다.

결과적으로 단일세율 체계를 도입하고 면세범위를 축소하여 부가가치세제도를 단순화하는 세법 개정안은 연방의회를 통과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복수세율 체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한시적으로 세율을 인상하는 또 다른 개정안은 2009년 9월 국민투표를 통해 승인되었다. 사회보장보험에 대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2011년부터 2017년까지 한시적으로 세율을 각각 8.0%, 3.8%, 2.5%로 조정하는 방안이었다. 이 국민투표에는 스위스 전체 유권자 중에서 41.0%가 참여하였고, 찬성 54.6%, 반대 45.4%로 세율 인상안이 승인되었다.

다. 스페인

스페인 연방정부는 2010년과 2012년 두 차례에 걸쳐 부가가치세제도를 개정하였다. 개정 이전인 2010년 6월까지의 표준세율 16%, 경감세율 7%, 특별경감세율 4%로 부가가치세제를 운용하여 왔다. 여객운송, 숙박·외식, 문화 공연 등에 경감세율을 적용하고, 기초식품, 의약품, 도서·신문 등에 특별경감세율을 적용하여 왔다. 하지만 2010년 7월부터 표준세율을 18%, 경감세율을 8%로 인상하였다. 그리고 2012년 9월부터는 표준세율을 21%, 경감세율을 10%로 인상하였다. 두 차례 개정

에서 특별경감세율 4%는 그대로 유지되었다.

〈표 III-5〉 스페인 부가가치세율 조정

(단위: %)

세율 구분	2010년 6월까지	2010년 7월부터 2012년 8월까지	2012년 9월부터
표준세율	16	18	21
경감세율	7	8	10
특별경감세율	4	4	4

자료: IBFD, <http://online.ibfd.org/kbase/>

스페인에서의 부가가치세제 조정은 추가적인 세수를 확보하여 정부의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에서 실시되었다. 2008년 세계 금융 위기 그리고 연이어 발생한 유로 경제위기로 인해 스페인 정부의 재정수지는 크게 악화되었다. 위기 이전인 2007년 스페인 정부는 GDP 대비 1.9%의 재정수지 흑자를 달성하였지만, 위기 직후인 2009년에는 재정수지 적자가 GDP 대비 11.1%에 이르렀다. 이로 인해 GDP 대비 정부 부채비율도 2006년 39.6%에서 2009년 53.2%로 상승하였다. 스페인 경제의 성장 가능성을 높이면서 동시에 정부의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금융부문, 공공부문, 노동시장에서의 구조조정 및 사회보장기여금, 소득세, 부가가치세제도의 개선 등이 주로 논의되었다. 특히 2010년의 부가가치세제 개정으로 2010년 세수입이 GDP 대비 0.7%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고, 2011년 세수입은 0.4%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⁸⁾

8) Pierre Beynet, Andres Fuentes, Robert Gillingham and Robert P. Hagemann(2011) Restoring Fiscal Sustainability in Spain, OECD Economics Department Working Papers No. 850

라. 일본

2012년 8월 일본 중의원 및 참의원은 현재 5%인 소비세율을 2015년 까지 10%로 인상하기로 하였다. 일본의 개정 소비세법에 따르면, 세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데, 우선 2014년 4월에 8%로 인상하고, 이어서 2015년 10월에 10%로 인상할 예정이다. 그리고 소비세율 인상으로 늘어난 세수입을 각종 복지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기초연금, 노령수당, 요양서비스, 보육서비스 등이 주요 지출대상 사업이다. 한편 개정된 소비세법의 부칙에서는 일본의 경제상황에 따라 소비세율 인상을 중지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내년부터 실제로 세율을 인상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본은 1989년 3%의 세율로 소비세를 도입하였고, 1997년 5%로 세율을 한

〈표 III-6〉 일본 소비세법 개정안 처리 경과

시기	주요 내용
2010년 12월	정부·민주당 사회보장개혁 검토본부 설치 사회보장제도 개혁 추진
2011년 6월	사회보장 및 세제 일체개혁 성안 발표 2010년대 중반까지 소비세율 5% 인상 제안
2012년 2월	사회보장 및 세제 일체개혁 대강 각의 결정 소비세율을 2014년 4월에 8%로, 2015년 10월에 10%로 인상하기로 결정
2012년 3월	『세제발본개혁을 위한 소비세법 등 개정 법안』 각의 결정
2012년 6월	여야 3당(민주·자민·공명) 사회보장 및 세제 일체개혁 수정 합의 - 소비세율 원안대로 인상 - 소득세, 상속세 등 개정 철회 - 최저연금제도 실시, 노인요양보험제도 폐지 등 논의 보류
2012년 6월	소비세법 개정 수정 법안 중의원 회의 통과
2012년 8월	소비세법 개정 수정 법안 참의원 회의 통과

자료: 한국조세연구원, 『일본 소비세율 인상의 평가와 전망』, 2012.

차례 인상한 바 있다.⁹⁾

일본 내각부에서는 소비세율의 단계적 인상이 물가 및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우선 계획대로 소비세율을 인상하는 경우, 2014년의 물가상승률은 약 3.1%, 2015년의 물가상승률은 약 1.6%일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는 인상하지 않는 경우의 2014년 물가상승률 전망치 0.7%, 2015년 물가상승률 전망치 0.8%에 비해 각각 2.4%, 0.8%가 더 높은 수치이다. 하지만 이는 소비세율 인상분 2014년 3% (5%에서 8%로 인상), 2015년 2% (8%에서 10%로 인상) 등에 비해 낮은 수치이다. 그리고 소비세율을 인상할 경우,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경제성장률이 연평균 1.1%로, 해당 기간 동안 약 4.6%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소비세율을 인상하지 않는다면 같은 기간 동안 약 4.8%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일본 재무성과 OECD의 연구에 따르면, 소비세율 5% 인상에 따라 세수입이 약 13조 5천억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 세수입 증가분 전망치를 예정된 지출 사업단위로 나누어보면 <표 III-7>에서 보는 바와 같다. 신규 재정사업을 도입하는 데 2조 7천억엔을 지출할 예정이고, 기존의 복지사업에 재원을 확보하는 데 10조 8천억엔을 지출할 예정이다. 지출 대상은 대체로 복지사업과 연계되어 있다. 소비세율 인상에 따라 증가할 물가상승률로 인해 복지사업 지출액이 증가할 것도 감안하였는데, 이에 따른 지출 증가액이 약 8천억엔일 것으로 예상되었다.

9) 『일본 소비세율 인상의 평가와 전망』, 한국조세연구원(2012) 및 Randall S. Jones and Satoshi Urasawa(2013) Restoring Japan's Fiscal Sustainability, OECD Economics Department Working Paper No. 1050 등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표 III-7〉 일본 소비세율 인상 및 복지 지출액 전망

(단위: 조엔, %)

지출 사업 구분	지출액	소비세율 환산
총 계	13.5	5.0
신규 재정사업 도입	2.7	1.0
보육 서비스 확대	0.6	0.2
요양 서비스 확대	1.6	0.6
저소득층 노령 수당 확대	0.6	0.2
기존 복지사업 재원 확보	10.8	4.0
기초연금 재원 확보	2.9	1.0
기타 사회복지 재원 확보	7.0	2.7
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복지사업 재원 확보	0.8	0.3

자료: Jones and Urasawa (2013) Restoring Japan's Fiscal Sustainability, 일본 재무성

일본에서는 전체 인구 대비 60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약 31%에 이르고, 전체 유권자수 대비 60세 이상 인구 비율은 약 37%에 이른다. 일반적으로 소비세율 인상은 근로소득이 따로 없고 소비성향이 높은 노년층에 세부담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즉, 노년층 유권자들이 소비세율 인상안에 반대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하지만 일본의 경우, 소비세율 인상으로 증가한 세수입을 노인층에 수혜대상이 집중된 복지사업에 투입하기로 하여, 노년층 유권자들의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 2012년 6월 중의원 선거 직전에 진행된 여론조사에서 소비세율 인상안에 대해 찬성 38.2%, 반대 61.8%로 반대의견이 더 많았지만, 연령이 높아질수록 찬성 비율도 높아졌다. 60대 유권자들은 48.1%가 찬성한다고 응답하였고, 70대 이상 유권자들은 55.2%가 찬성한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30대 유권자 중에서 찬성하는 비율은 29.6%였다.

마. 요약 및 시사점

지금까지 독일, 스위스, 스페인, 일본 등의 네 나라를 중심으로 하여 부가가치세제 개정 사례에 대해 살펴보았다. 독일에서는 부가가치세율 인상안이 선거공약으로서 처음 공론화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2005년 연방 선거에서 당시 야당 대표이자 총리 후보였던 앙겔라 메르켈은 독일 정부의 재정 상황에 대해 유권자들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부가가치세 증세 공약을 제시하여, 증세 공약이 유권자들에게 인기가 없는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집권에 성공할 수 있었다. 부가가치세제도를 개정하여 독일 정부의 재정건전성을 높이고, 기업의 사회보장기여금 부담을 줄인 정책 조합은 메르켈 정부의 주요 업적으로 꼽히고 있다.

스위스의 경우 단일세율을 도입하고 면세 범위를 축소하는 부가가치세제 단순화 개정안이 논의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다. 여러 연구에 의해 정책적 타당성이 뒷받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단순화 개정안은 연방 의회를 통과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사회보장보험에 대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세율을 인상하는 방안은 국민투표를 통과하였다. 부가가치세 경감세율, 면세 등의 세제 혜택을 줄여 세수입을 늘리는 것이 전반적으로 세율을 인상하여 세수입을 늘리는 것에 비해 경제적으로 더욱 효율적인 정책 방향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더욱 어려운 방안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스페인에서는 2010년과 2012년 두 차례에 걸쳐 부가가치세율을 인상하였다. 2009년 스페인 정부의 재정수지 적자는 GDP 대비 11%를 넘었고, 그때까지 누적된 정부부채는 GDP 대비 53%를 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스페인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부가가치세제도를 두 차례에 걸쳐 개정하였다.

한편 일본 정부의 재정건전성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다. 2012년 기준으로 일본에서 공공부문의 총부채는 GDP 대비 220%를 넘어섰고, 총부채에서 일본 정부가 보유한 금융자산의 가치를 차감한 순부채도 GDP

대비 135%를 넘어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러한 GDP 대비 순부채 비율은 전체 OECD 국가 중에서 그리스 다음으로 높은 수치이다. 이처럼 부정적인 재정 여건하에서 인구 고령화에 따른 복지재원 확보가 필요한 일본 정부는 소비세 증세를 추진하고 있다.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세율을 10%로 인상하는 소비세법 개정안이 이미 의회를 통과하였지만, 소비세법 개정안 부칙에 경제상황에 따라 세율 인상을 중지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포함되어, 세율 인상 시행 여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본 정부가 소비세법 개정안을 논의, 추진하는 과정에서, 세율 인상으로 늘어나는 세수입을 노년층에 수혜대상이 집중되는 기초연금, 노령수당, 요양서비스 등에 활용하기로 하여, 노년층 유권자의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는 점을 주목할 만하다.

IV. 부가가치세 귀착 및 정책효과 분석

1. 분석방법과 분석자료

가. 분석방법

본장에서는 미시서베이자료를 이용하여 가구별로 부가가치세 부담을 추정하고 이를 토대로 미시분포를 구성하여, 계층별 세부담 귀착 및 정책 조정(예: 세율 조정 또는 면세범위 조정 등)에 의해 예상되는 효과를 분석한다. 분석의 범위는 소득계층별 부담 귀착분포, 세수효과, 소득재분배 효과 및 이들 각각의 변화 효과를 포괄한다.

미시적 분석방법은 기본적으로 미시서베이자료(본 연구에서는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시자료를 사용, 다음 항에서 상세하게 자료를 설명)를 이용하여, 개별 가구별로 항목별 소비지출 통계를 계산기프로그램에 입력하여 세부담을 추정하고, 결과물을 여러 방법으로 다양하게 분석하여 세수효과와 소득재분배 효과를 분석한다.

미시분석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세부담 추정 : 부가가치세 계산기 프로그램(tax calculator)을 이용하여 개별가구의 세부담을 추정세수 효과 : 가구당 평균세부담액 × 통계청 추계가구 수소득재분배 효과 : 세전 · 세후소득 지니계수의 변화율

부가가치세 계산기프로그램은 가계동향조사자료의 세세분류 소비지출 항목별로 부가가치세의 과세 또는 면세 여부를 분류하고, 면세부문

에 대한 소비지출액의 경우에는 세부담을 0원, 과세부문에 대한 소비지출액의 경우에는 지출액의 1/11을 부가가치세 부담액으로 산정하여 추정한다.

세수효과는 상기의 방법으로 가구별로 추정한 부가가치세 부담액을 가중평균하고, 가중평균 세부담액을 우리나라의 총가구 수(통계청 추계 가구 기준)에 곱하여 총세수를 추계한다. 다만 이렇게 추정한 세수는 실제 세수와 상당한 차이가 있다. 물론 추정오차에 의한 부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두 가지 오차요인이 존재한다. 첫째는, 가구 외 부문의 최종소비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둘째는, 중간투입분에 환급되지 않은 세부담액, 즉 누적효과(cascading effects)로 인해 누락된 세부담에 따라서도 오차가 발생한다. 이 가운데 둘째 요인에 의한 오차는 투입산출 분석을 통해, 누적효과를 추정하여 부문별 실효세율을 추정함으로써 그 규모를 산정(추정)할 수 있다. 다만 전자의 경우에는 가계 외 부문에 대한 미시자료가 부재하여 본 연구에서 그 분포나 규모를 직접 추정하기는 어렵다. 간접적으로 누적효과를 감안한 실효세부담을 기준으로 가계부문에서의 세수를 추정하고, 실제 세수와와의 차이를 가계부문 외에서 부담한 부가가치세 세수로 상정한다.

소득재분배 효과는 위에서 제시한 공식에서 보듯이 부가가치세 전 소득과 부가가치세 차감 후 소득의 지니계수의 변화율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위에서 보았듯이 간접효과에 의한 부가가치세의 세수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투입산출 분석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상기의 미시적 분석방법에 추가하여, 보조적으로 한국은행의 투입산출표(2009년 기준)를 분석하여 403개 부문별로 산업·업종을 세분화하여 부가가치세의 실효세율을 추정하고, 면세-과세 전환 시의 효과를 추정·분석한다.

아래에서 모의실험을 함에 있어서는, 세수효과, 계층별 부담귀착 분석 등의 기준 연도를 2013년으로 설정하여 분석한다. 분석에 사용하는 자료는 2011년 기준의 가계동향조사자료이다. 이를 2013년도의 수치로 환산하기 위해 2011~2013년의 두 연도 사이에 명목성장률을 각각

5.0%와 6.0%로 설정하였다. 따라서 2011~2013년의 명목소득 증가율이 11.3%에 이르는 것을 전제로 2011년의 자료를 2013년 가치로 환산하였다. 다만 관련 정보가 부족하므로 소비지출도 모두 비례적으로 11.3%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나. 분석자료¹⁰⁾

분석자료는 통계청의 2011년 기준 가계동향조사자료를 사용하였다. 2011년의 가계동향조사자료에 의하면, 가구주 연령은 평균 50.6세, 가구원 수는 평균 2.9인, 가구 내 취업인 수는 평균 1.3인 정도인 것으로 추정된다(〈표 IV-1〉 참조).

가계동향조사자료는 매월 가계부 작성 방식으로 작성되며, 월 1회씩 자료를 수집하여 통계자료화하고, 이를 분기에 한번씩, 주요 기술통계, 즉 소득·소비지출의 평균, 주요 소비지출 항목 대분류별 소비지출 증감, 가계수지, 소득불평등도 등을 추정하여 발표한다. 본 연구에서는 원시자료 형태의 월별 자료를 가구별로 묶어서 연간화한 자료를 분석에 사용한다.

연간화된 자료를 기준으로 할 때 가구당 평균 (총)소득과 소비지출은 각각 4,300만원과 2,512만원 수준으로 추정되었다. 이를 기준으로 추정한 평균소비성향은 0.58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0) 분석자료에 대한 소개는 성명재·우석진(2013)의 관련 내용 중 기술통계 〈표〉 2개를 발췌하여 정리한 것을 일부 참조하였고, 나머지는 직접 추정하였다.

〈표 IV-1〉 2011년 가계동향조사 연간화 자료의 주요 기술통계

(단위: 세, 명, 만원)

	평균	표준편차	최대	최소
가구주 연령	50.63	13.66	90	17
가구원 수	2.86	1.24	8	1
취업인 수	1.28	0.86	5	0
시장소득	3,909	2,783	25,393	0
총소득	4,300	2,686	25,403	0
가처분소득	3,941	2,346	24,129	-172
소비지출	2,512	1,481	17,978	127
소득세	149	267	3,941	0
재산세	17	30	516	0
사적이전소득	208	658	9,815	0
공적이전소득	183	484	7,789	0
사회보험료	208	193	1,302	0

주: 2011년 가계동향조사자료의 연간화 자료 기준(저자 추정자료 기준)이고, 가구 수는 총 5,197가구

자료: 성명재·우석진(2013)의 〈표 III-1〉.

연령별 가구 구성 분포를 보면 전 가구를 기준으로 할 때 가구주 연령이 20대 또는 그 이하인 경우가 2.8% 정도로 가장 비중이 낮고, 반면에 60세 이상의 노인가구는 27.9%로 가장 높다. 다음으로 30대 후반~50대 초반이 각각 13%대 내외 수준으로 비중이 높은 것이 특징적이다(〈표 IV-2〉 참조).

소득계층별 연령분포의 특징을 살펴보면, 저소득층일수록 고령자 가구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고, 고소득층일수록 40대 후반~50대 초반의 중·장년층 가구의 비율이 높은 것이 특징적이다. 저소득층에서 노인가구의 비중이 높은 것은, 노인가구가 주로 은퇴가구로 구성되어 있고, 은퇴가구는 특성상 시장소득 수준이 낮기 때문이다.

〈표 IV-2〉 2011년 가계동향조사 연간화 자료의 가구주 연령 비중 분포

(단위: 세, %)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전가구
~19.9	0.63	0.39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10
~24.9	0.00	0.58	0.77	0.35	0.00	0.00	0.37	0.00	0.00	0.00	0.21
~29.9	1.05	2.91	4.42	3.98	2.97	2.95	1.87	2.64	0.78	0.62	2.46
~34.9	1.26	4.27	6.54	10.38	11.87	9.41	6.74	7.51	7.80	5.13	7.22
~39.9	2.10	6.80	11.35	13.32	17.07	17.71	17.23	15.82	14.62	13.96	13.12
~44.9	2.73	7.38	10.19	12.63	16.70	13.47	18.54	17.24	20.27	17.45	13.72
~49.9	3.78	3.30	9.04	10.73	12.99	14.76	18.16	21.10	17.35	23.20	13.41
~54.9	6.51	9.90	9.42	12.46	11.32	14.39	13.11	16.02	16.18	17.25	12.66
~59.9	3.57	8.74	9.81	8.30	9.09	10.52	9.74	9.33	11.70	11.09	9.22
60~	78.36	55.73	38.46	27.85	18.00	16.79	14.23	10.34	11.31	11.29	27.88
분위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주: 저자 추정치

자료: 성명재·우석진(2013)의 〈표 III-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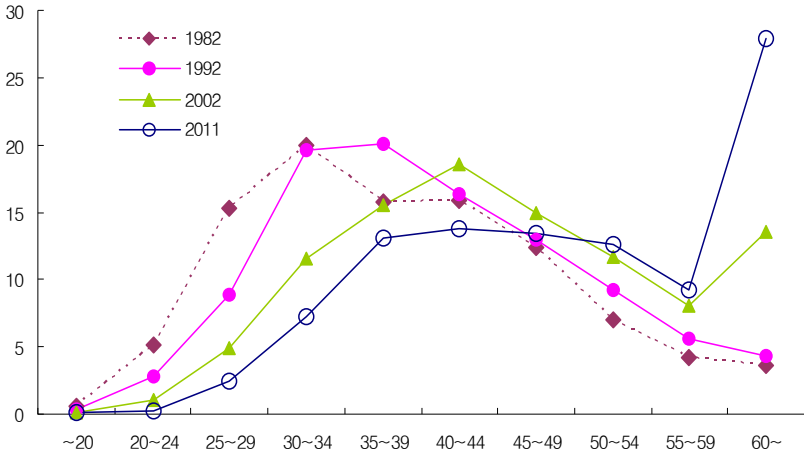
1982~2011년 동안 가구주 연령대별 가구 구성비의 변화추이를 추정하였다. 그 결과는 [그림 IV-1]에서 보는 바와 같다. [그림 IV-1]에서 보듯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젊은 연령대의 가구비중이 점차 감소하는 한편 중·장년층의 가구비중이 증가하는 한편 노인층의 가구비중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인구고령화의 영향이 빠르게 진전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한 가지 가계동향조사자료를 시계열적으로 고찰함에 있어 한 가지 주의가 필요하다. 통계청에서는 가계동향조사자료를 작성할 때, 2002년까지는 2인 이상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가구만을 대상으로 하였고, 2003~2005년에는 2인 이상의 전국 단위 가구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2006년부터 1인 가구를 포함하여 사실상 전 가구 대상으로 범위를 확대하였다.¹¹⁾ 따라서 시계열 통계의 경우 2000년대 이후 시점별로 분석 포괄 대상이 차이가 남에 유의하기 바란다.

11) 물론 가계동향조사자료는 여전히 농어가나 여관 등의 숙박업을 경영하는 가구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농어가 등에 대한 조사는 농가경제조사, 어가경제조사 등에서 자료를 구축하고 있다.

[그림 IV-1] 가구주 연령대별 가구구성 비중 변화 추이
(가계동향조사자료 기준)

(단위: %)



주: 1982~2002년은 2인 이상 도시가구 기준이고, 2011년은 1인 가구 포함 전국단위 가구 기준

2. 부가가치세의 부담 분포 특성

가. 소득계층별 분포 특성

소득계층별로 부가가치세 부담 분포를 추정한 결과는 <표 IV-3>과 같다. 가구당 평균 부가가치세 부담액은 1982년 8만 5천원 수준이었는데, 1990년에는 30만 1천원으로 증가하였고, 2002년에는 101만 8천원으로 평균 세부담이 100만원을 초과하였다. 2011년 현재 가구당 평균 부가가치세 부담은 140만 5천원 수준이다. 지난 30년간 부가가치세 부담액은 대체로 16배 이상 크게 증가하였다.

상위 10% 소득계층(10분위)과 하위 10% 소득계층(1분위) 사이의 세부담 상대비(즉, 10분위 배수)는 1980~1990년대에 걸쳐 5~6.6배의

범위 안에서 등락을 보였다. 다만 경제위기 기간이었던 1997~1998년에는 4.4~4.5배로 일시적으로 급락하였다. 2000년대 이후에는 세부담의 10분위 배수가 급속하게 커지면서 4.8~11.5배 수준으로 급격히 상승하였다. 최근 들어 부가가치세 부담의 10분위 배수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데, 그 이면에는 2000년대 이후 표본구성의 차이, 즉 가계동향조사자료의 조사대상 지역의 범위가 도시지역에서 전국단위로 확대되고, 또한 1인 가구까지 포괄하게 됨에 따른 표본구성의 변화에 의한 편의(bias), 그리고 1990년대 말의 경제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상대소득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이 그런 결과를 야기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2006년부터는 1분위의 부가가치세 부담이 급격히 감소하였다. 이는 크게 두 가지 원인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첫째, 2006년부터 1인 가구가 표본에 포함되기 시작하였기 때문이다. 1인 가구 중 상당수가 노인가구이고, 노인가구는 대부분 은퇴가구로서 다른 연령층에 비해 소득수준이 현저히 낮은 것이 특징이다. 또한 1인 가구는 2인 이상 가구보다 평균소득 수준이 현저히 낮다. 따라서 1인 가구를 포함하게 되면 상당수가 저소득층에 분포할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의 평균소득 수준도 낮추는 효과를 나타낸다. 그러므로 가구분포의 특성상 1인 가구의 표본 추가는 필연적으로 저소득층의 평균소득 하락을 초래하며 이는 평균소비지출 수준의 하락을 의미하므로 부가가치세 부담 수준 역시 작아진다.

둘째, 연령대별 소비패턴의 차이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저소득층은 고소득층보다 전체 소비지출 중에서 생활필수품에 지출하는 비중이 더 높다.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면세는 주로 생활필수품을 위주로 선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저소득층일수록 생활필수품에 대한 소비지출 비중이 고소득층보다 높다. 또한 위에서 보았듯이 노년층은 대부분 저소득층에 귀속된다. 따라서 노인층은 전체 소비지출 중 부가가치세 면세품목에 대한 소비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더 높은 것이 특징적이다. 그러므로 2006년부터 가계동향조사자료에 노인가구의 비중

이 절대적으로 높은 1인 가구가 표본에 포함되면서 1분위의 가구구성이 대부분 노인가구로 형성되기 시작하면서 소득 1분위의 가구구성이 이전 기간과 판이하게 달라지면서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데 크게 일조를 하였다고 할 수 있다.

〈표 IV-3〉 소득계층별 부가가치세 부담 분포

(단위: 천원, 배)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평균	10분위/ 1분위
1982	32	45	54	62	65	73	86	105	126	205	85	6.41
1983	40	48	57	70	74	83	92	109	143	220	94	5.50
1984	41	57	63	77	77	86	110	119	148	225	100	5.49
1985	43	60	73	74	86	94	103	127	151	246	106	5.72
1986	51	74	79	83	94	108	122	141	180	268	120	5.25
1987	64	87	94	111	123	130	152	182	212	317	147	4.95
1988	77	95	109	123	144	165	173	198	266	402	175	5.22
1989	96	134	151	170	200	228	260	298	375	637	255	6.64
1990	112	163	185	200	238	264	325	370	429	726	301	6.48
1991	143	207	232	273	299	338	388	447	556	810	369	5.66
1992	166	238	266	317	351	396	441	493	609	901	418	5.43
1993	187	269	318	376	402	461	523	577	685	1,001	480	5.35
1994	202	310	374	386	469	499	583	636	784	1,128	537	5.58
1995	224	352	424	484	525	586	648	742	858	1,160	600	5.18
1996	280	393	481	571	624	689	765	842	957	1,401	700	5.00
1997	334	432	518	562	622	665	760	878	1,015	1,468	726	4.40
1998	285	400	410	470	553	608	643	764	839	1,276	625	4.48
1999	272	397	489	563	663	716	786	914	1,022	1,451	727	5.33
2000	316	472	555	661	739	779	933	1,005	1,183	1,672	831	5.29
2001	360	523	617	714	793	908	989	1,105	1,298	1,723	903	4.79
2002	401	566	724	814	910	1,011	1,112	1,251	1,433	1,959	1,018	4.89
2003	461	708	865	988	1,126	1,214	1,401	1,548	1,714	2,292	1,232	4.97
2004	479	746	923	1,065	1,179	1,280	1,451	1,559	1,844	2,453	1,298	5.12
2005	471	734	930	1,053	1,239	1,370	1,474	1,695	1,950	2,583	1,350	5.48
2006	285	527	731	904	1,084	1,302	1,454	1,615	1,895	2,546	1,234	8.93
2007	292	523	750	928	1,102	1,350	1,446	1,669	1,936	2,640	1,264	9.04
2008	284	503	747	965	1,132	1,287	1,509	1,714	2,016	2,592	1,275	9.13
2009	262	526	715	1,000	1,214	1,452	1,638	1,869	2,292	3,015	1,398	11.51
2010	312	552	768	1,015	1,262	1,359	1,538	1,773	2,057	2,581	1,322	8.27
2011	329	606	846	1,097	1,307	1,466	1,626	1,923	2,135	2,710	1,405	8.24

주: 1.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저자 추정치

2. 1982~2002년은 2인 이상 도시가구 기준, 2003~2005년은 2인 이상 전국가구 대상, 2006년부터는 1인 가구 포함 기준임

〈표 IV-4〉는 소득계층별 총소득 분포의 추정결과를 보여준다. 총소득의 경우 10분위 배수는, 1980년대에는 5.0~6.0배 수준을 보였으며, 1990년대에는 4.7~5.0배로 크게 축소되었다. 다만 1997~1998년에는 경제위기로 인해 총소득의 10분위 배수가 일시적으로 급속히 확대되었으나 1999년에는 다시 줄어드는 듯하였으나, 추세적으로는 2000년대 이후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01년에는 그 비율이 5.7배였는데 2011년에는 10.5배로 확대되었다. 특히 2006년부터는 1인 가구가 표본에 포함되면서 총소득 10분위 배수가 크게 상승하였다.

〈표 IV-5〉에서는 부가가치세 부담의 10분위 배수와 총소득 10분위 배수의 변화추이 및 양자 사이의 상대비를 추정하였다. 상대비는 시대별로 상이한 패턴을 보이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1980년대와, 경제위기 직전까지의 1990년대의 경우에는 총소득보다 부가가치세의 10분위 배수가 조금 더 크다. 따라서 부가가치세의 10분위 배수를 총소득 10분위 배수로 나눈 값이 상기 기간 동안에는 대체로 1보다 큰 값을 보였다. 그러나 경제위기 이후부터 양자간의 역전현상이 나타나 상대비의 값이 1보다 작은 값을 가지는 것으로 전환되었다.

상기의 두 10분위 배수의 상대비는 다음과 같이 변환이 가능하다.

$$\begin{aligned} \frac{10\text{분위 부가가치세}/1\text{분위 부가가치세}}{10\text{분위 총소득}/1\text{분위 총소득}} &= \frac{10\text{분위 부가가치세}/10\text{분위 총소득}}{1\text{분위 부가가치세}/1\text{분위 총소득}} \\ &= \frac{10\text{분위 총소득 대비 세부담률}}{1\text{분위 총소득 대비 세부담률}} \end{aligned}$$

상기의 식으로부터 부가가치세의 10분위 배수와 총소득의 10분위 배수의 상대비는, 총소득 대비 10분위와 1분위의 부가가치세 세부담률의 상대비로 전환됨을 알 수 있다.

경제위기 이전 기간까지만 해도 상기의 상대비가 1보다 큰 값을 가짐으로써 고소득층(10분위)의 실효세부담률이 저소득층(1분위)의 실효세부담률보다 더 컸음을 의미한다. 이는 곧 경제위기 기간 이전만 해도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최소한 부분적으로는 정(+)¹²⁾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나타내었을 개연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이면에는 199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인구 비율이 3~4% 수준 이하로 매우 미미하였기 때문에 은퇴 등으로 인해 시장소득 수준이 절대적으로 낮은 계층의 비율이 현저하게 낮았을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 면세의 범위도 EU 국가 등에 비해 훨씬 넓었으며 또한 주된 면세품목도 생활필수품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이다.¹²⁾ 물론 1990년대까지는 대부분 노인가구로 구성된 1인 가구가 표본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점도 그러한 결과를 나타낸 하나의 요인이었지만, 그런 점을 고려하더라도 당시에는 노인인구 비중이 미미하였기 때문에 1인 가구가 표본에서 제외되어 있었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표본구성의 편의(sample composition bias)는 그다지 크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경제위기 이후 상기의 상대비는 1보다 작은 값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10분위보다 1분위의 총소득 대비 부가가치세의 실효세부담률이 더 커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는 부(-)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부가가치세의 소득계층별 부담구조가 바뀌었음을 시사한다. 특히 인구구조의 급격한 고령화가 그런 추이를 부추긴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1인 가구가 표본에 포함되면서 그런 현상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12)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성명재(2013b)를 참조하기 바란다.

〈표 IV-4〉 소득계층별 총소득 분포

(단위: 천원, 배)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평균	10분위/ 1분위
1982	1,502	2,081	2,443	2,823	3,170	3,567	4,114	4,856	5,909	9,078	3,954	6.04
1983	1,636	2,256	2,697	3,120	3,553	3,991	4,541	5,334	6,464	9,738	4,333	5.95
1984	1,794	2,531	3,055	3,488	3,943	4,483	5,038	5,864	7,198	10,801	4,820	6.02
1985	1,968	2,751	3,256	3,677	4,078	4,577	5,209	6,038	7,395	11,349	5,030	5.77
1986	2,182	3,122	3,692	4,184	4,732	5,337	6,013	6,971	8,511	12,603	5,735	5.78
1987	2,608	3,608	4,200	4,861	5,471	6,150	7,030	8,226	10,009	15,138	6,730	5.80
1988	3,133	4,391	5,222	5,942	6,670	7,469	8,489	9,692	11,796	17,733	8,052	5.66
1989	3,886	5,401	6,383	7,263	8,103	9,078	10,242	11,788	14,277	21,713	9,813	5.59
1990	4,890	6,715	7,817	8,830	9,816	10,982	12,303	14,040	16,762	24,415	11,655	4.99
1991	5,982	8,240	9,601	10,893	12,175	13,639	15,192	17,242	20,146	28,178	14,128	4.71
1992	6,896	9,656	11,290	12,760	14,187	15,851	17,609	19,748	23,495	32,954	16,445	4.78
1993	7,442	10,384	12,182	13,815	15,446	17,057	19,008	21,423	24,865	36,083	17,771	4.85
1994	8,343	11,770	13,785	15,582	17,392	19,489	21,834	24,767	29,081	40,070	20,214	4.80
1995	9,342	13,378	15,715	17,753	19,946	22,214	24,897	28,372	33,124	45,305	23,003	4.85
1996	10,275	14,703	17,258	19,785	22,371	25,018	28,083	31,703	36,862	51,374	25,745	5.00
1997	6,966	13,373	17,105	20,152	22,951	25,686	29,057	33,135	39,042	55,514	26,299	7.97
1998	5,070	10,054	13,777	16,833	19,768	22,521	25,778	29,695	35,405	51,466	23,036	10.15
1999	9,510	13,822	16,666	19,107	21,748	24,515	27,796	32,051	37,865	53,994	25,708	5.68
2000	10,322	15,129	18,250	21,143	24,250	27,425	31,160	35,978	42,797	63,685	29,017	6.17
2001	11,363	16,323	19,371	22,316	25,283	28,596	32,539	37,804	44,967	65,205	30,376	5.74
2002	11,489	16,727	20,361	23,963	27,169	31,007	35,114	40,737	48,860	70,491	32,593	6.14
2003	11,614	17,940	22,345	26,177	30,133	34,039	38,755	44,833	52,723	77,084	35,566	6.64
2004	12,187	19,023	23,588	27,862	32,046	36,648	41,630	48,125	57,539	84,156	38,282	6.91
2005	12,307	19,486	24,580	28,915	33,143	37,828	43,110	49,702	60,094	88,849	39,804	7.22
2006	8,936	15,346	20,569	25,343	30,541	35,992	41,907	49,055	59,083	87,782	37,455	9.82
2007	8,847	15,431	21,005	26,502	31,482	36,910	43,034	50,318	61,115	91,315	38,602	10.32
2008	8,828	15,128	20,987	26,492	31,920	37,471	43,713	51,535	62,774	94,407	39,324	10.69
2009	8,961	15,990	21,597	27,117	32,752	38,412	44,739	52,345	62,567	91,700	39,616	10.23
2010	8,494	16,109	22,102	28,080	33,750	39,511	46,349	54,453	65,957	96,099	41,088	11.31
2011	9,498	16,917	22,971	29,408	35,660	41,815	48,774	56,905	68,735	99,357	42,999	10.46

주: 1.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저자 추정치

2. 1982~2002년은 2인 이상 도시가구 기준, 2003~2005년은 2인 이상 전국가구 대상, 2006년부터는 1인 가구 포함 기준임

〈표 IV-5〉 부가가치세 및 총소득 10분위 배수의 추이 비교

(단위: 배)

	10분위 배수		A/B
	부가가치세 (A)	총소득 (B)	
1982	6.41	6.04	1.06
1983	5.50	5.95	0.92
1984	5.49	6.02	0.91
1985	5.72	5.77	0.99
1986	5.25	5.78	0.91
1987	4.95	5.80	0.85
1988	5.22	5.66	0.92
1989	6.64	5.59	1.19
1990	6.48	4.99	1.30
1991	5.66	4.71	1.20
1992	5.43	4.78	1.14
1993	5.35	4.85	1.10
1994	5.58	4.80	1.16
1995	5.18	4.85	1.07
1996	5.00	5.00	1.00
1997	4.40	7.97	0.55
1998	4.48	10.15	0.44
1999	5.33	5.68	0.94
2000	5.29	6.17	0.86
2001	4.79	5.74	0.83
2002	4.89	6.14	0.80
2003	4.97	6.64	0.75
2004	5.12	6.91	0.74
2005	5.48	7.22	0.76
2006	8.93	9.82	0.91
2007	9.04	10.32	0.88
2008	9.13	10.69	0.85
2009	11.51	10.23	1.12
2010	8.27	11.31	0.73
2011	8.24	10.46	0.79

- 주: 1.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저자 추정치
 2. 1982~2002년은 2인 이상 도시가구 기준, 2003~2005년은 2인 이상 전국가구 대상, 2006년부터는 1인 가구 포함 기준임
 3. 10분위 배수란 10분위(상위 10%)/1분위(하위 10%)의 상대비를 나타냄.

위에서는 총소득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부담의 분포구조를 고찰하였다. 그런데 소득은 소비(지출)와 저축으로 구성되고, 부가가치세는 소비를 기초로 세부담이 결정되는 만큼 소비지출 분포와 연계하여 부가가치세 부담구조를 고찰해보는 것 역시 매우 흥미롭다. 다만 재분배라는 세부담의 형평성 관점에 입각해 볼 때에는 소비지출보다는 소득 기준으로 고찰해보는 것이 보다 적합함은 물론이다.

〈표 IV-6〉은 소득계층별 소비지출 분포를 분석한 결과이다. 상위 10%와 하위 10%의 소비지출 상대비를 보면 1982년 이래 2000년대 중반까지 4~5배의 범위 내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다가 2000년대 중반 이후 약 8배 내외의 수준으로 확대되었다. 소비지출의 10분위 배수는 총소득의 10분위 배수보다 현저하게 그 값이 작다. 이는 ‘한계소비성향 체감의 법칙(diminishing law of marginal propensity to consume)’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소득의 증가 속도보다 소비지출의 증가 속도가 작기 때문이다.

〈표 IV-7〉은 〈표 IV-5〉와 유사하게 부가가치세 10분위 배수와 소비지출 10분위 배수 및 양자의 상대비를 추정한 값을 보여준다. 양자의 상대비는 다음과 같이 변환이 가능하다.

$$\begin{aligned} \frac{10\text{분위 부가가치세}/1\text{분위 부가가치세}}{10\text{분위 소비지출}/1\text{분위 소비지출}} &= \frac{10\text{분위 부가가치세}/10\text{분위 소비지출}}{1\text{분위 부가가치세}/1\text{분위 소비지출}} \\ &= \frac{10\text{분위의 소비지출 대비 세부담률}}{1\text{분위의 소비지출 대비 세부담률}} \end{aligned}$$

상기의 10분위 배수는 10분위와 1분위의 소비지출 부가가치세 세부담률의 상대비로 변환된다. 〈표 IV-7〉에서 보듯이 10분위 배수의 상대비는 1982~2012년 동안 모두 1을 초과하였다. 이는 같은 기간 동안 10분위의 세부담률이 1분위보다 더 컸음을 의미한다. 이는 다시 전체 소비지출 중에서 과세대상에 대한 소비지출 비중이 10분위가 1분위보다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곧 10분위의 세부담률이 1분위의 세부

담률보다 더 큼을 의미한다.

앞에서 소비지출 대신 총소득을 기준으로 상대비를 고찰하였을 때에는 1990년대 말의 경제위기 기간 이후 10분위의 총소득 대비 부가가치세의 세부담률이 1분위보다 더 작아졌었지만, 소비지출을 기준으로 하면 여전히 10분위의 세부담률이 1분위의 세부담률보다 크다. 이런 차이는 바로 총소득과 소비지출 사이의 저축 또는 소비성향의 차이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즉, 한계소비성향 체감의 법칙에서 보듯이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소비성향이 작아지기 때문에 총소득을 기준으로 10분위 배수를 비교해보면 1990년대 말 이후 상대비가 1보다 작은 값을 가지게 되었지만 소비지출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비록 예전에 비해 상대비의 절대값은 다소 작아졌지만 여전히 1보다 더 큰 값을 보이고 있다.

이는 생활필수품 위주의 광범위한 부가가치세 면세제도가 세부담의 역진성 보완에 기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표 IV-6〉 소득계층별 소비지출 분포

(단위: 천원, 배)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평균	10분위/ 1분위
1982	1,408	1,840	2,087	2,277	2,441	2,710	3,063	3,552	4,247	6,256	2,988	4.44
1983	1,535	1,910	2,150	2,435	2,736	2,955	3,265	3,795	4,631	6,517	3,193	4.25
1984	1,671	2,136	2,422	2,646	2,837	3,116	3,570	4,049	4,877	7,056	3,438	4.22
1985	1,727	2,317	2,518	2,748	3,036	3,381	3,882	4,419	5,129	7,928	3,708	4.59
1986	2,004	2,592	2,783	3,098	3,356	3,813	4,171	4,885	5,932	8,433	4,107	4.21
1987	2,367	3,015	3,164	3,648	3,911	4,345	4,925	5,510	6,580	9,328	4,679	3.94
1988	2,720	3,316	3,813	4,047	4,750	5,091	5,500	6,062	7,928	11,618	5,484	4.27
1989	3,259	4,115	4,695	5,150	5,901	6,359	7,270	8,095	9,966	15,051	6,986	4.62
1990	3,727	4,921	5,554	5,955	6,785	7,478	8,727	9,838	11,402	17,056	8,143	4.58
1991	4,538	6,113	6,636	7,636	8,352	9,200	10,217	11,694	13,822	19,509	9,772	4.30
1992	5,285	6,938	7,798	8,764	9,593	10,642	11,863	13,137	15,401	22,347	11,177	4.23
1993	5,756	7,444	8,630	9,914	10,628	11,530	13,066	14,370	16,251	23,456	12,105	4.08
1994	6,307	8,419	9,817	10,358	11,918	12,733	14,546	16,296	18,852	25,744	13,501	4.08
1995	6,730	9,578	10,948	12,319	13,279	14,552	15,886	18,411	20,879	27,461	15,003	4.08
1996	7,691	10,345	12,178	14,036	15,161	16,720	18,382	20,589	23,107	31,615	16,984	4.11
1997	9,555	11,563	13,206	14,197	15,374	16,325	19,065	20,640	24,169	33,574	17,767	3.51
1998	8,360	10,539	10,800	11,976	13,688	14,808	15,829	18,799	21,167	29,944	15,591	3.58
1999	7,395	10,351	12,168	13,775	15,853	16,899	18,543	21,282	24,613	33,276	17,416	4.50
2000	8,308	11,754	13,648	15,784	17,765	18,498	21,662	23,665	27,443	37,563	19,611	4.52
2001	8,931	12,430	14,545	16,688	18,262	20,784	22,519	25,329	28,916	38,838	20,724	4.35
2002	9,302	12,665	15,442	17,427	19,064	21,219	23,611	26,824	30,451	40,435	21,645	4.35
2003	9,313	13,476	16,234	18,241	20,322	22,182	25,379	28,338	31,485	42,077	22,705	4.52
2004	9,578	14,244	16,879	19,352	21,385	23,403	26,327	28,853	33,758	45,379	23,916	4.74
2005	9,477	14,203	17,499	19,300	22,730	24,941	26,559	30,591	34,953	46,787	24,705	4.94
2006	5,910	10,573	14,251	16,999	19,973	23,513	26,636	29,576	34,725	46,498	22,865	7.87
2007	6,236	10,628	14,488	17,898	20,593	24,491	26,824	31,073	36,072	48,595	23,692	7.79
2008	6,067	10,417	14,599	18,211	21,625	23,935	27,835	31,781	36,981	48,684	24,013	8.02
2009	5,618	9,964	13,093	16,833	19,865	23,414	26,044	29,496	35,566	45,268	22,514	8.06
2010	6,547	10,836	14,328	18,538	22,228	24,027	28,012	31,518	36,275	47,292	23,959	7.22
2011	6,961	11,717	15,664	19,776	23,427	26,288	29,178	33,233	37,376	47,643	25,124	6.84

- 주: 1.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저자 추정치
 2. 1982~2002년은 2인 이상 도시가구 기준, 2003~2005년은 2인 이상 전국가구 대상, 2006년부터는 1인 가구 포함 기준임

〈표 IV-7〉 부가가치세 및 소비지출 10분위 배수의 추이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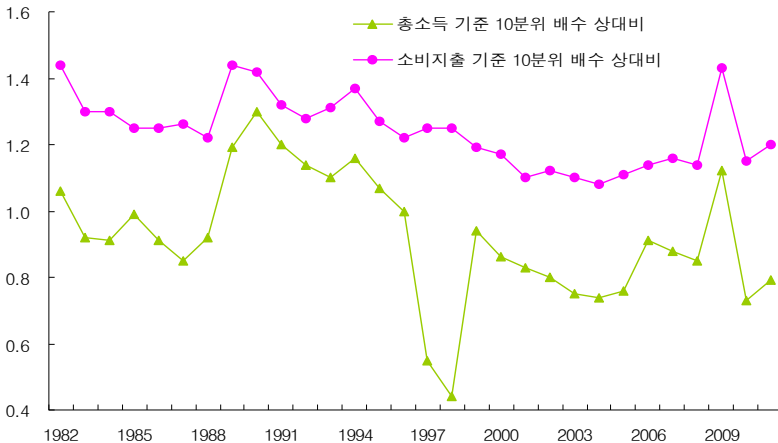
(단위: 배)

	10분위 배수		A/B
	부가가치세 (A)	소비지출 (B)	
1982	6.41	4.44	1.44
1983	5.50	4.25	1.30
1984	5.49	4.22	1.30
1985	5.72	4.59	1.25
1986	5.25	4.21	1.25
1987	4.95	3.94	1.26
1988	5.22	4.27	1.22
1989	6.64	4.62	1.44
1990	6.48	4.58	1.42
1991	5.66	4.30	1.32
1992	5.43	4.23	1.28
1993	5.35	4.08	1.31
1994	5.58	4.08	1.37
1995	5.18	4.08	1.27
1996	5.00	4.11	1.22
1997	4.40	3.51	1.25
1998	4.48	3.58	1.25
1999	5.33	4.50	1.19
2000	5.29	4.52	1.17
2001	4.79	4.35	1.10
2002	4.89	4.35	1.12
2003	4.97	4.52	1.10
2004	5.12	4.74	1.08
2005	5.48	4.94	1.11
2006	8.93	7.87	1.14
2007	9.04	7.79	1.16
2008	9.13	8.02	1.14
2009	11.51	8.06	1.43
2010	8.27	7.22	1.15
2011	8.24	6.84	1.20

주: 10분위 배수란 10분위(상위 10%)/1분위(하위 10%)의 상대비를 나타냄

상기의 관계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그림 IV-2]와 같다. 아래 그림에서 보듯이, 일부의 예외적인 특이 관측치(outlier)를 제외하고 보면, 총소득 기준과 소비지출 모두를 불문하고 10분위 배수의 상대비, 즉 1분위의 세부담률 대비 10분위의 세부담률의 배수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1980년대와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이 상대비는 1보다 큰 값을 가짐으로써 고소득층의 세부담률이 저소득층의 세부담률보다 더 높게 유지되어 부가가치세가 미약하나마 세부담이 약간 누진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누진도는 약화되었다. 그런데 특히 총소득 기준의 상대비는 1990년대 말부터 1보다 작은 값을 가짐으로써 부가가치세가 역진적인 모습으로 바뀐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소비지출 기준의 상대비는 아직 1보다 큰 값을 가져 소비지출 대비 세부담률은 여전히 고소득층이 저소득층보다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앞서 설명하였듯이

[그림 IV-2] 총소득 및 소비지출 대비 부가가치세 10분위 배수의 상대비 변화 추이



주: 1. 1982~2011년의 가계동향조사자료를 이용하여 저자가 추정한 추정결과임
 2. 부가가치세 10분위 배수의 상대비는 부가가치세의 10분위 배수를 총소득 또는 소비지출 10분위 배수로 나눈 값임. 1982~2002년은 2인 이상 도시가구 기준, 2003~2005년은 2인 이상 전국가구 대상, 2006년부터는 1인 가구 포함 기준임

저소득층일수록 전체 소비지출 가운데 차지하는 소비지출 비중이 더 큰 생활필수품을 중심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에 비해 소비지출 기준의 상대비 역시 조금 하락하였다. 이는 그만큼 과거에 비해 저소득층에서의 면세품 소비지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조금 축소되었음을 시사한다.

〈표 IV-8〉은 1982~2011년의 가계동향조사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소득계층별 총소득 대비 부가가치세의 실효세부담률을 추정한 결과이다. 다소의 등락을 보이기는 하지만,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총소득 대비 부가가치세 실효세부담률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다. 1982년 실효세부담률은 총소득 대비 2.16% 수준이었는데, 1992년에는 2.54%, 2002년에는 3.12%, 2011년에는 3.27%로 완만하게 상승하였다.

같은 기간 동안 평균소비성향은 1982년 0.756, 1992년 0.680, 2002년 0.664, 2011년 0.584로 계속 하락하였다. 이와 같이 총소득 중 소비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하락하였기 때문에 부가가치세의 세원분포가 상대적으로 축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총소득 대비 부가가치세의 실효세부담률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다는 점은 부가가치세 과세품에 대한 소비지출 비중이 급속히 상승한 반면 면세품 소비 비중은 상대적으로 축소되었음을 시사한다.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면세는 주로 생활필수품 위주로 선정되었다. 이는 앞에서 설명하였듯이 부가가치세 부담의 역진성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를 보완하고자 생활필수품은 면세하는 데 기본 취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면세품은 대체로 생활필수품인 만큼 수요의 소득탄력성이 작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반대로 과세품의 경우에는 면세품에 비해 수요의 소득탄력성이 더 크다. 지난 30여년간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결과 우리나라 가구의 소득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그 결과 부가가치세 과세품과 면세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평균적으로 소득탄력성이 더 큰 과세품의 소비증가율이 소득탄력성이 작은 면세품의 경우보다 더 크게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소비성향의 하락 속도보다 더 빠르게 진전됨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총

소득 대비 실효세부담률이 상승하였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최근에는 인구구조의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생활필수품에 대한 소비지출 비중이 높은 인구의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는 한편, 반대급부로 전체 소비지출 중 생활필수품에 대한 지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젊은 연령층의 인구비중이 감소하면서 총소득 대비 부가가치세의 실효세부담률 상승 속도도 점차 완만해지고 있다. 이는 1982~2011년 동안 실효세부담률의 상승 속도가 작아지고 있는 것으로부터 유추할 수 있다.

성명재(2013a)에 의하면 2029년부터 부가가치세의 GDP 대비 비중이 하락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품의 탄력적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생활필수품에 대한 소비지출성향이 월등히 높은 고령 인구의 증가로 인한 실효세부담률 하락효과가 2029년부터 전자의 효과를 압도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IV-8〉을 보면, 1980년대와 1990년대 초반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실효세부담률이 전체 평균보다 더 낮은 소득계층의 분포는 특정한 패턴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한 변화 모습을 보였다. 그러던 것이 1990년대 말부터는 일부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관되게 9~10분의 고소득층에서만 실효세부담률이 전체 평균보다 낮을 뿐 나머지 소득계층에서는 대체로 그보다 높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만 최근 1~8분위의 경우에도 일정한 패턴이 나타나고 있다. 즉, 그 이전 기간에는 패턴을 특정하기 어려웠지만, 최근에는 1분위의 실효세부담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상태에서 3~5분위로 이동할수록 실효세부담률이 대체로 상승하다가 그 이후의 소득분위에서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가운데 중·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전체 소비지출 중에서, 생활필수품을 중심으로 한 면세품에 대한 소비지출 비중의 차이로 인해 중소득층으로 갈수록 과세품지출 비중의 상승추세가 뚜렷함에 따라 실효세부담률이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중·고소득층의 경우에 그와 반대로 실효세부담률이 하락하는 패턴을 보이는 것은 분위별 소비패턴의 차이에도 일부 요인이 있지만 그보다는 소비성향의 하락에 기인하

는 바가 더 크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표 IV-9〉는 부가가치세의 소득계층별 부담 비중을 나타낸다. 전반적인 특징을 보면, 5분위를 중심으로 중소득층의 경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부가가치세 부담 비중이 상승하는 반면,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부담 비중은 점차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고소득층에서 부가가치세 부담 비중이 하락하는 현상은 소비성향의 하락에 기인하는 바가 큰 것으로 추정된다. 저소득층의 부담 비중이 하락하는 현상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가구구성 변화에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 즉, 저소득층, 특히 그 가운데 1분위 등의 경우에는 최근 들어 노인가구 비중이 압도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들 노인가구들은 특성상 부가가치세가 면세되고 있는 생활필수품 위주의 소비패턴을 보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표 IV-8〉 소득계층별 총소득 대비 부가가치세의 실효세부담률 부담 분포

(단위: %)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평균
1982	2.12	2.17	2.19	2.18	2.06	2.05	2.10	2.17	2.13	2.25	2.16
1983	2.42	2.15	2.13	2.25	2.09	2.08	2.03	2.05	2.21	2.26	2.16
1984	2.27	2.27	2.05	2.20	1.95	1.92	2.19	2.03	2.05	2.09	2.08
1985	2.18	2.18	2.23	2.02	2.11	2.06	1.98	2.11	2.05	2.17	2.11
1986	2.35	2.38	2.13	1.97	1.98	2.03	2.04	2.02	2.11	2.12	2.09
1987	2.45	2.42	2.23	2.28	2.25	2.11	2.16	2.22	2.12	2.10	2.19
1988	2.46	2.17	2.09	2.08	2.16	2.21	2.03	2.04	2.26	2.27	2.18
1989	2.47	2.48	2.37	2.34	2.47	2.52	2.54	2.53	2.63	2.93	2.60
1990	2.30	2.43	2.37	2.26	2.42	2.40	2.64	2.64	2.56	2.97	2.58
1991	2.39	2.51	2.41	2.51	2.46	2.48	2.56	2.59	2.76	2.88	2.61
1992	2.41	2.46	2.36	2.48	2.47	2.50	2.51	2.50	2.59	2.73	2.54
1993	2.52	2.59	2.61	2.72	2.61	2.70	2.75	2.69	2.76	2.78	2.70
1994	2.42	2.63	2.71	2.47	2.69	2.56	2.67	2.57	2.70	2.81	2.66
1995	2.39	2.63	2.70	2.73	2.63	2.64	2.60	2.61	2.59	2.56	2.61
1996	2.72	2.67	2.79	2.89	2.79	2.75	2.72	2.65	2.60	2.73	2.72
1997	4.79	3.23	3.03	2.79	2.71	2.59	2.62	2.65	2.60	2.64	2.76
1998	5.63	3.98	2.98	2.79	2.80	2.70	2.49	2.57	2.37	2.48	2.71
1999	2.86	2.87	2.93	2.95	3.05	2.92	2.83	2.85	2.70	2.69	2.83
2000	3.06	3.12	3.04	3.12	3.05	2.84	2.99	2.79	2.77	2.63	2.87
2001	3.16	3.20	3.19	3.20	3.14	3.17	3.04	2.92	2.89	2.64	2.97
2002	3.49	3.39	3.56	3.40	3.35	3.26	3.17	3.07	2.93	2.78	3.12
2003	3.97	3.95	3.87	3.77	3.74	3.57	3.61	3.45	3.25	2.97	3.46
2004	3.93	3.92	3.91	3.82	3.68	3.49	3.49	3.24	3.20	2.91	3.39
2005	3.82	3.77	3.78	3.64	3.74	3.62	3.42	3.41	3.24	2.91	3.39
2006	3.19	3.43	3.55	3.57	3.55	3.62	3.47	3.29	3.21	2.90	3.30
2007	3.30	3.39	3.57	3.50	3.50	3.66	3.36	3.32	3.17	2.89	3.27
2008	3.21	3.32	3.56	3.64	3.55	3.43	3.45	3.33	3.21	2.75	3.24
2009	2.92	3.29	3.31	3.69	3.71	3.78	3.66	3.57	3.66	3.29	3.53
2010	3.67	3.43	3.48	3.61	3.74	3.44	3.32	3.26	3.12	2.69	3.22
2011	3.47	3.58	3.68	3.73	3.67	3.50	3.33	3.38	3.11	2.73	3.27

주: 1.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저자 추정치

2. 1982~2002년은 2인 이상 도시가구 기준, 2003~2005년은 2인 이상 전국가구 대상, 2006년부터는 1인 가구 포함 기준임

3. 음영처리한 부분은 전체 실효세부담률 평균수준보다 실효세부담률이 낮은 소득분위를 나타냄

〈표 IV-9〉 소득계층별 부가가치세의 부담비중 분포

(단위: %)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계
1982	3.74	5.29	6.31	7.20	7.66	8.58	10.11	12.37	14.78	23.95	100
1983	4.22	5.16	6.14	7.48	7.93	8.86	9.81	11.70	15.22	23.49	100
1984	4.06	5.71	6.28	7.62	7.61	8.64	11.03	11.85	14.73	22.46	100
1985	4.06	5.63	6.90	7.02	8.14	8.89	9.76	12.03	14.30	23.27	100
1986	4.28	6.18	6.55	6.86	7.82	9.06	10.22	11.72	14.96	22.36	100
1987	4.34	5.93	6.36	7.57	8.33	8.83	10.29	12.40	14.41	21.53	100
1988	4.39	5.44	6.23	7.05	8.22	9.39	9.87	11.29	15.24	22.87	100
1989	3.77	5.26	5.91	6.65	7.87	8.95	10.19	11.69	14.72	24.98	100
1990	3.73	5.42	6.16	6.62	7.90	8.74	10.80	12.30	14.31	24.04	100
1991	3.87	5.60	6.28	7.38	8.11	9.18	10.48	12.13	15.05	21.93	100
1992	3.99	5.69	6.38	7.57	8.38	9.49	10.52	11.86	14.56	21.56	100
1993	3.90	5.61	6.62	7.81	8.43	9.58	10.88	12.03	14.26	20.88	100
1994	3.76	5.77	6.96	7.18	8.74	9.26	10.87	11.83	14.58	21.04	100
1995	3.72	5.87	7.06	8.06	8.77	9.75	10.81	12.34	14.32	19.32	100
1996	3.99	5.61	6.88	8.13	8.91	9.84	10.91	12.02	13.69	20.00	100
1997	4.60	5.95	7.13	7.75	8.59	9.15	10.49	12.11	13.96	20.25	100
1998	4.57	6.39	6.58	7.51	8.83	9.75	10.29	12.23	13.42	20.42	100
1999	3.75	5.45	6.74	7.73	9.12	9.86	10.79	12.57	14.05	19.96	100
2000	3.80	5.66	6.67	7.96	8.88	9.36	11.22	12.08	14.24	20.13	100
2001	3.97	5.81	6.82	7.92	8.79	10.04	10.95	12.25	14.39	19.06	100
2002	3.94	5.56	7.12	7.99	8.93	9.93	10.92	12.29	14.07	19.25	100
2003	3.74	5.74	7.03	8.03	9.12	9.86	11.39	12.56	13.91	18.62	100
2004	3.69	5.76	7.10	8.22	9.06	9.88	11.16	12.03	14.20	18.90	100
2005	3.48	5.44	6.90	7.80	9.18	10.16	10.89	12.56	14.45	19.14	100
2006	2.31	4.27	5.92	7.33	8.78	10.55	11.79	13.08	15.34	20.64	100
2007	2.31	4.14	5.93	7.35	8.71	10.70	11.44	13.19	15.30	20.94	100
2008	2.22	3.95	5.84	7.57	8.88	10.10	11.85	13.45	15.81	20.32	100
2009	1.87	3.76	5.12	7.14	8.71	10.35	11.72	13.35	16.40	21.57	100
2010	2.36	4.17	5.82	7.67	9.56	10.28	11.62	13.43	15.57	19.52	100
2011	2.35	4.30	6.03	7.81	9.30	10.44	11.59	13.67	15.23	19.27	100

주: 1.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저자 추정치

2. 1982~2002년은 2인 이상 도시가구 기준, 2003~2005년은 2인 이상 전국가구 대상, 2006년부터는 1인 가구 포함 기준임

나. 연령별 분포 특성

〈표 IV-10〉과 〈표 IV-11〉은 각각 가구주 연령을 5세 단위로 구분한 연령대별 부가가치세 부담 분포 및 총소득 대비 부가가치세 실효세부담률 분포를 추정한 결과를 보여준다.

부가가치세의 평균 세부담 수준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1980년대와 1990년대에는 50대 초반이었다. 그러나 2000년대에 접어든 이후에는 거의 일관되게 40대에서 가장 부가가치세 평균 부담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소비지출의 중심 연령대가 종전의 50대 중심에서 40대 중심으로 이동하였음을 시사한다.

〈표 IV-11〉에서 보듯이 부가가치세의 실효세부담률이 평균보다 낮은 연령대는 대체로 가구주 연령이 10대인 경우와 50대 이상인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와 반대로 20대와 30대 가구의 경우에는 실효세부담률이 평균치보다 높은 연령대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2000년대 이후에는 40대도 평균치보다 실효세부담률이 높은 연령대로 바뀌었다. 〈표 IV-10〉에서 보듯이 2000년대 이후 40대의 평균 부가가치세 부담 수준이 가장 높은 연령대로 바뀐 것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추정된다.

〈표 IV-10〉 연령별 부가가치세의 부담 분포

(단위: 천원)

	~20	20~24	25~29	30~34	35~39	40~44	45~49	50~54	55~59	60~	평균
1982	51	65	79	80	94	96	89	88	102	57	85
1983	47	72	80	92	101	106	99	110	98	74	94
1984	56	81	88	97	107	105	124	97	118	81	100
1985	70	98	92	101	114	111	121	113	120	76	106
1986	53	102	95	115	128	145	131	129	128	83	120
1987	63	112	131	140	149	166	164	169	148	141	147
1988	96	138	149	171	176	191	184	213	164	171	175
1989	124	196	213	221	271	304	285	302	260	216	255
1990	99	242	261	275	301	353	324	362	285	271	301
1991	171	264	318	321	388	421	422	417	399	262	369
1992	146	331	352	363	440	460	468	457	501	319	418
1993	235	361	456	434	466	517	530	569	623	382	480
1994	239	434	476	505	549	545	580	671	596	405	537
1995	258	422	594	593	618	604	616	684	680	417	600
1996	318	612	676	687	699	707	720	793	824	520	700
1997	321	586	669	711	723	723	793	841	855	512	726
1998	260	443	552	617	629	642	685	661	759	471	625
1999	321	475	621	740	739	773	821	782	770	547	727
2000	454	633	775	818	878	850	897	954	844	603	831
2001	442	616	810	888	920	935	985	1,014	927	706	903
2002	341	709	1,069	1,020	1,048	1,074	1,053	1,189	1,082	696	1,018
2003	697	1,056	1,170	1,182	1,314	1,430	1,384	1,302	1,198	748	1,232
2004	845	952	1,242	1,254	1,393	1,504	1,446	1,350	1,226	828	1,298
2005	774	1,083	1,400	1,354	1,438	1,612	1,524	1,420	1,254	804	1,350
2006	374	876	1,100	1,328	1,410	1,598	1,482	1,425	1,143	637	1,234
2007	483	830	1,182	1,378	1,493	1,637	1,481	1,453	1,216	663	1,264
2008	630	892	1,121	1,495	1,517	1,630	1,555	1,459	1,247	669	1,275
2009	539	708	1,226	1,557	1,700	1,966	1,803	1,535	1,258	682	1,398
2010	769	915	1,364	1,542	1,542	1,536	1,639	1,537	1,365	728	1,322
2011	229	1,454	1,304	1,601	1,603	1,620	1,806	1,616	1,547	815	1,405

- 주: 1.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저자 추정치
 2. 1982~2002년은 2인 이상 도시가구 기준, 2003~2005년은 2인 이상 전국가구 대상, 2006년부터는 1인 가구 포함 기준임
 3. 음영처리한 부분은 평균세부담이 가장 큰 연령대를 나타냄

〈표 IV-11〉 연령별 총소득 대비 부가가치세의 실효세부담률 분포

(단위: %)

	~20	20~24	25~29	30~34	35~39	40~44	45~49	50~54	55~59	60~	평균
1982	2.05	2.27	2.26	2.12	2.25	2.17	1.99	2.04	2.20	2.04	2.16
1983	2.06	2.16	2.13	2.15	2.20	2.20	2.07	2.16	2.21	2.36	2.16
1984	1.96	2.10	2.14	2.19	2.05	2.05	2.10	1.73	2.20	2.14	2.08
1985	2.39	2.40	2.14	2.17	2.16	2.05	2.14	1.85	1.95	1.96	2.11
1986	1.73	2.47	2.04	2.04	2.12	2.31	1.95	2.01	2.06	1.95	2.09
1987	1.64	2.23	2.27	2.25	2.19	2.30	2.08	2.03	1.89	2.36	2.19
1988	2.40	2.13	2.18	2.28	2.20	2.23	2.01	2.07	2.06	2.31	2.18
1989	2.20	2.41	2.63	2.53	2.72	2.68	2.55	2.60	2.35	2.59	2.60
1990	1.62	2.57	2.69	2.64	2.57	2.65	2.48	2.61	2.37	2.46	2.58
1991	2.14	2.30	2.64	2.58	2.73	2.69	2.63	2.51	2.47	2.39	2.61
1992	1.72	2.64	2.56	2.44	2.63	2.59	2.50	2.45	2.66	2.45	2.54
1993	2.12	2.86	2.86	2.70	2.71	2.58	2.64	2.68	2.97	2.61	2.70
1994	1.99	2.86	2.71	2.67	2.77	2.58	2.56	2.74	2.54	2.54	2.66
1995	2.01	2.67	2.87	2.76	2.75	2.55	2.39	2.49	2.60	2.23	2.61
1996	1.86	3.10	3.07	2.82	2.72	2.65	2.59	2.67	2.87	2.46	2.72
1997	2.83	3.36	2.79	2.87	2.68	2.62	2.69	2.74	2.88	2.93	2.76
1998	4.11	3.23	2.87	2.72	2.72	2.57	2.56	2.59	2.94	3.10	2.71
1999	2.34	2.50	2.99	3.03	2.95	2.73	2.83	2.66	2.84	2.58	2.83
2000	2.44	2.94	3.17	3.09	2.92	2.80	2.80	2.86	2.81	2.61	2.87
2001	2.74	3.09	3.19	3.21	3.02	2.90	2.86	2.99	2.91	2.86	2.97
2002	2.20	3.22	3.90	3.29	3.13	3.09	2.95	3.24	3.14	2.75	3.12
2003	3.18	3.63	3.82	3.53	3.59	3.70	3.47	3.31	3.15	2.94	3.46
2004	3.52	3.27	3.89	3.45	3.58	3.63	3.41	3.29	3.06	2.82	3.39
2005	2.21	3.82	3.78	3.55	3.60	3.57	3.45	3.32	2.96	2.86	3.39
2006	2.15	3.54	3.51	3.53	3.55	3.57	3.33	3.25	2.99	2.67	3.30
2007	2.38	3.57	3.65	3.44	3.42	3.58	3.39	3.18	3.10	2.64	3.27
2008	2.95	3.86	3.51	3.33	3.43	3.49	3.39	3.10	3.08	2.73	3.24
2009	3.36	3.37	3.70	3.57	3.78	4.05	3.72	3.45	3.07	2.80	3.53
2010	4.01	3.57	4.04	3.54	3.34	3.22	3.19	3.26	3.06	2.86	3.22
2011	2.26	4.71	3.86	3.76	3.37	3.27	3.28	3.26	3.22	2.91	3.27

주: 1.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저자 추정치
 2. 1982~2002년은 2인 이상 도시가구 기준, 2003~2005년은 2인 이상 전국가구 대상, 2006년부터는 1인 가구 포함 기준임
 3. 음영처리된 부분은 실효세부담률이 전체 평균보다 낮은 연령층을 표시한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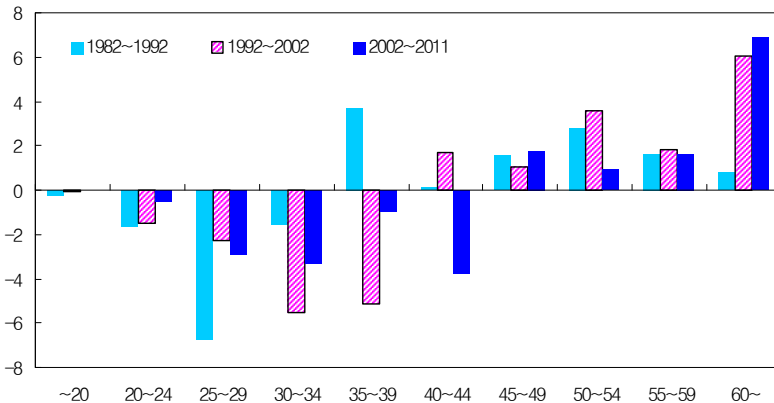
〈표 IV-12〉에서 보듯이 점차 고연령층의 부가가치세 부담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고연령층의 경우 생활필수품 위주로의 소비패턴으로 인해 젊은 연령층에 비해 단위당 소비지출 대비 부가가치세 부담 기여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절대인구 및 인구비중이 급속히 상승함에 따라 세부담 기여도도 따라서 증가하기 때문이다.

60세 이상 연령대의 경우 1982년의 부가가치세 부담 비중은 2.5%에 불과하였으나, 1992년 3.3%, 2002년 9.3%로 크게 증가한 후, 2011년에는 16.2%로 세부담 비중이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반면에 가구주 연령이 10대, 20대 30대인 연령층의 세부담 비중은 빠르게 축소되고 있다.

전체적으로는 [그림 IV-3]에서 보듯이 30대 및 그보다 연령이 낮은 연령대에서는 대체로 부담 비중이 감소하는 반면 40대 이상의 연령대에서는 부가가치세 부담 비중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림 IV-3] 가구주 연령대별 부가가치세 부담 비중의 변천

(단위: %p)



주: 1982~2002년은 2인 이상 도시가구 기준, 2003~2005년은 2인 이상 전국가구 대상, 2006년부터는 1인 가구 포함 기준임

〈표 IV-12〉 연령별 부가가치세의 부담 비중 분포

(단위: %)

	~20	20~24	25~29	30~34	35~39	40~44	45~49	50~54	55~59	60~	계
1982	0.37	3.87	14.18	18.67	17.41	17.84	12.91	7.31	5.09	2.47	100
1983	0.49	3.59	13.39	18.54	17.60	16.69	13.98	7.65	4.60	3.50	100
1984	0.76	4.21	14.99	18.96	17.27	15.23	14.53	6.77	5.03	2.43	100
1985	0.54	4.01	13.80	19.47	18.11	14.56	13.81	8.18	4.81	2.65	100
1986	0.29	3.39	12.02	18.58	18.28	18.21	14.12	8.38	4.59	2.37	100
1987	0.53	3.19	13.04	19.96	17.40	15.89	12.95	9.29	4.09	3.62	100
1988	0.38	2.53	11.49	22.09	17.47	16.60	12.08	10.14	3.21	3.90	100
1989	0.39	2.34	10.57	20.35	19.01	17.52	13.45	9.38	4.67	2.53	100
1990	0.23	2.11	9.42	19.27	19.38	19.18	13.43	10.10	4.58	2.87	100
1991	0.25	2.16	7.40	18.35	19.92	19.54	14.15	10.19	5.54	2.98	100
1992	0.13	2.22	7.44	17.08	21.11	17.94	14.47	10.08	6.71	3.26	100
1993	0.34	2.24	9.61	19.50	18.99	15.40	13.00	9.91	6.61	4.40	100
1994	0.24	1.94	8.32	17.57	19.38	15.07	13.43	11.79	7.07	5.23	100
1995	0.13	1.28	8.69	17.76	20.81	14.39	12.85	10.54	7.91	5.44	100
1996	0.19	1.87	6.71	16.68	18.50	15.42	13.75	11.33	8.84	6.54	100
1997	0.12	1.56	6.73	15.18	17.79	15.26	15.07	11.76	9.25	7.08	100
1998	0.10	1.19	6.95	15.77	20.71	17.25	12.94	9.97	8.82	6.33	100
1999	0.15	1.11	5.82	14.09	21.36	17.42	14.21	10.75	7.39	7.77	100
2000	0.18	1.17	5.00	11.79	19.83	19.59	13.93	12.85	7.37	8.33	100
2001	0.13	0.75	4.80	11.30	18.17	18.87	15.17	13.21	7.84	9.72	100
2002	0.04	0.73	5.19	11.56	15.97	19.62	15.50	13.64	8.52	9.28	100
2003	0.08	0.76	4.19	12.19	18.05	23.47	16.32	10.44	6.88	8.04	100
2004	0.07	0.54	3.62	11.64	16.48	22.40	18.69	10.31	7.74	8.77	100
2005	0.04	0.47	3.30	11.39	15.64	21.92	19.19	11.71	7.92	9.00	100
2006	0.01	0.90	3.06	9.68	15.30	20.75	18.47	13.24	8.49	10.74	100
2007	0.04	0.76	3.01	8.93	16.54	19.32	17.75	13.68	7.84	12.20	100
2008	0.06	0.57	2.85	8.71	16.25	18.44	18.83	13.87	8.48	12.66	100
2009	0.01	0.23	2.88	8.60	16.69	19.90	19.02	14.21	7.85	11.80	100
2010	0.03	0.22	2.88	9.39	16.41	16.58	17.67	14.72	9.26	13.53	100
2011	0.02	0.22	2.29	8.23	14.97	15.83	17.25	14.57	10.15	16.18	100

주: 1.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저자 추정치

2. 1982~2002년은 2인 이상 도시가구 기준, 2003~2005년은 2인 이상 전국가구 대상, 2006년부터는 1인 가구 포함 기준임

이러한 추이는 <표 IV-13>에서 보듯이 가구주 연령분포의 변화추이를 볼 때 좀 더 명확해진다. 60세 이상 연령대의 경우 표본비중(가중치)은 1982년 3.7%에서 1992년 4.3%, 2002년 13.6%, 2011년 27.9%로 급격하게 노인가구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반면에 20대 후반 가구의 비중은 같은 기간 동안 15.3% → 8.8% → 4.9% → 2.5%로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바로 이와 같이 연령대별로 비대칭적인 가구구성비의 변화, 즉 인구고령화의 영향으로 연령대별 부가가치세 부담의 구성비가 급격히 바뀌는 근본 원인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은, 예를 들어, 60세 이상 가구의 경우 가구의 표본구성비에 비해 부가가치세의 부담 비중이 현저하게 작다는 것이다. 이는 은퇴기의 노인가구의 경우 상대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고 있는 생활필수품에 대한 소비 비중이 높아 다른 연령층에 비해 총소득 대비 실효세부담률이 현저하게 낮기 때문이다.

<표 IV-14>는 <표 IV-12>의 연령대별 세부담 비중을 <표 IV-13>의 대응되는 연령대별 가구구성 비중으로 나눈 값을 나타낸다. <표 IV-14>에서 해당 상대비의 값이 1보다 크다는 것은 가구구성비에 비해 부가가치세 부담 비중이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평균 실효세부담률보다 해당 연령대의 실효세부담률이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상대비가 1보다 크면 평균적인 수준보다 부가가치세 과세품에 대한 소비 비중이 더 높음을 의미한다. 반대로 상대비가 1보다 작으면 평균적인 수준보다 부가가치세 과세품에 대한 소비 비중이 더 낮음을 의미한다.

<표 IV-14>에서 보듯이 상대비는 30대 후반~50대 초반에 대체로 1보다 크며, 그 밖의 연령대에서는 그 값이 대체로 1보다 작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표 IV-13〉 가구주 연령별 가구구성 비중 분포

(단위: %)

	~20	20~24	25~29	30~34	35~39	40~44	45~49	50~54	55~59	60~	계
1982	0.63	5.09	15.34	20.01	15.76	15.84	12.38	7.04	4.25	3.67	100
1983	0.98	4.66	15.73	18.95	16.30	14.75	13.28	6.54	4.41	4.41	100
1984	1.37	5.19	16.99	19.61	16.25	14.54	11.74	7.01	4.28	3.02	100
1985	0.83	4.34	15.95	20.44	16.78	13.94	12.08	7.69	4.23	3.72	100
1986	0.66	3.99	15.2	19.47	17.17	15.10	12.90	7.79	4.32	3.42	100
1987	1.24	4.20	14.65	21.05	17.18	14.08	11.65	8.11	4.06	3.77	100
1988	0.70	3.21	13.47	22.69	17.38	15.25	11.50	8.36	3.45	3.99	100
1989	0.80	3.04	12.63	23.47	17.89	14.67	12.04	7.91	4.57	2.98	100
1990	0.70	2.63	10.87	21.14	19.38	16.37	12.48	8.41	4.84	3.19	100
1991	0.54	3.02	8.58	21.08	18.95	17.12	12.37	9.02	5.12	4.20	100
1992	0.39	2.79	8.83	19.65	20.04	16.31	12.91	9.22	5.59	4.27	100
1993	0.69	2.98	10.13	21.59	19.56	14.29	11.78	8.36	5.09	5.53	100
1994	0.54	2.40	9.38	18.69	18.97	14.84	12.44	9.44	6.38	6.94	100
1995	0.30	1.83	8.78	17.98	20.20	14.30	12.52	9.25	6.98	7.84	100
1996	0.42	2.13	6.96	16.99	18.52	15.28	13.36	10.01	7.51	8.82	100
1997	0.28	1.93	7.30	15.51	17.86	15.31	13.79	10.14	7.85	10.03	100
1998	0.25	1.67	7.87	15.96	20.59	16.78	11.79	9.43	7.27	8.39	100
1999	0.34	1.70	6.81	13.85	21.00	16.39	12.59	10.00	6.98	10.33	100
2000	0.33	1.54	5.37	11.99	18.78	19.16	12.91	11.19	7.26	11.48	100
2001	0.28	1.10	5.35	11.49	17.83	18.21	13.92	11.77	7.63	12.43	100
2002	0.11	1.04	4.94	11.54	15.52	18.59	14.98	11.68	8.01	13.57	100
2003	0.15	0.89	4.42	12.7	16.93	20.22	14.53	9.87	7.07	13.23	100
2004	0.11	0.73	3.78	12.05	15.36	19.34	16.78	9.91	8.19	13.75	100
2005	0.07	0.59	3.18	11.36	14.68	18.36	17.00	11.13	8.52	15.11	100
2006	0.04	1.27	3.43	8.99	13.40	16.03	15.39	11.47	9.17	20.81	100
2007	0.10	1.16	3.22	8.19	14.00	14.91	15.14	11.90	8.15	23.23	100
2008	0.12	0.81	3.24	7.43	13.65	14.42	15.43	12.12	8.67	24.12	100
2009	0.02	0.46	3.28	7.72	13.73	14.15	14.75	12.94	8.73	24.21	100
2010	0.06	0.32	2.79	8.05	14.06	14.27	14.25	12.66	8.97	24.58	100
2011	0.10	0.21	2.46	7.22	13.12	13.72	13.41	12.66	9.22	27.88	100

주: 1.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저자 추정치

2. 1982~2002년은 2인 이상 도시가구 기준, 2003~2005년은 2인 이상 전국가구 대상, 2006년부터는 1인 가구 포함 기준임

〈표 IV-14〉 연령별 부가가치세 부담비중: 가구구성 비중의 상대비 분포

(단위: 배)

	~20	20~24	25~29	30~34	35~39	40~44	45~49	50~54	55~59	60~	전체
1982	0.60	0.76	0.92	0.93	1.11	1.13	1.04	1.04	1.20	0.67	1
1983	0.50	0.77	0.85	0.98	1.08	1.13	1.05	1.17	1.04	0.79	1
1984	0.55	0.81	0.88	0.97	1.06	1.05	1.24	0.97	1.18	0.81	1
1985	0.66	0.92	0.87	0.95	1.08	1.04	1.14	1.06	1.14	0.71	1
1986	0.44	0.85	0.79	0.95	1.06	1.21	1.09	1.08	1.06	0.69	1
1987	0.43	0.76	0.89	0.95	1.01	1.13	1.11	1.14	1.01	0.96	1
1988	0.55	0.79	0.85	0.97	1.01	1.09	1.05	1.21	0.93	0.98	1
1989	0.49	0.77	0.84	0.87	1.06	1.19	1.12	1.19	1.02	0.85	1
1990	0.33	0.80	0.87	0.91	1.00	1.17	1.08	1.20	0.95	0.90	1
1991	0.46	0.72	0.86	0.87	1.05	1.14	1.14	1.13	1.08	0.71	1
1992	0.35	0.79	0.84	0.87	1.05	1.10	1.12	1.09	1.20	0.76	1
1993	0.49	0.75	0.95	0.9	0.97	1.08	1.10	1.18	1.30	0.80	1
1994	0.44	0.81	0.89	0.94	1.02	1.02	1.08	1.25	1.11	0.75	1
1995	0.43	0.70	0.99	0.99	1.03	1.01	1.03	1.14	1.13	0.69	1
1996	0.45	0.87	0.96	0.98	1.00	1.01	1.03	1.13	1.18	0.74	1
1997	0.44	0.81	0.92	0.98	1.00	1.00	1.09	1.16	1.18	0.71	1
1998	0.42	0.71	0.88	0.99	1.01	1.03	1.10	1.06	1.21	0.75	1
1999	0.44	0.65	0.85	1.02	1.02	1.06	1.13	1.08	1.06	0.75	1
2000	0.55	0.76	0.93	0.98	1.06	1.02	1.08	1.15	1.02	0.73	1
2001	0.49	0.68	0.90	0.98	1.02	1.04	1.09	1.12	1.03	0.78	1
2002	0.33	0.70	1.05	1.00	1.03	1.06	1.03	1.17	1.06	0.68	1
2003	0.57	0.86	0.95	0.96	1.07	1.16	1.12	1.06	0.97	0.61	1
2004	0.65	0.73	0.96	0.97	1.07	1.16	1.11	1.04	0.94	0.64	1
2005	0.57	0.80	1.04	1.00	1.07	1.19	1.13	1.05	0.93	0.60	1
2006	0.30	0.71	0.89	1.08	1.14	1.29	1.20	1.15	0.93	0.52	1
2007	0.38	0.66	0.94	1.09	1.18	1.30	1.17	1.15	0.96	0.52	1
2008	0.49	0.70	0.88	1.17	1.19	1.28	1.22	1.14	0.98	0.52	1
2009	0.39	0.51	0.88	1.11	1.22	1.41	1.29	1.10	0.90	0.49	1
2010	0.58	0.69	1.03	1.17	1.17	1.16	1.24	1.16	1.03	0.55	1
2011	0.16	1.04	0.93	1.14	1.14	1.15	1.29	1.15	1.10	0.58	1

주: 1.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저자 추정치

2. 1982~2002년은 2인 이상 도시가구 기준, 2003~2005년은 2인 이상 전국가구 대상, 2006년부터는 1인 가구 포함 기준임

3. 부가가치세의 형평효과 변화 추이

조세의 소득재분배 효과는 종종 세전 및 세후소득 불평등도의 변화율을 기준으로 측정·판단하는 경우가 많다. 성명재(2006, 2007, 2011a,b), 성명재·박기백(2008), 송헌재·성명재(2012), Sung & Park(2011), Barnard et al.(2011) 등의 연구에서도 세전·세후소득 지니계수의 변화율을 기준으로 조세 또는 재정지출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논하고 있다. 본절에서도 이들 연구와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추정·분석한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선행연구(성명재, 2013b)에서 심층적으로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분석하였으므로 그의 연구를 중심으로 부가가치세의 형평 효과를 고찰해본다.

〈표 IV-15〉는 성명재(2013b)의 〈표 4〉를 인용하였다. 〈표 IV-15〉의 두 번째 열은 부가가치세를 차감하기 이전단계의 소득, 즉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추정한 지니계수를 나타낸다. 셋째 열은 가처분소득에서 부가가치세 부담을 차감한 후의 소득을 기준으로 추정한 지니계수를 나타낸다. 가처분소득은 관찰 가능한 소득이지만,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소득은 실제로 관찰할 수 없는 가공의 소득을 나타낸다. 가공의 소득개념이지만 부가가치세 부담 추정치를 가처분소득에서 차감함으로써 가상의 소득을 산출할 수 있다. 두 가지 소득에 대한 지니계수 추정치의 차이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로 인해 나타나는 소득불평등도의 변화를 나타낸다. 그러므로 가처분소득 기준 지니계수를 분모로 하여 지니계수의 변화율을 측정하면 부가가치세 과세로 인한 소득재분배 효과를 측정할 수 있다.

외환위기가 발발하였던 1997년 시점 이전의 기간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에 따라 세후소득 지니계수가 오히려 세전소득(가처분소득) 지니계수보다 그 값이 더 작게 나타났다. 1987년에만 예외적으로 소폭 지니계수가 상승하였지만 그 외 연도에서는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 후에 지니계수가 감소하였다. 이는 1996년까지만 해도 부가가치세가

정(+)¹³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나타내었음을 의미한다. 물론 부가가치세가 정(+)¹³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나타내기는 하였지만 그 수준은 매우 미미하여 1982~1996년 기간(단, 1987년 제외) 동안 지니계수를 0.04~0.65% 감소시킨 것으로 추정되었다. 시계열적으로는 부가가치세 과세에 따른 지니계수 하락률은 점차 절대값이 작아지는 모습을 보였다.

1997년부터 현재까지는 2009년의 -0.18%를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 과세 후 지니계수의 변화율이 모두 양(+)¹³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를 통해 부(-)¹³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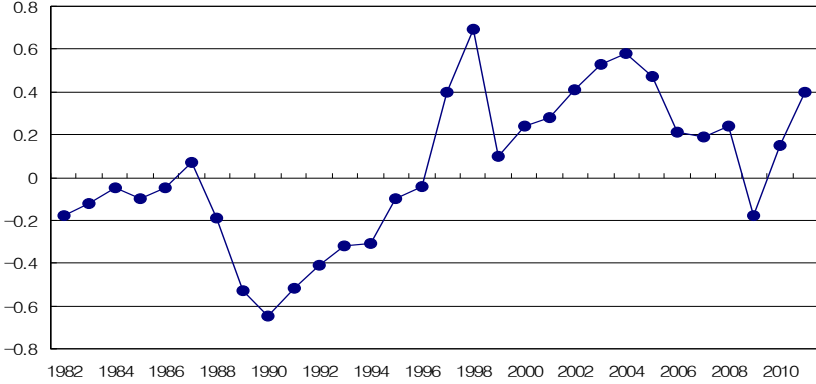
[그림 IV-4]에서 보듯이 1982~2011년 동안 부가가치세 과세 전후의 지니계수 변화율은 음(-)¹³에서 양(+)¹³의 방향으로 부호가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절대값의 크기도 점차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1990년대 중반까지는 매우 미약하지만 부가가치세가 정(+)¹³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나타내었지만, 그 이후부터는 부(-)¹³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나타내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그림 IV-4]에서 보듯이 변화율 곡선이 우상향함으로써 정(+)¹³의 기울기를 가지고 있어 장차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 부(-)¹³의 소득재분배 효과의 크기가 점진적으로 더 커질 것임을 전망할 수 있다.

인구고령화로 인해 부가가치세의 부담구조가 점점 더 역진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현재는 아니지만 향후에는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이 좀 더 커지면서 부(-)¹³의 소득재분배 효과의 절댓값도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선진국의 경험¹³을 볼 때 이런 추이는 인구의 고령화 추세가 가속화될수록 더욱 빨라질 것으로 추측된다.

13)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Keen & Lockwood(2010)와 OECD(2012) 등을 참조하기 바란다.

[그림 IV-4] 부가가치세 세전·세후소득 지니계수의 변화율

(단위: %)



주: 1982~2002년은 2인 이상 도시가구 기준, 2003~2005년은 2인 이상 전국가구 대상, 2006년부터는 1인 가구 포함 기준임

<표 IV-15> 세전·세후 지니계수의 비교

	부가세전 소득지니(A)	부가세후 지니계수(B)	차이(C=B-A)	변화율(C/A, %)
1982	0.27380	0.27332	-0.00048	-0.18
1983	0.27075	0.27043	-0.00032	-0.12
1984	0.26909	0.26896	-0.00013	-0.05
1985	0.26188	0.26162	-0.00026	-0.10
1986	0.26007	0.25993	-0.00014	-0.05
1987	0.26629	0.26648	0.00019	0.07
1988	0.25628	0.25579	-0.00049	-0.19
1989	0.25631	0.25495	-0.00136	-0.53
1990	0.24024	0.23868	-0.00156	-0.65
1991	0.23098	0.22979	-0.00119	-0.52
1992	0.22865	0.22771	-0.00094	-0.41
1993	0.23153	0.23079	-0.00074	-0.32
1994	0.23209	0.23137	-0.00072	-0.31
1995	0.23111	0.23087	-0.00024	-0.10

〈표 IV-15〉의 계속

	부가세전 소득지니(A)	부가세후 지니계수(B)	차이(C=B-A)	변화율(C/A, %)
1996	0.23665	0.23656	-0.00009	-0.04
1997	0.27225	0.27333	0.00108	0.40
1998	0.30313	0.30521	0.00208	0.69
1999	0.25732	0.25757	0.00025	0.10
2000	0.27039	0.27105	0.00066	0.24
2001	0.26075	0.26149	0.00074	0.28
2002	0.26997	0.27109	0.00112	0.41
2003	0.27136	0.27280	0.00144	0.53
2004	0.27678	0.27838	0.00160	0.58
2005	0.28138	0.28270	0.00132	0.47
2006	0.31535	0.31600	0.00065	0.21
2007	0.31734	0.31795	0.00061	0.19
2008	0.32357	0.32436	0.00079	0.24
2009	0.31537	0.31480	-0.00057	-0.18
2010	0.32274	0.32324	0.00050	0.15
2011	0.31820	0.31948	0.00128	0.40
		지니계수 변화율 평균	전체	0.04
			1982-1990	-0.20
			1991-2000	-0.03
			2001-2011	0.30

- 주: 1.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시자료의 소비지출 항목별 지출자료에서 과세·면세 품목을 분류한 후, 과세대상 여부에 따라 소비지출액으로부터 세부담액을 역산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부담액을 추정치하였음. 이를 토대로 부가가치세 과세 전후 소득의 지니계수를 추정하였음
2. 1982~2002년: 2인 이상 도시지역 거주 가구(성명재(1999)의 연구를 적용하여 자영업자가구의 소득을 추정하여 전가구를 대상으로 분석하였음)
3. 2003~2005년: 2인 이상 전국 가구
4. 2006~현재: 1인가구 포함 전국 가구
- 자료: 성명재(2013b) 〈표 4〉.

4. 부가가치세 면세제도의 효과 분석

본절에서는 부가가치세 면세의 효과를 분석한다.

앞서 논의하였듯이 우리나라에서 부가가치세의 면세는 주로 소득재분배 측면(또는 부가가치세의 역진성 보완 기능)에서 생활필수품을 중심으로 면세를 설정하였다. 부가가치세의 면세는 일반적으로 세부담의 경감효과를 나타내어 조세감면(또는 조세지원)의 효과를 나타내기도 한다. 부가가치세의 감면(여기서는 면세를 지칭)을 통한 조세지원규모는 박기백(2000), 박명호(2008), 정재호(2010) 등에 의해 연구된 바 있다.

아래에서는 부가가치세 면세가 가져다주는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면세가 전혀 없는 경우를 상정하여 현재 상태와 비교함으로써 면세의 효과를 추정·분석한다. 원칙적으로 모든 부문을 과세로 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정부(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경우에는 면세로 설정하는 것이 국제적 규범이다. 따라서 면세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가상적으로 모든 부문을 과세로 설정하더라도 정부의 경우에는 면세로 남겨둔다.

부가가치세 면세제도의 효과 분석은 가계동향조사자료를 이용한 미시분석과,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한 두 가지 방법으로 접근하여 분석한다.

가. 부가가치세 면세의 효과: 가계동향조사자료 분석 결과

가계동향조사자료를 이용하여 가계에서 부담한 부가가치세 부담을 추정해본 결과, 가구당 평균 부가가치세 부담액은 156만 3천원으로 추정되었다. 그런데 이는 소비지출 자료 중에서 과세대상에 대한 소비지출액의 1/11을 부가가치세 부담분으로 환산한 것만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이다. 즉, 직접부담분에 해당되는 값이다. 부가가치세는 면세제도를 두고 있는 만큼 부가가치세의 과세품목과 면세품목을 불문하고 중간투입분 가운데 환급(또는 매입세액공제)받지 못한 세액, 즉 기부담 세액

이 포함되어 있다. 이를 누적효과라고 한다. 누적효과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면세부문과 과세부문 모두에서 발생한다. 명목부담분 또는 직접부담분만을 고려하면 과세품에 대한 세부담률은 해당 소비지출의 1/11이고, 면세품의 경우에는 0으로 명목세율과 동일하다. 그러나 누적효과를 함께 고려하면 실효세율은 명목세율보다 최소한 같거나 더 크다.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실효세율을 추정하고 이에 기초하여 누적효과를 감안한 실효부가가치세 부담을 추정하면 가구당 평균 부가가치세 부담액이 193만 6천원으로 직접부담분보다 37만 3천원 정도 더 크다. 그 차이가 바로 누적효과이다. 누적효과는 직접부담분의 23.9%에 이를 정도로 규모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소득계층별로는 저소득층일수록 누적효과의 상대비율이 더 크다. 이는 저소득층일수록 면세품에 대한 소비 비중이 더 크기 때문에 누적효과도 더 크게 나타나기 때문이다(이상 <표 IV-16> 참조).

〈표 IV-16〉 소득계층별 부가가치세 부담 분포

(단위: 천원, %)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평균
명목세율 기준(A)	367	675	941	1,220	1,455	1,631	1,810	2,141	2,377	3,017	1,563
실효세율 기준(B)	491	864	1,172	1,498	1,804	2,009	2,253	2,628	2,927	3,719	1,936
차이(B-A)	124	189	231	278	349	378	443	487	550	702	373
증감률	33.8	28.0	24.5	22.8	24.0	23.2	24.5	22.7	23.1	23.3	23.9

주: 1. 2011년 가계동향조사자료를 2013년 가치로 환산한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저자 추정치 기준

2. 실효세율은 2009년 403개 부문 산업연관표를 분석하여 추정한 부문별 실효세율을 기준으로 작성한 부가가치세 부담 추정치임(실효세율 추정치는 성명재, 2013 참조)

〈표 IV-17〉의 경우에는 정부를 제외한 모든 재화와 용역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를 전면 과세하는 경우의 소득계층별 세부담 분포를 현행의 경우와 비교하여 추정한 결과를 보여준다. 모든 재화와 용역을 과세로 전환하면 직접부담분에 의한 부가가치세 부담액은 가구당 평균 247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현행 체계하에서의 직접부담분 156만 3천원보다 가구당 평균 90만 6천원 정도 많은 수준이다. 증가율은 58.0%에 이른다.

모든 부문의 재화와 용역을 과세로 전환하면 원칙적으로 누적효과가 사라지고 모든 부문의 실효세율은 명목세율과 동일해진다. 따라서 현재 상태에서의 누적효과인 가구당 평균 37만 3천원은 직접부담분으로 전환된다. 그러므로 과세 전환 시의 차액 90만 6천원 가운데 37만 3천원에 해당되는 부분은 누적효과의 전환에 따른 효과이고, 나머지 53만 4천원은 면세부문의 과세 전환에 따른 과세 전환 효과라고 할 수 있다.

소득계층별로는 과세 전환에 따라 세부담의 증가율이 비대칭적이다. 저소득층일수록 세부담 증가율이 높고 고소득층일수록 세부담 증가율이 작다. 이는 그만큼 현행의 면세가 생활필수품에 집중되어 있음을 시사해준다.

〈표 IV-17〉 소득계층별 부가가치세의 전면 과세 전환 시 세부담 분포 변화

(단위: 천원, %)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평균
현행	367	675	941	1,220	1,455	1,631	1,810	2,141	2,377	3,017	1,563
전환후	719	1,181	1,549	1,937	2,290	2,539	2,864	3,270	3,659	4,691	2,470
차이	352	506	608	716	835	908	1,054	1,129	1,282	1,675	906
변화율	96.1	75.0	64.6	58.7	57.4	55.6	58.2	52.7	54.0	55.5	58.0

주: 2011년 가계동향조사자료를 2013년 가치로 환산한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저자 추정치 기준

상기의 추정결과를 토대로 과세 전환에 따른 총세수 효과를 산출한 결과는 〈표 IV-18〉과 같다. 〈표 IV-18〉은 〈표 IV-17〉의 추정치에 총가구 수를 곱한 수치이다. 현행 상태에서 가계 직접부담분(누적효과 제외)에 의한 세수 총규모는 27조 8,307억원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가상적으로 모든 부문을 과세로 전환하면 가계부문에서 부담한 부가가치세

의 총세수는 43조 9,674억원으로 58.0%, 금액으로는 16조 1,370억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표 IV-18〉 소득계층별 부가가치세의 전면 과세 전환 시 가계 직접소비분
세수의 변화 기여분포

(단위: 억원, %)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전체
현행	6,527	12,013	16,757	21,729	25,905	29,040	32,227	38,111	42,313	53,707	278,307
과세 전환시	12,800	21,025	27,580	34,478	40,765	45,198	50,990	58,212	65,142	83,520	439,677
증감분	6,273	9,012	10,823	12,749	14,860	16,158	18,763	20,101	22,829	29,814	161,370
증감률	96.1	75.0	64.6	58.7	57.4	55.6	58.2	52.7	54.0	55.5	58.0

주: 2011년 가계동향조사자료를 2013년 가치로 환산한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저자 추정치 기준

앞서 논의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의 면세는 세부담의 역진성 보완 또는 정(+)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목적으로 하였다고 하여도 크게 틀리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현행 체계하에서 직접부담분만을 대상으로 하면 부가가치세 과세로 인한 소득재분배 효과는 0.42%로 부(-)의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추정된다. 만약 직접부담분뿐만 아니라 누적효과에 의한 간접부담분까지 고려한다면 실제적인 부(-)의 소득재분배 효과의 크기는 0.59%로 확대된다. 그런데 만약 현행과 달리 모든 부문에 걸쳐 부가가치세가 전면 과세되었다는 가상적인 상황이라면 부(-)의 소득재분배 효과의 크기는 1.02%로 더욱 컸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역으로 현행과 같이 면세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역진성(보다 정확히는 부(-)의 소득재분배 효과)을 0.43%p만큼 축소(완화)할 수 있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이런 추정 결과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면세는 소득재분배의 관점에서 형평에 특화하여 면세범위가 설정되었음을 반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IV-19〉 부가가치세 과세 전환 시의 소득재분배 효과의 변화

(단위: %[변화율])

기준 소득	가처분소득	부가가치세 차감후 소득		
		현행(명목세율)	현행(누적효과 포함)	과세 전환시(명목 기준)
지니계수	0.31918	0.32051	0.32106	0.32242
변화율	-	+0.42	+0.59	+1.02

주: 2011년 가계동향조사자료를 2013년 가치로 환산한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저자 추정치 기준

나. 부가가치세 면세의 효과: 산업연관분석 결과

산업연관 분석을 통해서도 부가가치세 면세의 효과를 추정할 수 있다.

2009년 귀속분 투입산출표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의 세수를 추정한 결과 〈표 IV-20〉의 결과를 얻었다.¹⁴⁾

먼저 현행 세제하에서 부가가치세의 세수는 45조 4,953억원으로 추정된다. 이 가운데 최종소비지출에 의한 세수는 40조 7,397억원이고, 나머지 4조 7,556억원은 중간투입 단계에서 환급(매입세액공제)되지 못한 누적효과에 의한 세수이다. 누적효과는 대부분 면세부문에서 나타나고 있다.

정부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부문을 가상적으로 과세로 전환하는 경우에 대한 세수는 〈표 IV-20〉의 세 번째 열에 나타난 바와 같다. 총세수는 53조 5,054억원으로 현행에 비해 약 8조원 정도 세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때 직접부담분에 의한 세수규모는 53조 4,653억원으로 세수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 차이(401억원)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면세부문으로 남겨 둬에 따른 누적효과에 의한 세수이다. 전체 세수규모를 고려할 때 그 차이(401억원)는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다고 할 수 있다.

14) 현재 이용가능한 최신의 투입산출표는 2009년 귀속분에 대한 것이다.

〈표 IV-20〉 부가가치세 면세의 효과

(단위: 억원, %)

2009년 기준	현행(A)	모두 과세 시(B)	세수증감 (B-A)	증감률
부가가치세 총세수 (A+B)	454,953	535,054	80,101	17.6
소비지출분 세수(A)	407,397	534,653	127,256	31.2
누적효과분 세수(B=B1+B2)	47,556	401	-47,155	-99.2
면세부문 누적효과(B1)	39,356	270	-39,086	-99.3
과세부문 누적효과(B2)	8,199	131	-8,068	-98.4

주: 2009년 산업연관표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저자 추정치 기준

다. 부문별 부가가치세 실효세율 및 누적효과

본항에서는 한국은행의 2009년도 403개 부문 투입산출표(산업연관표, 세세분류 기준)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의 실효세율을 추정·분석하였다.¹⁵⁾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두 부문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부문을 과세로 전환하였을 경우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의 실효세율과 누적효

15) 실효세율의 추정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박기백(2000), 박명호(2008), 정재호(2010), 성명재(2013b) 등에 잘 나타나 있다. 이 중 성명재(2013b, 200쪽 기준)에서 설명하는 실효세율 추정방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면세부문의 실효부가가치세 부담은 과세분 중간투입에 포함된 매입 부가가치세와, 면세분 중간투입에 포함된 공제받지 못한 실효부가가치세의 합으로 구성된다. 과세부문의 실효부가가치세 부담은 총수요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과, 면세분 중간투입에 포함된 공제받지 못한 실효부가가치세의 합으로 구성된다. 부문별 실효세율은 부문별 실효부담분을 부문별 총공급(또는 총수요)으로 나눈 값이다. 각 부문별 명목세율을 초기값(과세: 10%, 면세 0%)으로 설정하고 중간투입세액과 매출세액을 계산하고, 부문별 실효세부담액 및 실효세율을 재산정한다. 재산정된 실효세율을 초기값으로 놓고 상기 과정을 수렴할 때까지 반복하여 실효세율 추정치를 산출한다.

실효세율 추정공식:

- 면세부문의 실효세율 = 과세부문에서의 중간투입×과세부문 실효세율÷ 해당 부문 총공급(총수요)
- 과세부문의 실효세율 = 총공급에 대한 실효세율(명목세율)
= 면세부문으로부터의 중간투입 부가가치세 ÷ 해당 부문 총공급(총수요)

과¹⁶⁾를 추정하였다.

〈표 IV-21〉의 세 번째 열은 현행 부가가치세 체계하에서의 부가가치세 실효세율을 추정한 값을 보여주며, 네 번째 열은 가상적으로 중앙정부(372부문)와 지방정부(373부문)의 두 부문을 제외한 나머지 401개 부문을 모두 과세부문으로 설정하였을 경우의 실효세율을 추정한 결과를 보여준다.

먼저 현행 체계하에서의 실효세율 추정 결과를 살펴보자. 〈표 IV-21〉에서 보듯이, 현행 체계하에서 부가가치세 실효세율(=실제 부가세 부담액 ÷ 부가세 제외 소비지출)은, 거의 예외 없이, 명목세율이 10%인 과세부문의 경우에는 현행 체계하에서의 명목세율보다 높고, 면세인 품목의 경우에는 0%보다 크고 명목세율(10%)보다는 작은 값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면세품 가운데에서는 가금육(46부문)의 실효세율이 7.65%로 추정되어, 부가가치세의 면세에도 불구하고 실제의 실효부가가치세 부담은 매우 높은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과세품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매입세액이 공제되므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면세품에 비해 일반적으로 누적효과에 의한 실효세율의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다. 이는 면세품의 경우와 달리 대부분의 과세품의 경우에는 중간투입분이 포함하고 있는 누적효과에 의한 미환급 세부담액이 포함된 경우에 한해 누적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과세품 가운데에서는 육가공품(47부문)의 실효세율이 12.10%로 가장 높다.

다음으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제외한 나머지 401개 부문을 모두 과세하는 경우의 실효세율을 살펴보자. 모든 부문을 과세부문으로 전환하면 원칙적으로 모든 매입세액이 공제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누적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중고품¹⁷⁾ 등과

16) 본항의 두 가지 효과(과세 전환 시의 실효세율 효과와 누적효과) 중에서 실효세율 효과는 저자가 직접 추정하였고, 누적효과의 경우에는 성명재(2013b)의 분석내용 중 일부를 발췌하여 보고서의 형식에 맞춰 정리하였다.

같이 매입세액을 계산하기 어렵거나 또는 세금계산서 등의 발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누적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석이 곤란하기 때문에 아래에서는 그런 경우가 없다는 이상적인 상황하에서의 실효세율을 논의한다.

이상적인 상황하에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부문의 실효세율은 명목세율과 일치한다. 따라서 명목세율이 10%인만큼 거의 대부분의 부문에서 실효세율이 10% 추정되었다. 다만 수산어획(27부문), 철도여객운송(327부문), 철도화물운송(328부문), 항공운송(334부문) 부문 등 일부의 경우에는 실효세율이 명목세율을 조금 초과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면세부문으로 지정한 정부부문이 중간투입으로서 영향을 일부 미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런 부문에서도 실효세율과 명목세율의 차이는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다.

〈표 IV-21〉 산업부문별 실효세율

(단위: %)

번호	부문	현행	과세	번호	부문	현행	과세
1	벼	1.97	10	16	종자 및 묘목	1.88	10
2	보리	2.70	10	17	기타 비식용작물	0.02	10
3	밀	0.05	10	18	낙농	5.81	10
4	잡곡	0.08	10	19	육우	6.08	10
52	채소	3.06	10	20	양돈	7.37	10
6	과실	3.00	10	21	가금	8.45	10
7	콩류	0.63	10	22	기타축산	3.41	10
8	감자류	1.89	10	23	영림	2.11	10
9	유지작물	0.93	10	24	원목	0.63	10
10	약용작물	1.43	10	25	식용임산물	0.75	10
11	기타 식용작물	0.07	10	26	기타임산물	2.09	10
12	섬유작물	0.01	10	27	수산어획	4.13	10.05
13	잎담배	0.76	10	28	수산양식	3.94	10
14	화훼작물	3.98	10	29	농림어업서비스	4.90	10
15	천연고무	0.00	10	30	무연탄	10.06	10

17) 성명재 외(2012)의 제Ⅵ장을 참조하기 바란다.

〈표 IV-21〉의 계속

(단위: %)

번호	부문	현행	과세	번호	부문	현행	과세
31	유연탄	10.00	10	66	발효 및 합성조미료	10.09	10
32	원유	10.00	10	67	기타 조미료	10.47	10
33	천연가스(LNG)	10.00	10	68	장류	10.24	10
34	철광석	10.00	10	69	동물성 유지	11.93	10
35	동광석	10.00	10	70	식물성 유지	10.13	10
36	연꽃아연광석	10.00	10	71	과실 및 채소가공품	10.74	10
37	기타 비철금속광석	10.00	10	72	커피 및 차류	10.10	10
38	모래 및 자갈	10.03	10	73	인삼식품	10.65	10
39	쇄석	10.04	10	74	누룩 및 맥아	10.58	10
40	기타 건설용석재	10.01	10	75	두부	10.25	10
41	석회석	10.03	10	76	기타 식료품	10.66	10
42	요업원료광물	10.02	10	77	주정	10.53	10
43	원염	0.59	10	78	소주	10.05	10
44	기타 비금속광물	10.00	10	79	맥주	10.02	10
45	도축육	5.34	10	80	기타 주류	10.15	10
46	가금육	7.65	10	81	비알콜성 음료	10.08	10
47	육가공품	12.10	10	82	생수 및 얼음	10.05	10
48	우유	5.73	10	83	사료	10.10	10
49	유제품	11.30	10	84	담배	10.14	10
50	아이스크림	10.14	10	85	모사	10.66	10
51	어육 및 어묵	10.62	10	86	면사	10.01	10
52	수산물통조림	11.25	10	87	견사 및 마사	10.00	10
53	수산물냉동품	2.75	10	88	재생섬유사	10.02	10
54	수산물저장품	3.87	10	89	합성섬유사	10.01	10
55	기타 수산물가공품	11.37	10	90	재봉사 및 기타섬유사	10.03	10
56	정미	2.50	10	91	모직물	10.02	10
57	정맥	0.69	10	92	면직물	10.01	10
58	제분	10.07	10	93	견직물 및 마직물	10.02	10
59	원당	10.00	10	94	재생섬유직물	10.02	10
60	정제당	10.03	10	95	합성섬유직물	10.02	10
61	전분	10.13	10	96	기타섬유직물	10.01	10
62	당류	10.08	10	97	편조원단	10.03	10
63	빵 및 곡분과자	10.52	10	98	섬유표백 및 염색	10.22	10
64	코코아제품 및 설당과자	10.07	10	99	편직제 의류	10.03	10
65	곡수류	10.09	10	100	편직제 장신품	10.02	10

〈표 IV-21〉의 계속

(단위: %)

번호	부문	현행	과세	번호	부문	현행	과세
101	직물제 의류	10.02	10	136	등유	10.02	10
102	기타 장신품	10.02	10	137	경유	10.02	10
103	가죽의류	10.01	10	138	중유	10.00	10
104	모피의류	10.01	10	139	액화석유가스	10.01	10
105	직물제품	10.02	10	140	윤활유 제품	10.02	10
106	기타 섬유제품	10.01	10	141	기타 석유정제품	10.03	10
107	끈, 로프 및 어망	10.01	10	142	석유화학 기초제품	10.00	10
108	가죽	12.04	10	143	석유화학 중간제품	10.01	10
109	모피	11.17	10	144	석탄화합물	10.16	10
110	가방 및 핸드백	10.00	10	145	기타 기초유기화합물	10.02	10
111	가죽신발	10.01	10	146	산업용 가스	10.02	10
112	운동화 및 기타신발	10.01	10	147	기초무기화합물	10.04	10
113	기타가죽제품	10.03	10	148	합성수지	10.01	10
114	제재목	10.26	10	149	합성고무	10.02	10
115	합판	10.10	10	150	재생섬유	10.00	10
116	재생 및 강화목재	10.04	10	151	합성섬유	10.02	10
117	건축용 목제품	10.04	10	152	질소화합물	10.01	10
118	목제용기	10.02	10	153	비료	10.04	10
119	기타 목제품	10.03	10	154	농약	10.01	10
120	펄프	10.02	10	155	의약품	10.07	10
121	신문용지	10.04	10	156	화장품 및 치약	10.02	10
122	인쇄용지	10.01	10	157	비누 및 세제	10.02	10
123	기타 원지 및 판지	10.02	10	158	염료, 안료 및 유연제	10.04	10
124	골판지 및 골판지 상자	10.01	10	159	도료	10.01	10
125	종이용기	10.01	10	160	잉크	10.04	10
126	종이문구 및 사무용지	10.03	10	161	접착제 및 젤라틴	10.11	10
127	위생용 종이제품	10.02	10	162	화약 및 불꽃제품	10.09	10
128	기타 종이제품	10.01	10	163	전자기기용 기록매체	10.00	10
129	인쇄	10.02	10	164	사진용 화학제품	10.02	10
130	기록매체출판 및 복제	4.24	10	165	기타 화학제품	10.02	10
131	연탄	10.32	10	166	플라스틱 1차제품	10.02	10
132	기타 석탄제품	10.01	10	167	산업용 플라스틱제품	10.02	10
133	나프타	10.00	10	168	가정용 플라스틱제품	10.01	10
134	휘발유	10.01	10	169	타이어 및 튜브	10.02	10
135	제트유	10.01	10	170	산업용 고무제품	10.02	10

〈표 IV-21〉의 계속

(단위: %)

번호	부문	현행	과세	번호	부문	현행	과세
171	기타 고무제품	10.04	10	206	동1차제품	10.02	10
172	판유리 및 1차유리	10.01	10	207	알루미늄1차제품	10.01	10
173	산업용 유리제품	10.02	10	208	기타 비철금속1차제품	10.02	10
174	기타 유리제품	10.03	10	209	건설용 금속제품	10.02	10
175	산업용 도자기	10.02	10	210	구조물용 금속제품	10.03	10
176	가정용 도자기	10.07	10	211	설치용 금속탱크 및 저장용기	10.03	10
177	내화요업제품	10.02	10	212	금속포장용기	10.02	10
178	건설용 점토제품	10.02	10	213	공구류	10.02	10
179	시멘트	10.03	10	214	나사제품	10.01	10
180	레미콘	10.03	10	215	철선제품	10.02	10
181	콘크리트제품	10.02	10	216	부착용 금속제품	10.02	10
182	석회 및 석고제품	10.02	10	217	금속처리	10.06	10
183	석제품	10.03	10	218	가정용 금속제품	10.01	10
184	석면 및 암면제품	10.05	10	219	기타 금속제품	10.01	10
185	연마제	10.01	10	220	내연기관 및 터빈	10.04	10
186	아스팔트제품	10.01	10	221	밸브	10.03	10
187	기타 토석제품	10.02	10	222	베어링, 기어 및 전동요소	10.01	10
188	선철	10.00	10	223	산업용 운반기계	10.02	10
189	합금철	10.01	10	224	공기조절장치 및 냉장냉동장비	10.01	10
190	조강	10.02	10	225	보일러	10.01	10
191	철근 및 봉강	10.01	10	226	난방 및 조리기기	10.04	10
192	형강	10.01	10	227	펌프 및 압축기	10.01	10
193	선재 및 레조	10.01	10	228	공기 및 액체여과청정기	10.02	10
194	열간압연강재	10.01	10	229	기타 일반목적용 기계	10.01	10
195	강관(주철강관제외)	10.01	10	230	금속절삭가공기계	10.01	10
196	냉간압연강재	10.01	10	231	금속성형처리기계	10.02	10
197	주철물	10.02	10	232	농업용 기계	10.02	10
198	철강단조물	10.01	10	233	건설 및 광물처리기계	10.02	10
199	표면처리강재	10.03	10	234	음식품 가공기계	10.02	10
200	기타 철강1차제품	10.00	10	235	섬유기계	10.01	10
201	동괴	10.00	10	236	금형 및 주형	10.02	10
202	알루미늄괴	10.01	10	237	제지 및 인쇄용 기계	10.01	10
203	연 및 아연괴	10.04	10	238	반도체 제조용 기계	10.01	10
204	금은괴	10.00	10				
205	기타 비철금속괴	10.00	10				

〈표 IV-21〉의 계속

(단위: %)

번호	부문	현행	과세	번호	부문	현행	과세
239	기타 특수목적용기계	10.01	10	274	승용차	10.01	10
240	발전기 및 전동기	10.01	10	275	승합차	10.01	10
241	변압기	10.01	10	276	화물자동차	10.02	10
242	기타 전기변환장치	10.02	10	277	특장차	10.01	10
243	전기공급 및 제어장치	10.02	10	278	자동차용 엔진	10.01	10
244	전선 및 케이블	10.01	10	279	자동차부분품	10.01	10
245	전지	10.02	10	280	트레일러 및 컨테이너	10.02	10
246	전구램프 및 조명장치	10.01	10	281	강철제 선박	10.02	10
247	기타 전기장치	10.01	10	282	기타 선박	10.01	10
248	전자관	10.01	10	283	선박수리 및 부분품	10.01	10
249	디지털표시장치	10.01	10	284	철도차량	6.73	10
250	개별소자	10.01	10	285	항공기	10.02	10
251	집적회로(IC)	10.01	10	286	모터사이클	10.02	10
252	저항기 및 축전기	10.01	10	287	자전거 및 기타 운수장비	10.01	10
253	전자코일 및 변성기	10.02	10	288	목재가구	10.02	10
254	인쇄회로기판	10.02	10	289	금속가구	10.02	10
255	기타전자부품	10.01	10	290	기타가구	10.02	10
256	TV	10.01	10	291	장난감 및 오락용품	10.01	10
257	음향기기	10.01	10	292	운동 및 경기용품	10.02	10
258	기타영상·음향기기	10.01	10	293	악기	10.02	10
259	유선통신기기	10.01	10	294	문방구	10.03	10
260	무선통신단말기	10.01	10	295	귀금속 및 보석	10.00	10
261	무선통신시스템 및 방송장비	10.01	10	296	모형 및 장식용품	10.03	10
262	컴퓨터 및 주변기기	10.01	10	297	기타 제조업체품	10.05	10
263	사무용 기기	10.01	10	298	수력	10.03	10
264	가정용 냉장고 및 냉동고	10.01	10	299	화력	10.01	10
265	가정용 세탁기	10.01	10	300	원자력	10.03	10
266	가정용 전열기기	10.03	10	301	기타발전	10.01	10
267	기타 가정용 전기기기	10.04	10	302	도시가스	10.00	10
268	의료기기	3.98	10	303	증기 및 온수공급업	10.01	10
269	자동조정 및 제어기기	10.01	10	304	수도	2.58	10
270	측정 및 분석기기	10.01	10	305	주택건축	10.04	10
271	촬영기 및 영상기	10.02	10	306	비주택건축	10.04	10
272	기타 광학기기	10.04	10	307	건축보수	10.06	10
273	시계	10.00	10	308	도로시설	6.09	10

〈표 IV-21〉의 계속

(단위: %)

번호	부문	현행	과세	번호	부문	현행	과세
309	철도시설	7.32	10	344	부가통신	10.16	10
310	지하철시설	7.44	10	345	정보서비스	10.06	10
311	항만시설	10.09	10	346	지상파 방송	3.76	10
312	공항시설	10.07	10	347	유선 및 위성방송	4.48	10
313	하천사방	10.05	10	348	중앙은행 및 은행예금 취급기관	10.14	10
314	상하수도시설	10.03	10	349	비은행예금취급기관	10.18	10
315	농림수산물목	10.07	10	350	기타 금융중개기관	10.25	10
316	도시토목	10.07	10	351	생명보험	10.33	10
317	전력시설	10.03	10	352	비생명보험	10.28	10
318	통신시설	10.05	10	353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	3.21	10
319	기계 조립설치	10.06	10	354	주거서비스	10.03	10
320	기타 건설	10.08	10	355	부동산 임대 및 공급	10.12	10
321	도매	10.05	10	356	부동산 관련 서비스	10.03	10
322	소매	10.11	10	357	연구기관(국공립)	10.08	10
323	일반음식점	11.27	10	358	연구기관(비영리)	10.13	10
324	주점	10.43	10	359	연구기관(산업)	10.12	10
325	기타음식점	11.14	10	360	기업내 연구개발	10.05	10
326	숙박	10.07	10	361	법무 및 회계서비스	10.06	10
327	철도여객운송	2.54	10.41	362	시장조사 및 경영컨설팅	10.24	10
328	철도화물운송	3.23	10.49	363	광고	11.72	10
329	도로여객운송	10.01	10	364	건축공학 관련 서비스	10.08	10
330	도로화물운송	10.03	10	365	기타공학 관련 서비스	10.05	10
331	택배	10.03	10	366	소프트웨어 개발공급	10.02	10
332	연안 및 내륙 수상운송	10.02	10	367	컴퓨터 관련 서비스	10.04	10
333	외항운송	10.01	10	368	기계장비 및 용품임대	10.07	10
334	항공운송	10.12	10.08	369	청소 및 소독서비스	10.06	10
335	육상운수 보조서비스	10.05	10	370	인력공급 및 알선	10.03	10
336	수상운수 보조서비스	10.01	10	371	기타 사업서비스	10.05	10
337	항공운수 보조서비스	10.02	10	372	중앙정부	3.55	3.61
338	하역	10.08	10	373	지방정부	2.46	2.58
339	보관 및 창고	10.06	10	374	교육기관(국공립)	1.71	10
340	기타 운수 관련 서비스	10.05	10	375	교육기관(비영리)	1.43	10
341	우편	3.22	10	376	교육기관(산업)	2.81	10
342	전화	10.03	10	377	의료 및 보건(국공립)	4.26	10
343	초고속망서비스	10.05	10				

〈표 IV-21〉의 계속

(단위: %)

번호	부문	현행	과세	번호	부문	현행	과세
378	의료 및 보건(비영리)	4.42	10	391	운동 및 경기 관련 서비스	10.04	10
379	의료 및 보건(산업)	3.71	10	392	기타 오락서비스	10.11	10
380	사회복지사업(국공립)	2.95	10	393	산업 및 전문단체	10.08	10
381	사회복지사업(비영리)	2.81	10	394	기타 사회단체(비영리)	10.11	10
382	위생서비스(국공립)	3.65	10	395	자동차 수리서비스	10.04	10
383	위생서비스(산업)	3.17	10	396	기타 개인수리서비스	10.04	10
384	신문	6.42	10	397	세탁	10.12	10
385	출판	5.02	10	398	이용 및 미용	10.08	10
385	출판	5.02	10	399	가사서비스	10.02	10
386	문화서비스(국공립)	10.17	10	400	기타 개인서비스	10.09	10
387	문화서비스(기타)	10.19	10	401	사무용품	10.01	10
388	영화제작 및 배급	10.05	10	402	가계의 소비지출	10.25	10
389	영화상영	10.15	10	403	분류불명	10.63	10.36
390	연극, 음악 및 기타 예술	10.06	10				

주: 2009년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추정된 추정치
 자료: 성명재 (2013b) 〈부표 1〉

아래에서는 성명재 외(2012)와 성명재(2013b)의 연구 결과로부터 의료, 교육, 음식업, 도축육, 사회복지, 출판, 정미 등의 부문을 과세로 전환하는 경우의 누적효과를 살펴본다.

〈표 IV-22〉에 의하면 현행 세제하에서 누적효과는 총 4.7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면세부문과 과세부문의 누적효과가 각각 3.9조원과 8천억원 수준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면세부문의 누적효과가 과세부문보다 현저하게 컸다. 그 이유는, 과세부문의 경우 원칙적으로 매입세액공제가 허용되는 반면, 면세부문의 경우에는 중간투입분에 대한 매입세액공제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상기의 7개 면세품목에 대해서도 누적효과 규모를 추정하였다. 그 결과 의료와 교육부문의 누적효과가 각각 1.1조원과 1.0조원으로 상당히 크고, 도축육업, 사회복지, 출판 등이 각각 2천억원 내외, 정미부문이 1,200억원 수준으로 추정되었다.

〈표 IV-22〉 주요 부문별 누적효과(2009년 산업연관표 분석 기준)

(단위: 억원, %)

부문	403개 부문 중 부문일련번호	누적효과(비중)
의료	377~379	11,271 (23.8)
교육	374~376	9,832 (20.8)
음식업	323~325	4,515 (9.5)
도축육업	45	2,339 (4.9)
사회복지	380~381	2,241 (4.7)
출판	385	1,819 (3.8)
정미	56	1,200 (2.5)
소계	-	33,217 (70.3)
총누적효과	-	47,282 (100)
(면세부문 누적효과)		39,356 (82.8)
(과세부문 누적효과)		8,199 (17.2)

주: 1. 2009년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추정된 추정치

2. 2009년 산업연관표로부터 추정한 2009년 귀속분 부가가치세는 45조 6,298 억원이고, 현금주의 기준 2009년 부가가치세 세수규모는 46조 9,915억원으로 후자가 전자보다 1조 3,617억원 많음.

3. 추정세수(45조 6,298억원) 대비 누적효과의 비중은 10.4%

4. () 안은 총누적효과 대비 구성비

자료: 성명재 외(2012)의 제Ⅲ장

성명재(2013b)

5. 부가가치세의 면세범위 조정 시 기대효과 분석

조세정책의 일환으로 부가가치세 면세의 과세 전환 시 효과를 분석한 연구는 상당히 많다. 그 중 특히 오연천(1987), 김유찬(1995), 김승래 외(2007), 성명재 외(2012)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부가가치세의 면세범위를 조정하는 경우 소득계층별 귀착효과, 세수효과, 소득재분배 효과 등을 가계동향조사자료 분석을 통한 미시분석과, 산업연관표를 이용한 산업연관분석의 두 가지 방법으로 기대효과를 분석한다. 그리고 과세 전환을 검토할 수 있을만한 분야로 식품, 사교육, 치료목적 외 의료서비스 및 품목 등 세 분야를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금

용·보험 용역의 경우에도 과세 전환에 따른 효과를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지만, 가계 소비지출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서는 이를 분석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대상 분야로 포함하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적절한 방법론을 활용하여 금융·보험 용역에 대한 과세 전환 효과를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가. 면세범위 조정방안 1: 식품 과세 전환을 중심으로

1) 면세범위의 조정

식품에 대한 과세 전환 시의 효과 분석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과세 전환 품목을 설정한다.

가계동향조사자료: 세부지출 항목 중에서 곡물, 육류, 신선수산물, 염건수산물, 우유, 분유, 과일, 채소, 해조, 조미식품을 과세대상으로 전환하는 경우의 효과를 분석

산업연관분석(403개 부문 투입산출표 분석): 농작물(1~11부문, 56~57부문), 축산물(18~22부문), 식용임산물(25부문), 수산물(27~28부문, 53~54부문), 도축·가금(45~46부문), 우유(48부문)를 과세로 전환하는 경우의 효과를 분석

2) 가계동향조사자료 분석 결과

식품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경우 가구당 부가가치세의 평균부담액(직접소비분 기준)은 156만 3천원에서 181만 2천원으로 15.9%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소득계층별로는 1분위의 부담 증가율이 37.9%로 가장 높았으며, 2분위와 3분위가 각각 28.2%와 21.6%로 20%를 초과하였다. 부담 증가율은 소득분위가 높아지면서 빠르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는 저소득층일수록 소비지출 중 식품류에 대한 소비 비중이 더 높고, 고소득층일수록 소비 비중이 현저하게 작아지기 때문이다. 물론 식품류를 과세로 전환하는 경우 절대세부담의 증가폭은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빠르게 증가하지만 그 차이가 소득수준의 차이보다는 작기 때문에 세부담의 증가율은 반대로 나타난다.

절대세부담액의 증가수준은 고소득층을 갈수록 더 커지는 구조를 보이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소득효과로 인해 고소득층일수록 식품에 대한 소비량이 더 많아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고가식품류에 대한 수요가 더 많아진다는 점에서 소비량의 증가속도보다 식품소비지출의 증가속도가 더 빠른 것으로 추측된다.

이상의 논의에 기초해볼 때 식품류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면세는 수평적 세부담의 형평성 제고의 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표 IV-23〉 식품의 과세 전환 시 소득계층별 부가가치세 부담 변화
(가계동향조사자료 분석 기준)

(단위: 천원, %)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평균
개편전	367	675	941	1,220	1,455	1,631	1,810	2,141	2,377	3,017	1,563
개편후	506	865	1,145	1,447	1,694	1,883	2,088	2,426	2,684	3,381	1,812
차이	139	190	204	226	239	252	277	285	308	364	248
변화율	37.9	28.2	21.6	18.5	16.4	15.4	15.3	13.3	13.0	12.1	15.9

주: 1. 가계동향조사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추정결과임
 2. 과세로 전환된 식품의 항목은 곡물, 육류, 신선수산물, 염건수산물, 우유, 분유, 과일, 채소, 해조, 조미식품을 대상으로 함

〈표 IV-23〉의 추정 결과를 기초로 식품류의 과세 전환 시 부가가치세의 세수 변화효과를 추정해보았다. 그 결과 가계부문에서 부담하는 직접소비분 세수(누적효과분 세수 제외)는 27.8조원에서 32.3조원으로 약 4.4조원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생활필수품으로서 식품류의 비중이 매우 크기 때문에 과세 전환 시 세수 증가효과도 매우 크다.

〈표 IV-24〉 식품의 과세 전환 시 소득계층별 부가가치세 세수 증감 변화
(직접소비분, 가계동향조사자료 분석 기준)

(단위: 억원, %)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전체
현행	6,527	12,013	16,757	21,729	25,905	29,040	32,227	38,111	42,313	53,707	278,307
식품 과세 전환시	9,000	15,394	20,380	25,755	30,162	33,521	37,165	43,189	47,791	60,185	322,519
차이	2,473	3,381	3,623	4,027	4,258	4,480	4,938	5,078	5,478	6,478	44,213
증감률	37.9	28.2	21.6	18.5	16.4	15.4	15.3	13.3	13.0	12.1	15.9

- 주: 1. 가계동향조사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추정결과임
 2. 과세로 전환된 식품의 항목은 곡물, 육류, 신선수산물, 염건수산물, 우유, 분유, 과일, 채소, 해조, 조미식품을 대상으로 함
 3. 가구당 평균 세부담액을 총가구 수로 곱하여 산출함

〈표 IV-23〉에서 보았듯이 식품류를 과세로 전환하는 경우 절대부담액은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더 커지지만, 세부담 증가율은 저소득층일수록 더 크다. 이는 소득수준에 대비한 체감세부담은 저소득층일수록 더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부(-)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애초에 (미가공)식품류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세한 주요 요인 중 하나가 부가가치세 부담의 역진성 보완을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의 개선에 있었던 만큼, 식품류를 과세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반대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가계동향조사자료를 이용하여 세전·세후소득 지니계수의 변화율의 변동을 분석한 결과, 식품류를 과세로 전환하면 지니계수의 변화율이 +0.42%에서 +0.75%로 0.33%p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식품류를 과세로 전환함에 따라 가치분소득 기준 지니계수 대비 부가가치세 부담의 차감 후 소득 기준 지니계수가 추가적으로 0.33%p 만큼 더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가가치세의 세수가 단일세목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세수 비중이 높은 세목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그 정도의 소득재분배 효과는 절뻗값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확대시킨다는 점에서는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정책적으로는 부가가치세가 지니는 부(-)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완화하기 위해 상당히 큰 규모의 세수감면이 소요(〈표 IV-24〉에 의하면 2009년 기준 최소 4.4조원, 직접소비분 기준)된다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 즉, 소득재분배 효과의 개선 정도에 비해 이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의 규모가 상당히 큰 만큼, 만약 다른 방법으로 동일 수준 또는 그보다 더 큰 소득재분배 효과를 나타내면서도 보다 적은 비용이 소요되는 정책이 있다면 해당 정책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심층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 한 가지 조심스러운 점은 식품류의 과세 전환 시 저소득층에서의 순효과가 부(-)의 값을 가지는 범위가 상당히 넓다면 조세저항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그런 방향으로의 개편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표 IV-25〉 식품의 과세 전환 시 소득재분배 효과의 변화(가계동향조사자료 분석 기준)

(단위: %[변화율])

기준 소득	세전소득(가처분소득)	세후소득(현행)	세후소득(식품 과세 전환시)
지니계수	0.31918	0.32051	0.32158
변화율	-	+0.42	+0.75

- 주: 1. 가계동향조사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추정결과임
 2. 과세로 전환된 식품의 항목은 곡물, 육류, 신선수산물, 염건수산물, 우유, 분유, 과일, 채소, 해조, 조미식품을 대상으로 함

3) 산업연관표 분석 결과

상기의 가계동향조사자료를 이용한 분석은, 소득계층별 귀착분석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면세-과세 전환 시의 누적효과와 가계의 부문에서의 세수효과를 제대로 포착하기 어렵다는 한계점이 있다.

〈표 IV-26〉은 현행 세제하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고 있는 (미가공)식품류를 과세로 전환하는 경우 예상되는 실효세율의 변화효과를 추정하였다. 면세부문으로 있을 때에 비해 명목세율 대비 실효세율과의

차이가 크게 줄어든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앞서 설명하였듯이 과세로 전환됨에 따라 공제되지 않았던 매입세액이 공제됨에 따라 누적효과의 크기가 전반적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세 전환에 따라 해당 부문에서의 누적효과가 줄어들었다고 해서 경제 전체적으로 누적효과가 줄어들었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과세로 전환됨에 따라 이들 부문에서 다른 면세부문으로 중간투입되는 투입분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환급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만약 그런 효과가 위의 효과를 압도한다면 경제 전체적으로는 누적효과가 더 커질 개연성도 있기 때문이다. 물론 <표 IV-26>에서 보듯이 식품류를 과세로 전환함에 따라 경제 전체의 누적효과도 다소 감소하였다.

<표 IV-26> 식품의 과세 전환 시 실효세율 효과(산업연관분석 결과)

(단위: %)

일련번호	부문	실효세율(개편전)	실효세율(개편후)
1	벼	1.96530	10.29117
2	보리	2.70322	10.20928
3	밀	0.04820	10.00682
4	잡곡	0.08284	10.00325
5	채소	3.06454	10.28208
6	과실	3.00221	10.07894
7	콩류	0.62891	10.05625
8	감자류	1.88617	10.09654
9	유지작물	0.93176	10.06592
10	약용작물	1.42664	10.02662
11	기타 식용작물	0.06587	10.00247
18	낙농	5.81201	10.12973
19	육우	6.07777	10.07910
20	양돈	7.36760	10.09457
21	가금	8.44873	10.04236
22	기타축산	3.40975	10.08811
25	식용임산물	0.75013	10.31961
27	수산어획	4.12797	10.11546
28	수산양식	3.94388	10.25410
45	도축육	5.33590	10.00074
46	가금육	7.64923	10.02919
48	우유	5.73067	10.01081
53	수산물냉동품	2.74841	10.00912
54	수산물저장품	3.87434	10.00870
56	정미	2.50392	10.00304
57	정맥	0.69153	10.00091

주: 403개 부문 중 1~11, 18~22, 25, 27~28, 45~46, 48, 53~54, 56~57부문을 과세 전환한 경우의 효과를 분석한 것임

〈표 IV-27〉은 식품류를 과세로 전환하는 경우의 세수효과를 추정하였다. 2009년 현재 산업연관표에 근거한 부가가치세의 세수는 45조 4,953억원으로 추정된다. 식품류를 모두 과세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세수가 46조 7,246억원으로 2.7%(1조 2,293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세부 항목별로는 최종소비지출로부터 약 2.8조원의 세수가 증가하지만 누적효과가 약 1.6조원 감소하면서 순계로는 세수가 1.2조원 증가하는 데 그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누적효과 가운데 과세부문의 누적효과 감소율이 64.5%에 이르러 면세부문의 누적효과 감소율 26.1%보다 현저하게 높게 추정되었다. 이는 전반적으로 과세부문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면서 기존의 면세중간투입분에 포함되어 있던 미환급세부담(누적효과) 규모가 감소한 효과가 훨씬 더 크게 작용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표 IV-27〉 식품의 과세 전환 시 세수효과(2009년, 산업연관분석 기준)

(단위: 억원, %)

	현행 세수	과세 전환 시 세수	차이	변화율
총세수 (A+B)	454,953	467,246	12,293	2.7
소비지출분 (A)	407,397	435,247	27,850	6.8
누적효과분 (B=B1+B2)	47,556	31,999	-15,557	-32.7
면세부문 누적효과(B1)	39,356	29,087	-10,269	-26.1
과세부문 누적효과(B2)	8,199	2,912	-5,287	-64.5

주: 403개 부문 중 1~11, 18~22, 25, 27~28, 45~46, 48, 53~54, 56~57부문을 과세 전환한 경우의 효과를 분석한 것임

산업연관분석에 기초한 세수 증가율은 2.7%에 그쳤지만, 미시분석을 통해 추정한 세수 증가율 15.9%와는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 이는 미시분석의 경우 누적효과의 감소효과를 포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미시분석에서는 가계부문에서만 세수효과를 고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가계부문에서는 식품류에 대한 소비지출 의존도가 가계 외 부문에

비해 현저히 높다. 따라서 가계부문에서의 세수증가효과는 가계의 부문보다 훨씬 더 크게 나타난다. 그러므로 이러한 두 가지 요인에 따라 가계동향조사자료 분석 결과와 산업연관분석 결과에 의한 세수효과 추정 결과는 큰 차이를 가진다.

그런데 두 가지 방법에 의한 세수효과 추정은, 분석대상의 범위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어느 하나가 옳고 다른 하나가 그르다고 판단하는 것은 곤란하다. 왜냐하면 미시분석의 경우에는 분석대상이 가계의 직접 소비분 세수효과에 초점에 맞춰진 반면, 산업연관분석은 모든 부문을 통틀어 전체적인 부가가치세의 세수효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나. 면세범위 조정방안 2: 사교육 과세 전환을 중심으로

1) 면세범위의 조정

교육서비스의 경우 사교육 부분을 과세로 전환하는 경우의 기대효과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과세 전환 품목을 설정한다.

가계동향조사자료: 세부지출 항목 중에서 보습학원과 기타 학원서비스를 과세대상으로 전환하는 경우의 효과를 분석¹⁸⁾

산업연관분석(403개 부문 투입산출표 분석): 교육기관(산업)(376 부문)을 과세로 전환하는 경우의 효과를 분석

2) 가계동향조사자료 분석 결과

사교육서비스를 대상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경우 가구당 부가

18) 성인들을 주 대상으로 하는 학원서비스(예: 자동차운전학원 등)의 경우에는 이미 과세중이다.

가치세의 평균부담액(직접소비분 기준)은 156만 3천원에서 175만 2천 원으로 12.1%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소득계층별로는 1분위의 부담 증가율이 2.7%로 가장 낮으며, 7~10분위가 13.7~15.8%로 가장 높게 추정되었다. 저소득층에서 세부담의 증가가 작은 이유는, 저소득 층의 경우 노인가구의 비중이 높고 이들 가구의 경우 미성년자녀보다는 성년자녀의 구성비가 월등히 높아 사교육 지출액 및 지출비중이 그만큼 작기 때문이다.

소득계층별로도 사교육에 대한 과세 전환 시의 세부담 증가율이 고 소득층으로 갈수록 더 커지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소득계층별 사 교육비 지출구조가 소득에 대해 탄력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시사 한다. 따라서 사교육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 전환은, 비록 절대수준 은 작을지 모르지만, 최소한 소득재분배 효과의 제고 차원에서는 긍정 적인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표 IV-28〉 사교육의 과세 전환 시 소득계층별 부가가치세 부담 변화
(가계동향조사자료 분석 기준)

(단위: 천원, %)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평균
개편전	367	675	941	1,220	1,455	1,631	1,810	2,141	2,377	3,017	1,563
개편후	376	700	993	1,311	1,615	1,810	2,078	2,433	2,715	3,493	1,752
차이	10	25	52	91	160	179	268	292	338	476	189
변화율	2.7	3.8	5.6	7.5	11.0	11.0	14.8	13.7	14.2	15.8	12.1

주: 1. 가계동향조사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추정결과임
2. 과세로 전환된 교육서비스 항목은 보습학원과 기타학원서비스를 대상으로 함

〈표 IV-28〉의 추정 결과를 기초로 사교육서비스를 과세로 전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세수 변화효과를 추정해보았다. 그 결과 가계부문에서 부담하는 직접소비분 세수(누적효과분 세수 제외)는 27.8조원에서 31.2조원으로 약 3.4조원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사교육 시장이 상당히 넓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실제로 사교육의 과세 전환 시

세수 증가규모도 상당히 큰 것으로 추정되었다.

〈표 IV-29〉 사교육의 과세 전환 시 소득계층별 부가가치세 세수 증감
변화(직접소비분, 가계동향조사자료 분석 기준)

(단위: 억원, %)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전체
현행	6,527	12,013	16,757	21,729	25,905	29,040	32,227	38,111	42,313	53,707	278,307
과세 전환시	6,701	12,464	17,687	23,349	28,760	32,220	36,997	43,312	48,331	62,187	311,983
차이	174	451	930	1,620	2,855	3,180	4,770	5,201	6,017	8,480	33,676
증감률	2.7	3.8	5.6	7.5	11.0	11.0	14.8	13.7	14.2	15.8	12.1

- 주: 1. 가계동향조사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추정 결과임
2. 과세로 전환된 교육서비스 항목은 보습학원과 기타학원서비스를 대상으로 함
3. 가구당 평균 세부담액을 총가구 수로 곱하여 산출함

〈표 IV-29〉에서 보았듯이 사교육서비스를 과세로 전환하는 경우 세부담 증가율은 고소득층일수록 더 크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소득수준에 대비한 체감세부담이 고소득층일수록 더 커진다는 것을 의미하여 정(+)¹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음을 시사한다.

가계동향조사자료를 이용하여 세전·세후소득 지니계수의 변화율의 변동을 분석한 결과, 사교육을 과세로 전환하면 지니계수의 변화율이 +0.42%에서 +0.27%로 0.15%p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사교육을 과세로 전환함에 따라 가치분소득 기준 지니계수 대비 부가가치세 부담의 차감 후 소득 기준 지니계수가 그만큼 하락하여 부가가치세가 지닌 부(-) 소득재분배 효과를 조금이나마 완화시켜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에서 보았듯이 식품을 과세로 전환하는 경우 2009년 기준으로 최소 4.4조원의 세수 증가를 기대하면서 부(-)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다소 확대되는 결과를 보인 반면, 사교육을 과세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세수 증가규모가 3.4조원으로 식품의 경우보다는 작지만 세후소득 기준 지니계수를 낮추는 효과를 나타내어 소득재분배의 관점에서는 후자가 우월

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의 면세항목 중 일부를 과세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대체로 세수 측면에서는 긍정적 효과(즉, 세수 증가효과)를 나타내지만 소득재분배 효과의 측면에서는 반대의 결과를 나타낼 수도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V-30〉 사교육의 과세 전환 시 소득재분배 효과의 변화
(가계동향조사자료 분석 기준)

(단위: %[변화율])

기준 소득	세전소득 (가처분소득)	세후소득(현행)	세후소득(사교육 과세 전환시)
지니계수	0.31918	0.32051	0.32000
변화율	-	+0.42	+0.27

- 주: 1. 가계동향조사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추정결과임
2. 과세로 전환된 교육서비스 항목은 보습학원과 기타학원서비스를 대상으로 함

3) 산업연관표 분석 결과

〈표 IV-31〉은 현행 세제하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고 있는 사교육 서비스(주로 산업 교육기관)를 과세로 전환하는 경우 예상되는 실효세율의 변화효과를 추정하였다. 식품의 경우에서 본 바와 마찬가지로 사교육의 경우에도 면세부문으로 있을 때에 비해 과세로 전환하는 경우 명목세율 대비 실효세율과의 차이가 크게 줄어든 것을 볼 수 있다. 앞서 설명하였듯이 과세로 전환됨에 따라 공제되지 않았던 매입세액이 공제됨에 따라 누적효과의 크기가 전반적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표 IV-31〉 식품의 과세 전환 시 실효세율 효과
(산업연관분석 결과)

(단위: %)

일련번호	부문	실효세율(개편전)	실효세율(개편후)
376	교육기관(산업)	2.47367	10.07523

- 주: 403개 부문 중 376부문을 과세 전환한 경우의 효과를 분석한 것임

〈표 IV-32〉는 사교육을 과세로 전환하는 경우의 세수효과를 추정하였다. 사교육을 과세로 전환하는 경우 세수는 2009년 산업연관표를 기준으로 하였을 경우 45조 4,953억원에서 46조 9,199억원으로 3.1%(1조 4,246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세부 항목별로는 최종소비지출로부터 약 2.0조원의 세수가 증가하지만 누적효과가 약 5천억원 정도 감소하면서 순세수는 1.4조원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누적효과 가운데 과세부문의 누적효과는 오히려 113억원 증가하지만 면세부문에서 대부분 누적효과가 감소하면서 과세 전환에 따른 세수 증가 효과를 반감시키고 있다.

〈표 IV-32〉 사교육의 과세 전환 시 세수효과
(2009년, 산업연관분석 기준)

(단위: 억원, %)

	현행 세수	과세 전환 시 세수	차이	변화율
총세수 (A+B)	454,953	469,199	14,246	3.1
소비지출분 (A)	407,397	427,025	19,628	4.8
누적효과분 (B=B1+B2)	47,556	42,173	-5,383	-11.3
면세부문 누적효과(B1)	39,356	33,861	-5,495	-14.0
과세부문 누적효과(B2)	8,199	8,312	113	1.4

주: 403개 부문 중 376부문을 과세 전환한 경우의 효과를 분석한 것임

산업연관분석에 기초한 세수 증가율은 3.1%에 그쳤지만, 미시분석을 통해 추정한 세수 증가율 12.1%와 큰 차이를 보인다. 이는 앞서 식품류에 대한 과세 전환방안을 설명할 때, 미시분석의 경우 누적효과의 감소효과를 포착할 수 없기 때문에 상당히 큰 세수 예측오차를 나타낼 수 있다고 하였는데 사교육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의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바로 이런 차이로 인해 미시분석에서는 식품류의 과세 전환 시 세수 증가효과가 사교육의 경우보다 조금 더 컸지만 산업연관분석의 경우에는 세수 증가효과의 크기가 두 방안 사이에 역전된 결과를 나타

내는 데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다. 면세범위 조정방안 3: 치료목적 외 의료서비스 및 용품 과세 전환을 중심으로

1) 면세범위의 조정

의료서비스의 경우 치료목적 외 미용목적 등 기타 목적의 의료서비스와 의료·보건용품, 치과서비스¹⁹⁾ 등을 과세로 전환하는 경우의 기대효과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과세 전환 품목을 설정한다.

가계동향조사자료: 세부지출 항목 중에서 보건·의료용품 및 기구, 치과서비스, 기타의료서비스를 과세대상으로 전환하는 경우의 효과를 분석

산업연관분석(403개 부문 투입산출표 분석): 의료기관(산업)(379 부문)을 과세로 전환하는 경우의 효과를 분석

2) 가계동향조사자료 분석 결과

치료목적 외 의료서비스와 보건·의료용품 및 기구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경우 가구당 부가가치세의 평균부담액(직접소비분 기준)은 156만 3천원에서 160만 8천원으로 2.9%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소득계층별로는 1분위의 부담 증가율이 4.7%로 가장 높으며, 상위 30% 가구(8~10분위)의 경우에는 평균 증가율보다 낮은 2.6~2.7% 정도 세부담이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물론 세부담 증가율

19) 치과서비스의 경우 치료 목적의 의료서비스도 있으나 미용 목적 등의 치아 교정서비스 등이 구분되지 않아 전체를 과세로 전환하는 경우를 분석하였다.

은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낮아지지만 절대세부담 증가액은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커지는 구조를 보여 식품류의 경우와 유사한 형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표 IV-33〉 치료목적 외 의료서비스의 과세 전환 시 소득계층별 부가가치세 부담 변화(가계동향조사자료 분석 기준)

(단위: 천원, %)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평균
개편전	367	675	941	1,220	1,455	1,631	1,810	2,141	2,377	3,017	1,563
개편후	384	698	969	1,256	1,491	1,676	1,876	2,197	2,438	3,097	1,608
차이	17	23	28	35	36	45	66	56	61	80	45
변화율	4.7	3.4	3.0	2.9	2.5	2.8	3.6	2.6	2.6	2.7	2.9

주: 1. 가계동향조사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추정 결과임

2. 과세로 전환된 의료서비스 항목은 의료·보건용품 및 기구, 치과서비스, 기타 의료서비스를 대상으로 함

치료목적 외 의료서비스 등을 과세로 전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총세수 변화효과를 추정해보았다. 그 결과 가계부문에서 부담하는 직접소비분 세수(누적효과분 세수 제외)는 27.8조원에서 28.6조원으로 약 8천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식품류나 사교육을 과세로 전환하는 경우에 비해 세수 증가규모는 상당히 작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표 IV-34〉 치료목적 외 의료서비스의 과세 전환 시 소득계층별 부가가치세 세수 증감 변화(직접소비분, 가계동향조사자료 분석 기준)

(단위: 억원, %)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전체
현행	6,527	12,013	16,757	21,729	25,905	29,040	32,227	38,111	42,313	53,707	278,307
과세 전환시	6,836	12,424	17,252	22,355	26,553	29,845	33,394	39,113	43,406	55,129	286,286
차이	309	411	495	626	648	805	1,167	1,002	1,093	1,422	7,979
증감률	4.7	3.4	3.0	2.9	2.5	2.8	3.6	2.6	2.6	2.7	2.9

주: 1. 가계동향조사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추정 결과임

2. 과세로 전환된 의료서비스의 항목은 의료·보건용품 및 기구, 치과서비스, 기타 의료서비스를 대상으로 함

3. 가구당 평균 세부담액을 총가구 수로 곱하여 산출함

〈표 IV-23〉의 식품류와, 〈표 IV-33〉에서 보았듯이 치료목적 외 의료서비스 등을 과세로 전환하는 경우 절대세부담의 증가액은 고소득층일수록 더 크지만, 세부담 증가율은 저소득층일수록 더 크다. 이는 소득 대비 체감세부담률은 저소득층일수록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하여 소득재분배 효과를 저하, 즉 세후소득 기준 지니계수를 상승시킬 수 있을 시사한다. 의료서비스 면세 목적 중 하나가 세부담의 역진성 보완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반대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가계동향조사자료를 이용하여 세전·세후소득 지니계수의 변화율의 변동을 분석한 결과, 치료목적 외 의료서비스를 과세로 전환하면 지니계수의 변화율이 +0.42%에서 +0.44%로 미미하게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치료목적 외 의료서비스 등을 과세로 전환함에 따라 소득재분배 효과 측면에서 부(-)의 효과를 확대시키지만 그 수준은 상당히 작음을 시사한다. 이는 치료목적 외 의료서비스 등에 대한 지출구조가 역진적인 분포구조를 지녔기 때문이지만, 역진적인 정도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과세로 전환하더라도 증가되는 세부담(세수) 규모가 식품류 등에 비해 작기 때문에 부(-)의 소득재분배 효과의 확대 효과도 작다는 점을 유추할 수 있다.

〈표 IV-35〉 치료목적 외 의료서비스의 전환 시 소득재분배 효과의 변화
(가계동향조사자료 분석 기준)

(단위: %[변화율])

기준 소득	세전소득 (가처분소득)	세후소득(현행)	세후소득(치료목적외 의료서비스 과세 전환시)
지니계수	0.31918	0.32051	0.32059
변화율	-	+0.42	+0.44

- 주: 1. 가계동향조사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추정 결과임
2. 과세로 전환된 의료서비스 항목은 의료·보건용품 및 기구, 치과서비스, 기타의 료서비스를 대상으로 함

3) 산업연관표 분석 결과

치료목적 외 의료서비스를 과세로 전환하는 경우(403부문 산업연관표 상에서는 379부문(의료기관, 산업부문)) 예상되는 실효세율의 변화 효과를 추정해본 결과, 현행의 경우에는 실효세율이 3.711%였는데 과세로 전환하면 10.117%로 변화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여타 품목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명목세율 대비 실효세율의 차이가 면세에서 과세로 전환(0→10%)하는 경우 크게 줄어든 것을 볼 수 있다. 즉, 실효세율과 명목세율 사이의 차이가 약 3.7%p에서 0.1%p로 크게 축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과세 전환 시에 누적효과가 크게 변화하였기 때문이다.

〈표 IV-36〉 치료목적 외 의료서비스의 과세 전환 시 실효세율 효과
(산업연관분석 결과)

(단위: %)

일련번호	부문	실효세율(개편전)	실효세율(개편후)
379	의료기관(산업)	3.71103	10.11746

주: 403개 부문 중 379부문을 과세 전환한 경우의 효과를 분석한 것임

〈표 IV-37〉은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치료목적 외 의료서비스(보다 정확히는 산업 의료기관, 403개 부문 중 379부문)을 과세로 전환하는 경우의 세수효과 추정치를 나타낸다. 2009년 현재 산업연관표에 근거한 부가가치세의 세수는 45조 4,953억원으로 추정되는데 산업 의료기관(379부문)을 과세로 전환하면 세수는 46조 7,544억원으로 2.8%(1조 2,591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세부 항목별로는 최종소비지출로부터 약 1.9조원의 세수가 증가하지만 누적효과가 약 1.4조원 감소하면서 순계로는 세수가 1.26조원 증가하는 데 그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누적효과 가운데 과세부문의 누적효과 감소는 매우 미미한 반면 거의 대부분의 누적효과 감소는 면세부문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산업연관분석에 기초한 세수 증가율은 2.8%로 작게 나타났으며, 미시분석을 통해 추정된 세수 증가율도 2.9%로 별반 다르지 않다. 추정 방법이 완전히 다른 두 가지 추정방법을 통해 추정된 세수효과 추정 결과가, 분석방법의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차이가 크지 않은 것은 양자의 차이가 별로 없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원천의 차이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 우연하게 세수효과가 비슷하게 나타난 결과라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전체적으로 보아 치료목적 외 의료서비스를 과세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식품류나 사교육서비스의 과세 전환 경우보다 세수효과가 작다.

〈표 IV-37〉 치료목적 외 의료서비스의 과세 전환 시 세수효과
(2009년, 산업연관분석 기준)

(단위: 억원, %)

	현행 세수	과세 전환시 세수	차이	변화율
총세수 (A+B)	454,953	467,544	12,591	2.8
소비지출분 (A)	407,397	426,840	19,443	4.8
누적효과분 (B=B1+B2)	47,556	40,704	-6,852	-14.4
면세부문 누적효과(B1)	39,356	32,305	-7,051	-17.9
과세부문 누적효과(B2)	8,199	8,399	200	2.4

주: 403개 부문 중 379부문을 과세 전환한 경우의 효과를 분석한 것임

라. 기대효과 요약 및 시사점

식품류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 전환은, 1.2조원(2009년 산업연관분석 기준) 정도의 세수 증가를 가져다줄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에 가계동향조사자료 분석에 의하면 식품류에 대한 과세 전환은 부(-)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다소 확대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식품류에 대한 과세 전환은 세수 증가와 소득재분배 기능 약화라는 상충적인 효과를 지닌 것으로 분석된다.

사교육을 과세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세부담의 절대액 및 세부담 증

가을 모두 고소득층일수록 더 크게 나타나 정(+)¹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나타내어, 부가가치세 부담의 역진구조를 다소 개선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분석방법에 따라 세수효과가 1.4조원(산업연관분석) 또는 3.4조원(미시분석, 누적효과를 제외)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누적 효과 추정이 불가능한 미시분석의 경우보다는 산업연관분석의 세수효과가 보다 정확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사교육의 경우에는 소득재분배 측면보다는 인적자본의 육성·축적 등의 차원에서 부가가치세를 면세해온 측면이 있기 때문에 소득재분배의 관점에서는 오히려 면세가 부정적인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인적자본의 축적에 크게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교육 과열현상을 완화할 수 있다면 사교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로 전환할 때 세수 증가와 함께 정(+)¹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치료목적 외 의료서비스의 경우 분석에 사용하는 자료가 정확하게 이를 구분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정확한 기대효과를 보여주지 못하지만, 대략적인 분석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다소 세수를 증가시키는 효과(미시분석 8천억원, 산업연관분석 1.3조원)가 있는 반면 소득재분배 효과는 매우 작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치료목적 외 의료서비스 등을 과세로 전환하는 경우 세후 지니계수는 추가적으로 0.02%p 확대되어 미미하지만 부(-)¹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확대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상기의 분석에서 치료목적 외 의료서비스, 특히 그 가운데 미용목적 등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자료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오차가 발생하였다. 가상적이지만, 만약 미용목적의 의료서비스만을 구별하여 과세 전환할 경우의 효과를 분석한다면, 상기 지출수요가 상당히 크게 소득탄력적일 것임을 감안할 때 정(+)¹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나타낼 가능성이 매우 높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래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면세는 주로 생활필수품을 위주로 설정되어 부가가치세 부담의 역진성 보완 또는 소득재분배 효과의 개선을 주된 목적 중 하나로 인식하였고 또 실제로 그런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여 왔다는 것이 학계의 정설이다. 바로 이런 점에서 보듯이 식품류의

과세 전환은 세수를 증가시키지만, 면세의 기본 목적이었던 소득재분배 효과의 개선효과는 약화시키는 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유럽연합 국가의 최근 동향을 보면 부가가치세의 면세범위를 축소하거나, 세율을 상향조정하는 경향이 빈번하다. 이는 그들 국가에서 부가가치세 부담이 역진적이어서 부(-)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나타내지만, 재정건전화 또는 복지재정소요 충당을 위한 자원 마련 등의 차원에서 부가가치세의 과세를 강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보다 적극적인 의미에서 본다면, 비록 부가가치세 증세를 통해 부가가치세 과세를 통한 부(-)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더 커지더라도, 증가된 재정수입을 기초로, 정(+)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더 큰 방식으로 재정지출정책을 고안하면 소득재분배의 한계순효과는 정(+)의 값을 보일 수 있다는 점이 그 배경에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소득재분배의 관점에서 정부정책의 효과를 평가함에 있어 조세정책과 재정정책을 분리하여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유럽의 복지 선진국에서는 이 두 정책 부문을 분리하지 않고 결합하여, 정책 조합의 순효과를 기준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세제를 담당하는 정책당국과 예산을 담당하는 정책당국이 유기적으로 협력한다면 정책 조합의 순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V. 결 론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모든 재화 및 용역의 거래를 과세대상으로 삼는다. 다양한 종류의 거래를 과세대상으로 정의하기 때문에, 만약 부가가치세제도가 거래 품목이나 거래가 갖는 특성의 사소한 차이에 의해 달라진다면, 제도를 효과적이고 공정하게 운영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부가가치세제도는 거래 품목이나 거래 특성의 작은 차이에 의해 달라지지 않고 가능한 단순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부가가치세제도가 단순하게 설계되어 효과적이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으려면 다음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첫째, 부가가치세제도가 단일세율 체계로 운영되어야 한다. 만약 부가가치세제도가 표준세율 이외에 경감세율이 있는 복수세율 체계로 운영된다면, 여러 경제부문으로부터 경감세율을 적용받도록 해달라는 청원이 더 많이 들어올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미 경감세율을 적용받는 부문이 있다면 그러한 조세경감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다. 부가가치세제도 단순화 개정안을 추진하였다가 실패한 스위스의 사례는 복수세율 체계가 한 번 자리를 잡으면 그것을 되돌리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보여준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뉴질랜드, 이스라엘, 덴마크 등에서는 단일세율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들 나라에서는 세율에 비해 부가가치세 세수율이 높게 나타난다. 즉 세수율 측면에서 볼 때 부가가치세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부가가치세 단일세율 체계가 세수율을 높이고 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부가가치세 면세 및 영세율 등의 감면제도가 최소한의 범위에서 유지되어야 한다. 부가가치세 영세율제도는 수출하는 재화 및 용역

의 거래에만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 그리고 면세제도는 사회적으로 형평성을 고려하거나 소비를 장려할 필요성이 있는 부문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면세제도를 다른 나라와 비교해보면, 식품, 의료용역, 의약품, 농업용 석유류 등에 대한 면세가 두드러진다. 이들 부문에 대한 면세와 금융, 사교육 등에 대한 면세를 포함하여 현행 부가가치세제도하에서의 면세가 과연 적절한 범위에서 유지되고 있는 것인지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본 보고서에서는, 분석모형이 허락하는 수준에서 제한적이거나, 식품, 사교육, 의료용역 등에 대한 면세를 과세로 전환하는 경우의 소득재분배 효과 및 세수 증감효과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외에 다른 면세부문을 과세로 전환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고려하여 균형재정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가능한 최소한의 수준에서 부가가치세율이 설정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부가가치세는 세수 기여도가 가장 큰 세목이고, 이러한 현상은 부가가치세제도가 있는 다른 나라에서도 비슷하게 관찰된다. 이는 아마도 부가가치세가 다른 세목에 비해 전반적으로 경제활동의 효율성을 왜곡하는 정도가 적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수출부문의 경우 영세율제도에 의해 세금이 완전히 환급되기 때문에 수출국 내에서는 세부담에 의한 경제활동 왜곡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지만 부가가치세는 과세대상이 광범위하고, 저소득층도 소비 수준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하므로, 정부가 세율을 인상하려 할 경우,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정부의 지출이 증가하여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부가가치세율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면, 국민들에게 관련 정보를 올바르게 알리고, 세율 인상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2005년 연방 선거 공약으로 세율을 인상한 독일의 사례는 세율 인상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보여준다.

한편 본 보고서에서 다루지 못하였지만 앞으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제도를 개선해 나아가는 데 있어 연구가 필요한 주제가 많이 남아

있다. 디지털경제 시대에 적합하도록 부가가치세제도를 개선하는 방향에 대해 연구하는 것도 중요한 주제 중 하나이다. 국제적으로 자본, 인력, 기술이 활발히 이동하고, 이로 인해 국제 거래 및 디지털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사업장을 기반으로 과세하는 현행 세제하에서 부가가치세 부담을 회피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 즉, 우리나라의 거주자가 아닌 사업자가 우리나라의 개인에게 무형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우리나라에서 최종적으로 소비가 이루어지는 것이 명백하다고 하더라도, 공급자가 우리나라에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못하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법률, 회계, 컨설팅 서비스 등을 비롯한 전문 용역이나 다운로드 방식으로 거래하는 전자도서, 컴퓨터 소프트웨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영화·음악 파일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 공급자가 사업장을 해외로 이전하거나 국외 사업자를 통해 국내 소비자와 거래한다면, 부가가치세 부담을 회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국내에 사업장을 설치하거나 국내에 이미 있는 사업장을 국외로 이전하지 않은 사업자들은 소비자로부터 상품가격에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받아서 납부해야 하므로 그렇지 않은 경쟁 사업자들에 비해 가격 경쟁력을 잃을 것이다. 이는 시장에서의 공정경쟁 원칙에도 어긋나며 사회적으로도 과세 형평성을 해치는 사례이다. 특히 디지털 거래는 사업장 이전이 쉽기 때문에 공급자가 사업장을 해외로 이전하여 부가가치세를 회피하는 유인을 더 많이 제공할 것이다.

유럽연합, 노르웨이, 호주의 경우, 디지털 국제 거래에 참여하는 비거주자인 공급자가 특정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거나 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급자 등록을 의무화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한다. 최근 들어 스마트폰의 확산과 함께 더욱 활발해지고 있는 디지털 국제 거래에 대해 소비자 과세 원칙을 적용하고 이를 통해 과세 형평성을 높이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디지털 경제시대에 적합하도록 부가가치세제도를 개선해나가야 한다.

참고문헌

- 김승래 · 박명호 · 홍범교,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제 정책과제의 경제적 분석: 과세베이스 확대를 중심으로』, 연구보고서 07-14, 한국조세연구원, 2007.
- 김유찬,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면세범위 설정의 문제점과 개편방향』, 정책보고서, 한국조세연구원, 1995.
- 박기백, 「산업연관표를 이용한 부가가치세 면세의 감면 규모 추정」, 『재정연구』, 제6권 제2호, 2000, pp. 1~29.
- 박명호, 「유효세율을 이용한 부가가치세 부담 실태 분석」, 『재정포럼』, 제142호, 한국조세연구원, 2008, pp. 52~70.
- 성명재, 「소득계층별 조세이전지출 분포와 소득재분배」, 『응용경제』, 제8권, 제2호, 2006, pp. 5~45.
- _____, 「근로·종합소득세의 세제지원 효과 연구」, 『세무학연구』, 제24권, 제4호, 2007, pp. 295~336.
- _____, 「1990년대 이후 정부별 소득세 개편이 세부담 및 소득재분배에 미친 효과 분석」, 『재정학연구』, 제4권, 제1호(통권 제68호), 2011(a), pp. 111~152.
- _____, 「소득분배 개선을 위한 조세·재정정책방향」, 『응용경제』, 제13권, 제2호, 2011(b), pp. 31~70.
- _____, 「미시모의실험 분석을 통한 소득세·소비세의 장기세수전망」, 『국제경제연구』, 제19권, 제2권, 2013(a), pp. 37~76.
- _____, 「부가가치세의 부문별 실효세율, 면세의 누적효과 추정 및 면세 개선방안 연구」, 『세무학연구』, 제30권, 제3호, 2013(b), pp. 189~223.
- 성명재 · 박기백, 「조세·재정지출의 재분배 효과: 소비세 및 현물급여 포

- 함, 『재정학연구』, 제1권, 제1호(통산 제56호), 2008, pp. 63~94.
- 성명재 · 박명호 · 이성식 · 박종수, 『증장기 부가가치세 개선방향』, 용역 보고서, 한국조세연구원, 2012.
- 성명재 · 우석진, 『소득세 공제제도 개선방안 연구』, 미발표자료, 2013.
- 송헌재 · 성명재,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제도의 효과 분석』, 『재정학 연구』, 제5권, 제2호 (통권 제73호), 2012, pp. 157~194.
- 오연천, 『부가가치세 면세 및 영세율제도의 성과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행정논총』, 제25권, 제2호, 1987, pp. 131~145.
- 정재호, 『매입세액공제방식의 부가가치세 감면규모 추정』, 『재정포럼』, 제 167호, 2010, pp. 6~22.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요국의 조세동향』, 각 연도.
- _____, 『일본 소비세율 인상의 평가와 전망』, 2012.
- Bach, Stefan, Peter Haan, Onno Hoffmeister, Viktor Steiner, *Increasing the Value-Added Tax to Re-Finance a Reduction of Social Security Contributions*, 2006.
- Barnard, Andrew, Steve Howell and Robert Smith, “The Effects of Taxes and Benefits on Household Income 2009-10, Further Analysis and Methodology.” U.K.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2011.
- Beynet, Pierre, Andres Fuentes, Robert Gillingham, Robert P. Hagemann, “Restoring Fiscal Sustainability in Spain,” OECD Economics Department Working Papers No. 850, 2011.
- Jones, Randall S., Satoshi Urasawa, “Restoring Japan’s Fiscal Sustainability,” OECD Economics Department Working Paper No. 1050, 2013.
- Keen, Michael and Ben Lockwood, “The Value Added Tax: Its Causes and Consequences,” *Journal of Development Economics*, Vol. 92, 2010, pp. 138~151.

- Moes, Alowin, "Political Economy of the Failed Swiss VAT Reform,"
Joint WP2-WP9 Workshop on Scoping Future Analysis of
Economics of VAT, OECD, 2012.
- Mooji, Ruud de, Michael Keen, "Fiscal Devaluation and Fiscal
Consolidation: The VAT in Troubled Times," IMF Working
Paper WP/12/85, 2012.
- OECD, *Consumption Tax Trends 2010, 2012, VAT/GST, Excise Rates,
Trends and Administration Issues*, 2010, 2012.
- _____, *Economic Survey of Germany 2006*, 2006.
- Sung, Myung Jae and Ki-baeg Park, "Effects of Taxes and Benefits on
Income Distribution in Korea," *Review of Income and Wealth*,
Series 57, No. 2, 2011, pp. 345~363.

IBFD, <http://www.ibfd.org/>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홈페이지, <http://taxinfo.nts.go.kr/>

국세청 홈페이지, <http://www.nts.go.kr/>

부가가치세제 발전방향 연구

홍성훈 · 성명재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부가가치세제도가 있는 많은 나라에서 부가가치세는 조세수입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는 중요 세목 중 하나이다.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모든 거래를 과세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가계, 기업, 공공 부문 등 모든 부문에 걸쳐 경제 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광범위하다. 본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제도의 장점과 한계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제도적 개선 방향에 대해 고민하는 것을 연구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부가가치세제도에 대한 세 가지 연구 주제를 다룬다. 먼저 우리나라 제도의 현황에 대해 살펴보면, 부가가치세제도의 성과를 측정하는 주요 지표 중 하나인 부가가치세 세수율을 기준으로 삼아, 우리나라의 제도가 최근 들어 얼마나 발전하였는지 분석해본다. 이어서 OECD 국가를 중심으로 부가가치세제도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살펴보면, 독일, 스위스, 스페인, 일본 등의 네 나라에 대해 부가가치세 개정 사례를 분석해본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게, 가계동향조사, 산업연관표 등의 실증 자료에 근거하여 미시 모의실험 모형을 만들고, 부가가치세 귀착 및 정책 효과에 대해 살펴본다.

<Abstract>

Future Developments for Value Added Policy in Korea

Sunghoon Hong · Myung Jae Sung

Value Added Tax (VAT) is an important source of tax revenue for governments in a number of countries including South Korea. Moreover, in principle, VAT is levied on all the transactions that generate value. Therefore, the specification of VAT policy influences all sectors, such as households, firms, and governments. The purpose of this report is to understand the strength and weakness of VAT policy in South Korea through cross-country comparative studies and micro-simulation analyses. This report also aims to provide a discussion on future developments for VAT Policy in South Korea.

<저자약력>

홍성훈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졸업
미국 Vanderbilt University 경제학 박사
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성명재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미국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경제학 박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현, 홍익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자료 수집 및 정리

허윤영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원
최미영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임연구행정원

연구보고서 13-02

부가가치세제 발전방향 연구

2013년 12월 24일 인쇄
2013년 12월 31일 발행

저 자 홍성훈·성명재
발행인 옥동석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138-774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28길 28
전화 : 2186-2114(대), www.kipf.re.kr
등록 1993년 7월 15일 제21-466호
조판및 고려씨엔피
인쇄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3 ISBN 978-89-8191-674-9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값 5,000원